KINU 연구총서 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 김수경 · 현인애 · 황의정

KINU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연구책임자: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황의정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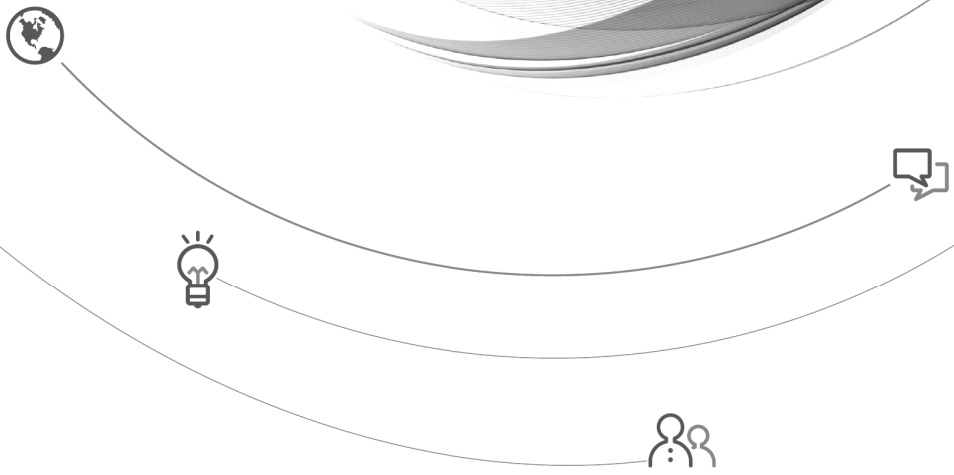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4/5년차) KINU 연구총서 18-09

발 행 일	2018년 12월 15일
저 자	박영자, 김수경, 현인애, 황의정
발 행 인	김연철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 쇄 처	(주)세일포커스(02-2275-6894)
I S B N	978-89-8479-952-3 93340
가 격	11,5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 9

Ⅰ. 서론 ····· 1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7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 20
3. 연구 내용과 구성 ····· 27
4. 연구 방법과 자료 ····· 32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 37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 39
2. 일탈과 범죄 이론 ····· 43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 47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 53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 57

1. 시각과 유형 분류 ····· 59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 62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 71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 78
5. 세외부담과 인권 ····· 84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 88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 103
1. 시각과 유형 분류 ····· 105
2. 공공질서 일탈 ····· 113
3. 사회도덕 일탈 I : 성(性)과 가족 ····· 129
4. 사회도덕 일탈 II : 노동과 풍속 ····· 140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 144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 148

Ⅴ.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 153
1. 시각과 유형 분류 ····· 155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 161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 173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 184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 188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 202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 209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 211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 213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 218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 221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 227

1. 실증분석 결과 ····· 229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242

참고문헌 ····· 252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59

표 차례

〈표 Ⅰ-1〉 심층면접 사례의 인적 사항 ····· 34
〈표 Ⅱ-1〉 남한과 북한의 형법 분류 비교 ····· 50
〈표 Ⅱ-2〉 남북한 현행 형법상 사회범죄 대응 비교 ····· 52
〈표 Ⅱ-3〉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과 북한 형법전 ····· 56
〈표 Ⅲ-1〉 법적 대응의 변화: 2004, 2012, 2015년 형법 조항과 형량 비교 ····· 91
〈표 Ⅳ-1〉 체제 특성 변화에 따른 시기별 사회범죄 유형 ····· 109
〈표 Ⅳ-2〉 김정은 집권기 사회적 일탈 유형 ····· 112
〈표 Ⅴ-1〉 북한 사회주의 문화의 의의 및 영역: 헌법「제3장 문화」···· 157
〈표 Ⅴ-2〉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 유형 ····· 159
〈표 Ⅴ-3〉 사회주의 문화범죄 형법의 세부 변천사 ····· 165
〈표 Ⅴ-4〉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조항 변천 ····· 199
〈표 Ⅴ-5〉 주요 문화범죄 형량 변화 ····· 205
〈표 Ⅵ-1〉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감자 현황 ····· 216

그림 차례

〈그림 Ⅲ-1〉 북한의 행정관리 일탈과 범죄 분류 ····· 61
〈그림 Ⅳ-1〉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분석틀 ····· 107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성을 보이는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범죄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형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 규명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시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시론(試論)적으로 모색한다. 시장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및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해, 특히 김정은 시대의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별로 각각 세부 유형별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김정일 시대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Ⅱ장은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이다.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로 구성한다.

Ⅲ장은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이다.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Ⅳ장은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를 제목으로 한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Ⅴ장은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이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Ⅵ장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이다. 이 장은 향후 연구과제를 위한 시론적 내용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룬다. 각 절은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Ⅶ장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밝힌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준비시기부터 모색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과제로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시기별, 사안별, 성숙도별로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제기한다.

주제어: 북한 주민의 일탈, 법적 대응, 체제이행기, 행정관리 부문 일탈과 범죄, 사회질서 부문 일탈과 범죄, 사회문화 부문 일탈과 범죄

Abstract

Devi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Legal Response

Park, Young-Ja et al.

This research aims to carry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North Korean's deviation and crime,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transitional period, and identify the legal respons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ased on its penal law.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timely responsive measures for the ROK government, which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with the initial phas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search conducts an analysis of North Korean's deviation and crime that has been emerging against the backdrop of marketization and informatization as well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sponsive measure. In particular, there are a detailed, sector-base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social order, and social culture in the Kim Jong Un era. The research also identifies whether such patterns are different or consistent compared to the Kim Jong-il era. Moreover,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empirical studies, the research explores the potenti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identifies the responsive measures thereof.

Chapter Ⅱ is entitled 'Deviation of the Transitional Period of System and Environment for Law and Institution' with the following four sub-chapters: 1)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period and deviation; 2) deviation and criminal theory; 3)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aw and differences of legal respon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4)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enal law depending on period.

Chapter Ⅲ is about 'Administrative Management: Disorder of Administration and Toughened Party-level Response' with the following six sub-chapters: 1) view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2) opposition to state administration and illegal overseas contact; 3) state administration prone to bribery; 4) deviation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for themselves not for the state; 5) non-tax payment and human rights; 6) consistency and change: compared to Kim Jong-il era.

Chapter Ⅳ is titled 'Social Order: Deviation amidst Change of Living and Toughening of Penal Law' with the following sub-chapters: 1) view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2) deviation in the public order; 3) deviation in social morality Ⅰ: gender and family; 4) deviation in social morality Ⅱ: labor and custom; 5) deviation in other social order; and 6)

consistency and change: compared to Kim Jong-il era.

Chapter Ⅴ is themed 'Social Culture: Deviation amidst Change of Culture and Response to Separation' with following six sub-chapters: 1) views and classification of types; 2) cultural deviation and response: increasing patterns in light of history; 3) proliferation of decadent culture and information-related crime; 4) medical-related crime and drugs; 5) devi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and crimes of historical relics; and 6) consistency and change: compared to Kim Jong-il era.

Chapter Ⅵ addresses the potenti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identifies the responsive measures. This chapter deals with timely issue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projects, exploring and presenting various ideas. Sub-chapters are as follows: 1) issues viewed from cases of countries that underwent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system; 2) issues viewed in light of German unification and dev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ponsive measures; 3) respons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 of North Korea; and 4) response in the mids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hapter Ⅶ summarizes the whole paper, lays out policy implications, and discovers future tasks. In particular, policy measures are devised that should be put in place even in the preparation phas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final chapter also suggests a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following as a follow-up task to be dealt with: an analysis of types of crimes that could occur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depending on period, issue, and maturity as well as their responsive measures.

Keywords: Devi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Legal response, Transitional period of system, Deviation in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crime, Deviation in the social order and crime, Deviation in social culture and crime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통일은 두 사회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에 해당하는 정치적 공무(公務)와 사회적 질서, 그리고 문화적 충돌 및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일탈이 남북한 통합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탈(deviation)은 한 사회의 규범이나 표준에서 벗어난 행위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법제도적 공공질서나 조직, 사상, 규범, 도덕률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 일탈 행위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범죄와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비행(非行)을 포괄하는 의미로 범죄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1)]

이러한 정치사회적 일탈(political social deviation)을 추동하는 주요 배경은 경제체제의 전환이다. 따라서 관련한 북한 경제분야 선행연구는 상당한 편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행정, 사회, 문화 분야 일탈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의 최종적 과제가 사회통합임을 중시하며, 통일이라는 정치행정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통합 과제를 고려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을 주목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4차

1) 한편, "일탈이란 어느 사회가 규정한 정도(正度)를 벗어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본질 또는 내재적 특성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시대에 어떠한 이데올로기(ideology)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일탈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는 여성에게 짧은 치마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여성의 짧은 치마는 패션으로 인정된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는 남성의 화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과 몇 년 전에는 남성성을 흐리는 일탈로 간주되었다." 또한 "일탈은 낙인찍는 주체의 범위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지는데 가족, 친구, 동료보다 대중, 사법 당국에 의한 낙인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 위반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다음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9XXX8600046〉 (검색일: 2018.8.2.).

년도 과제로, 북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행정, 사회, 문화적 일탈의 실증적 실태 및 유형별 분석을 중시한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탈인 범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 중 2000년대 이후 주목되었던 것은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경제적 일탈과 범죄 관련 부문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북한 체제전환에 함의가 높은 시장화와 정보화를 주목하되, 이를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유형 변화의 배경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범죄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규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로부터 추론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 시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試論)적 모색이다. 시장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한 북한의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히 김정은 시대의 행정관리·사회질서·사회문화 분야의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며, 이러한 일탈과 범죄 양상이 김정일 시대와는 어떠한 지속성과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 대응은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유형별 실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한다. 통일과정에서의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은 실증연구와 달리 미래예측을 핵심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증연구를 근간으로 한 본 연구주제와는 연구설계로부터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향후 과제에서 다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주민 일탈과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2018년 현재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여 체계적 후속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북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양상이 드러난 2000년대 전후를 포괄하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의 유형 분류와 유형별 실태 규명, 주요 유형별 지속성과 변화 규명, 그리고 통일 전후 예상 가능한 문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시대로부터 김정은 시대로 이어진 북한의 정권 변화 및 시장경제 진화와 함께 나타나는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일탈과 범죄의 지속과 변화라는 역사성을 주목한다.

체제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양상은 단기적 특성이 아닌 중장기적 축적성을 지니기에 2000년대를 전후로 한 북한의 변화를 중시하며 접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를 시도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뿐 아니라, 김정은 시대 급변하는 북한의 대내외 행보가 북한 사회와 주민 일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18년 현재까지 김정은 시대를 주목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통해 기대하는 연구의 효과와 기여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최근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으로부터 사회통합까지를 고려한 효과이다. 남북한 두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북한지역 내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관련 주민 일탈과 범죄 유형분석으로, 경제분야에 집중된 통합연구와 북한변화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며 통일의 최종적 과제인 사회통합에 기여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시기로부터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을 김정은 집권 전후에 초점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북한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정책, 그리고 대북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셋째,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유형 분석, 각 유형별 지속성과 변화 규명, 그리고 한국·독일·체제전환국 등 다양한 사례분석에 기반을 둔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의 구체성 및 중장기 파급 효과 증대에 기여이다.

넷째, 체계적 후속연구 및 정책발굴에 기여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성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준비 또는 추진되는 남북교류협력 대비 시급한 정책마련에 본 주제와 관련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한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일탈과 범죄 관련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가 남북교류협력 준비시기부터 사회통합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북한의 행정관리 분야 일탈과 범죄 관련 연구는 북한의 부패 관련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다. 부정부패(不正腐敗)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본질상 국가기능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직무관련 범죄에 속한다. 대표적인 부패관련 연구로는 김성철(1995), 이근영(2013), 박형중 외(2012), 박영민(2016)의 연구가 있다.

김성철(1995)은 북한의 부패를 유형화하고 부패가 북한경제운영의 비효율성 증대, 국가경제의 통제력 약화, 시장경제의 확대를 가

져오며 주민들의 돈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고 관료기구의 기능상실을 가져온다고 보았다.[2] 이근영(2013)은 북한부패에 대한 행정계량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소수의 후견자 부패가 시장의 출현으로 다수의 시장부패로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연고주의부패도 화폐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평가했다.[3]

박형중 외(2012)는 북한의 부패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유형화했으며 '후견-비후견 모델'에 기초한 부패의 작동구조를 해명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체계적 부패가 북한의 정치경제에 주는 영향을 밝혔으며,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까지를 모색하였다.[4] 박영민(2016)은 북한에서 생계형 부패가 관료부패로, 그리고 체제적 부패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부패가 구조화되며 정치사회적 구심력이 감소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5]

이러한 주요 선행연구들에서는 부패 실태와 유형, 부패의 원인과 작동 구조,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법제도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북한의 행정관리 분야 주민 일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법제도적 시각에서 고찰하려 한다.

다음으로 사회질서 관련 선행연구이다. 전체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한 김정일 시대 북한의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비법[6]과 불법 행위 및 북한 당국의 대응 등을 다룬 연구들이

---

2) 김성철, "북한의 관료부패유형 및 사회적 영향," 『북한』, 281호 (1995).

3) 이근영, "북한의 제도와 부패- 행정계량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년 12월), pp. 427~454.

4) 박형중 외, 『북한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5) 박영민,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2016).

있다. 주요 선행연구는 김윤영(2007; 2009), 최대석 외(2010), 이학립(2013) 등이 있다.

김윤영(2007)은 2004년 북한 개정형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7] 범죄를 크게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분류하고 다시 몇 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죄 실태를 설명하였다. 정치범죄 실태에 대해서는 정치범죄를 반국가·반민족범죄의 동의어로 사용하여 북한에서 발생한 정치 사건들을 소개하였다.

일반범죄 실태에 대해서는 경제범죄, 대인범죄(성범죄,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도박과 미신 범죄 등), 사회주의 문화 침해 범죄, 권력형 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였다. 북한의 범죄 대책으로는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범죄단속 기구 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문 및 인터넷 뉴스와 기존 관련 자료 등에서 범죄 사건들을 검색하여 유형별 범죄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유형의 분류에 있어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김윤영(2009)의 연구 역시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것으로, 이전 연구와 다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관련 정치범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범죄 실태부분에서 일반범죄를 생명·재산 범죄로 한정하여 절도죄, 청소년범죄, 성범죄만 살펴보았고, 경제범죄로 위조화폐죄, 문화범죄로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죄와 마약범죄를 사건위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8] 이 연구는 김윤영의 이전 연구와 큰

---

6) 북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암묵적 일탈과 범죄 행위를 의미함.

7)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7권 3호 (2007).

차이는 없지만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 범죄들과 문화범죄 일부를 국내에 소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대석 외(2010)는 북한 사회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 확산실태 및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행위 측면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사회적 일탈행위, 위법행위, 범죄행위, 반체제 및 반사회주의적 행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북한 주민의 사회적 일탈이 위법행위로 발전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반체제 및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9)]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비사회주의적 행위 실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네 가지 행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네 가지 행위유형으로 구분하는 데는 오류가 있다. 즉, 북한 당국이 행정처벌법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범죄와 달리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이학립(2013)은 김정일 시대 발생한 범죄사례와 범죄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규범적·정치사상적 통제방식을 다루었다. 13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사이 발생한 범죄사례를 수집하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조직생활 및 시장의 변화에서 범죄원인과 국가의 대응방식을 찾아내고자 하였다.[10)]

---

8)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 (2009).

9) 최대석·박영자·박희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 변화』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10) 이학립, "김정일 시대 범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이 연구는 북한의 실제 범죄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범죄 유형을 위의 김윤영(2009)의 연구와 거의 유사하게 분류하고 관련 사건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발전의 한계가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 북한 형법상의 범죄유형별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춘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 등을 다룬 연구들이다.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분야 일탈과 범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당국의 공식 간행문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언론보도, 북한의 형법조항, 북한이 발표한 자료집 등에 근거해 북한 범죄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광범위한 주제를 제한된 자료로 분석하다보니 총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론적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 연구로 김영호·김용호(2014), 황의정(2016) 등이 있다.

먼저 김영호·김용호(2014)는 북한의 법해석·적용에 대한 실무지침서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수록된 범죄 사례를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참고서상의 정황과 사례 건수를 수치화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형법의 일반적인 범죄 분류방식인 범죄 3분설(개인적 법

11) 김영호·김용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7권 3호 (2014);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고성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일탈," 『1990년대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따라 범죄 사례 건수를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참고서상의 범죄 사례만 분석하고 있어 최근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물은 황의정(2016)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식량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한 사회문화적 일탈행위와 북한 당국의 법적 통제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법적 통제방식(형법상 범죄규정 확대,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 신설 등)을 동원해 단속하는 점에 착목하여,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 개념을 분석적 도구로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의 배경, 전개, 내용분석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과 통제수단인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의 법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른 실례로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수록된 범죄 사례만 소개하고 있는 점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의 차별성과 독창성

이상으로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및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 대응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다룬 주요 선행연구들의 성과에 기반하되 그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후속연구에 기여하려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추구하며 진행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북한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발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그리고 법제도적 대응 실태에 대한 연구의 공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개정된 북한 형법상의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그리고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어떠한 지속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주목한다.

둘째, 기존 연구는 북한 범죄 실태 분석에 있어 북한 형법상 편제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 분류에 따라 범죄 실태를 소개하였으며 범죄 유형별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북한 범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 형법상 편제 중,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문화범죄'로,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행정범죄'로,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사회범죄'로 범죄 종류와 범위를 유형화하여 접근한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심층면접하여 각 유형별 사례 및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상의 행정, 사회, 문화 범죄 영역에서의 사례를 생생한 자료로 활용하여 세부 범죄 유형별 매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북한의 2015년 형법에서 규정하는 분류 체계에 기초한 세부 분류기준을 근거로, 각각의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밝힌다.

넷째, 사실상 탈사회주의 이행기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기존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독일을 비롯하여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주민 일탈과 범죄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반한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다섯째, 기존 연구는 체제전환론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를 다루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대응을 탈사회주의 이행기 특징에 주목하여 체제전환론적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탈에 대한 남북한의 법적 대응의 차이를 주목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과정 중 북한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남북한의 법의식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 등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일탈과 범죄 유형을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2018년 현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지닌다.

3. 연구 내용과 구성

이 연구의 주요 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과 환경 분석이다. 본격적 실증분석의 전제로서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을 다룬다.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일탈의 경험과 특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북한법의 특징을 고찰하며 남북한 형법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룰 실증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격적 실증분석 시 활용할 북한의 형법들이 어떠한 시기와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연구이다.

그러므로 먼저 체제이행기의 일탈과 범죄를 해석할 수 있는 주요 이론과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법의 특징과 사회적 일탈과 범죄에 대한 남북한의 형법적 대응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및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를 밝힌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둘째,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그 실태를 풍부한 사례조사에 기초하여 유형별로 분석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시기를 포함하는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일탈과 범죄 유형을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각종 북한정보 활용을 넘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실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범죄의 유형별 실태를 풍부하게 다룬다.

셋째, 이행기 사회 특징을 보이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북한의 형법적 대응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형법 규정 및 실무지침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북한 형법 분석의 자료는 북한이 1970년대 사회주의체제 완성을 선언한 이후 신형법

으로 제정한 1987년 형법전(1999년 개정 형법전과 거의 유사), 2004년 대중용 법전 발간과 함께 개정한 2004년 형법전, 2012년 법전 제2판 발간과 함께 개정한 2012년 형법전, 그리고 2016년 법전 제2판의 증보판에 수록된 2015년 개정 형법전 등이다.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관련 주민 일탈과 범죄를 비사회주의적 행위 차원에서 살펴보려 할 때에는, 2004년 제정한 행정처벌법의 위법행위 역시 참고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2009년 북한 인민보안성이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부문,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 부문, 사회주의문화 침해 범죄 부문 등의 범죄해설 부분 및 형법적 대응을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정치적 공무(公務) 관련 일탈과 범죄 및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다룬다. 현장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관료들이 주도하는 일탈과 범죄로 북한 형법 제7장에서 밝힌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중심으로 유형별 실태 및 지속성과 변화를 다룬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치적 범죄는 북한 당국이 규정하고 국가보위성에서 관할하는 반국가·반민족 범죄가 아니다. 행정관료들이 일반행정과 관련한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검찰·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하는 일반행정 및 공무 관련 분야이다.

사회질서 관련해서는 북한의 사회질서 혼란과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범죄 및 북한 당국의 대응을 다룬다. 먼저 북한 형법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중심으로 유형별 실태 및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적 충돌 및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일탈과 범죄 실태 및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북한 형법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중심으로 유형별 실태 및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를 다룬다.

넷째, 앞선 연구내용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일탈과 범죄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한다. 대응방안의 정책적 실효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 독일, 체제전환국 등의 관련 실태 등에 기반하여, 정책적 교훈과 대응방안을 총론적 수준에서 다룬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왜냐하면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설계 및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맞추어 구체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사안별, 성숙도별로 체계적인 별도의 연구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Ⅱ장은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이다.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북한에서 법의 성격과 남북한 형법의 차이,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형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 환경을 다룬다. 각 절은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로 구성한다.

Ⅲ장은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이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Ⅳ장은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를 제목으로 한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Ⅴ장은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이다. 각 절은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로 구성한다.

Ⅵ장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이다. 이 장은 향후 연구과제를 위한 시론적 내용을 다룬다. 각 절은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Ⅶ장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밝힌다.

전체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설계에 기초하여 연구진들의 공동조사 및 수차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내용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각 연구범주별로 연구진들이 대표 집필한 후 연구책임자 주도 하에 코웍회의 및 각 주제별 내용 피드백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조율한다.

그리하여 전체적 연구 설계 및 방법 등을 다룬 Ⅰ장은 연구책임자가 집필한다. 이론적 배경과 환경을 다룬 Ⅱ장 또한 연구진들의 연구성과를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집필한다. 행정관리 분야인 Ⅲ장은 북한 전문가인 현인애가 대표 집필한다. 사회질서 분야인 Ⅳ장은 북한법 전문가인 황의정이 대표 집필한다. 사회문화 분야인 Ⅴ장은 사회학 박사로 사회통합 전문가인 김수경이 대표 집필한다.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인 Ⅵ장은 앞선 연구

성과 및 연구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연구책임자가 대표 집필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룰 Ⅷ장 결론 또한 연구책임자가 집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에 기초한 연구진들의 공동조사 결과 및 각 주제별 집필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연구진 회의내용 및 전문가들의 평가와 자문 등을 참조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전체 내용을 조율 및 재구성한다.

4. 연구 방법과 자료

위와 같은 연구 설계 및 내용에 기초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이론적 검토 및 문헌분석, 법제도 관련 텍스트 분석,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비교분석, 교차분석, 브레인스토밍이다.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체제이행기 특징 및 관련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의 유형별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주로 형법 변화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분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그리고 당과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우선하는 북한의 '당·국가체제' 특성으로 인한 북한법의 특징 및 남북한 간의 사회적 범죄 유형과 형법상 대응 차이 등을 주목하며 질적·맥락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비교분석하며, 다양한 실증 정보 및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내용을 교차 분석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독일·체제전환국의 관련 범죄 및 형법적 대응을 비교시각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시기를 포함한 통일과정에서의 교훈과 대응방안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주요 연구방법 및 정보 자료 확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첫째, 이론적 검토 및 문헌 분석이다. 현재 북한체제 변화에 함의가 높은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에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증대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 그리고 주로 사회학적 시각에서 다루어진 일탈과 범죄 관련 이론 검토이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 및 정보들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 등 사회적 성격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관련한 각종 문헌 및 정보들을 교차 분석하여 질적·맥락적 해석을 시도한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실태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북한 형법 규정과 실무지침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다. 특히 2009년 북한 인민보안성이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부문,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 부문, 사회주의문화 침해 범죄 부문 등의 해설 부문(정황 및 대응안)을 분석한다. 또한 그 외 북한의 형법과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사회, 문화 범죄의 유형 분석 및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탈 및 범죄 실태와 함께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 양상 변화를 살펴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증언의 신뢰성이 검증된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면접지'에 따라 심층면접을 수행한다.

각종 문헌을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각 분야 실태를 상대적으

로 잘 알고 있는 관련 분야 및 고위직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과 자문을 통해 보완한다. 물론 심층면접 내용 역시 문헌분석 및 각종 관련 정보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부분을 연구에 활용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심층면접 또는 자문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2013년 이후 북한을 탈북한 이들이며 당원들이다. 특히 고위직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신상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활용한 증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인적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심층면접 사례의 인적 사항

사례 번호	성별	연령대	탈북 연도	북한에서 거주지	북한에서의 직업/소속기관	면담날짜
01	남	50대	2013	혜산	시단위 보안원	2018-05-23
02	남	40대	2015	평양	군간부	2018-05-23
03	남	60대	2014	혜산	군인	2018-07-05
04	남	60대	2014	원산/평양	보안기관 지도원	2018-07-05
05	여	30대	2011	평양	시단위 사회단체 부원	2018-07-05
06	여	50대	2016	혜산	상인	2018-07-09
07	여	50대	2013	평양	군산하 기관 외화벌이	2018-07-09
08	여	30대	2016	혜산	상인	2018-07-11
09	남	40대	2014	양강도	의사	2018-07-12
10	여	50대	2015	평양	군산하 연구소 연구원	2018-07-12
11	여	40대	2016	혜산	도단위 접종원	2018-07-14
12	남	40대	2016	혜산	도단위 자재상사부원	2018-07-14
13	남	20대	2016	평양	프로그래머	2018-07-17
14	남	30대	2013	혜산	교원	2018-07-21
15	남	20대	2016	혜산	교원 대기	2018-07-21
16	남	50대	2017	평양	시단위 외화벌이 기업소 지배인	2018-07-25

사례 번호	성별	연령대	탈북 연도	북한에서 거주지	북한에서의 직업/소속기관	면담날짜
17	남	40대	2016	혜산	도단위 감독원	2018-07-25
18	남	40대	2013	혜산	요양원	2018-08-02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이자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에서 다룬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형법에서 다루는 '일반행정 관리질서 부문', '사회주의공동생활 부문', '사회주의문화 부문'[12]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유형 및 실태 중 가장 두드러진 것들과 상호관련성이 깊은 일탈과 범죄는 무엇인가?

둘째,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지속성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일탈과 범죄들은 무엇인가? 이전과 달리 김정은 시대에 많이 나타나거나 줄어들었거나 새롭게 등장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는 어떠한 것들인가?

셋째,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각종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 사회 변화 및 주민들의 일탈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넷째, 사회적 일탈과 범죄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과 주민들의 인식은 각각 어떠한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다섯째, 김정은 시대 인민보안성 등 관련 국가기구와 소속 관료들의 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여섯째, 북한의 법제도 변화를 보면 형법이 강화되고 있는 데, 그 효과가 일반 주민과 관리들 각각에 다르게 적용되거나 드러나고 있

12) 북한의 법 인식이 약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특성 상, 피면접자들이 북한의 법률이나 범죄 규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피면접자에게 북한의 각 분야 범죄 규정과 유형을 알려주면서, 김정일 시대와 지속성과 변화를 보이는 김정은 시대 범죄 유형 및 실태를 조사한다.

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실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모든 질문은 구체적 사례와 사건, 그리고 관련된 북한의 기구나 조직의 운영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8년에 이루어진 총 18개 사례의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및 고위직 출신 자문은 연구진들이 직접 수행하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 면접/자문 시간은 한 사례에 평균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연구문제 및 정보와 증언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잡아 1인당 1~2회 진행한다. 또한 동일한 질문을 여러 사례에 질문하고 증언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내용을 연구에 활용한다.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가. 탈사회주의 이행기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이행기에 놓인 북한의 행정·사회·문화 분야 일탈과 범죄 실태 및 법적 대응 양상을 파악한 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과 범죄를 예측하여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기초할 때 남북한 통합의 전제는 북한의 체제전환이다. 현재 북한 체제는 체제전환기 과정인, 탈사회주의 이행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과 중국, 베트남 등의 체제변화 관련 연구들은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이행 등을 개념화하여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로를 일반화하고, 이를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도출과 전망에 활용해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물들을 통해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이행 등의 개념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북한의 '탈사회주의 이행기'라는 과도기 과정을 상정하니만큼 이들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체제전환(transformation)'은 그간 유지해온 질서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즉 기존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의 형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체제전환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체제이행(transition)'을 포괄한다. 체제이행은 근본적으로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질서 변화를 의미한다.[13] 하지만 체제전환과 체제이행이 동의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급격한 체제변화는 정치경제 체제뿐 아니라 문화, 가치, 신념 등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구조적·장기적· 다차원적 변

13)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p. 227.

화를 의미하는 체제전환에 해당한다. 단순히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4]

반면 '체제개혁(reform)'은 급진적인 혁명에 의한 전면적 변화를 가져오는 체제전환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다소 점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인 일당 독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사회적 소유, 이데올로기의 독점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이념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을 이룰 때 이러한 상태를 체제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가 이러한 체제전환을 이루었다. 반면 중국,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의 기본 틀인 정치구조는 유지하되 경제체제의 방향전환을 이룰 때는 체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방식은 행위주체와 작용방식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ⅰ) 지배엘리트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 ⅱ) 피지배대중에 의한 자생적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ⅲ) 체제 밖의 정치경제적 세력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개혁 등이 그것들이다.[15]

향후 북한 체제가 어떠한 체제전환의 방식으로 나아갈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점은 현 단계 북한이 시장화와 국제사회로의 점진적 편입, 정보화 등으로 체제이행의 과정, 즉 탈사회주의 이행기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의 완화 및 지방분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의 주도로 경제체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경제시스템이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 또는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로부터 확산

14) 정흥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pp. 194~201.

15)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 34, no. 1 (2008), pp. 167~169.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공식 경제 일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사유화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신흥자본가 세력인 북한 돈주들의 자금력이 체제이행의 내생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체제개혁 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2018년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축될 한반도의 평화체제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담한 경제개혁 등이 이루어지고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제도화된다면 북한에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나. 이행기 특성과 일탈 증가

20세기 존재했던 구(舊) 사회주의국가들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중심에는 시장화가 있다. 시장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갈등 요인들을 야기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에서 이행기의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다양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였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6]

탈사회주의 이행기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는 첫째, 사회주의체제 해체과정에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있어 기존의 가치관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부재할 때 불확실한 현실 속으로 내몰릴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형성되면서 공정한 자유경쟁(게임의 법칙)이 아닌 불법과 탈법적인 수단에 의한 경쟁(정글의 법칙)이 이루어진다.

셋째, 탈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작동하던

16)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53~55.

사법제도 및 경찰제도의 운영이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사회통제기능도 상실 또는 약화된다는 점이다. 넷째, 시장화와 개방화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시민문화 유입 및 확산보다는 부정적인 향락문화 및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이 먼저 유입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행기적 특수성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체제이행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행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들이 심화되면서 범죄 및 사회적 일탈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체제전환과정에 있던 1989년과 1990년 사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특히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급증하였다. 체제전환기 발생한 범죄 가운데 재산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 절도죄, 강도죄, 주거침입강도죄 등의 증가율이 1980년대 초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았다.[17] 이는 급격한 사회구조와 사회질서, 그리고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체제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의 확산과 법규범 의식의 해이에서 기인하였다. 평등 이념에 의해 생필품 부족 등의 빈곤 문제를 감수해왔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빈부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다. 개인의 능력차로 갑작스런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국민들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에 대한 기회 획득과 새로운 체제의 법에 대한 경시 사이에서 일탈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곧 범죄행위로 드러났다.

---

17) 이기헌·이건호,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pp. 157~158.

신생 정부가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이 증가하였고, 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리즘 확산까지 초래하였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 범죄증가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험한 규범경시 풍조, 즉 비합리적인 법집행 관행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18]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형사정책적 관행이 체제전환기 범죄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체제전환국들의 역사적 경험에 착목하는 이 연구는 북한의 탈사회주의 이행기에 발생하고 있는 일탈과 범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과정 중 북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사회주의 이행기 북한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전무한 북한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제도들의 특성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 핵심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자유경쟁, 사적 소유권 인정, 법치주의 등이 대표적 특성들이다.[19]

2. 일탈과 범죄 이론

가. 사회적 일탈·범죄

사회적 일탈과 범죄는 어떤 사회에서라도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북한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일탈이 발생하느냐이다. 사회적 일탈이 곧 그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

18) 위의 책, pp. 7~11.

19) 김상원, "전환기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율의 추세,"『공공정책연구』, 제22권 (2005), p. 153.

영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범죄' 개념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이론적 초점이 범죄행위도 동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위로 본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사회범죄를 비롯한 일탈화는 사회화 과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20]

일반적으로 사회범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범죄 및 일탈행위를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범죄를 비롯한 일탈화 문제를 취급하고자 할 때, 사회규범의 속성, 유형, 변동 등은 범죄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21] 왜냐하면 사회규범의 내용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동조(conformity)가 비동조(nonconformity)로 또는 비동조가 동조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22]

특정 행위의 범죄성 및 일탈성 여부는 그 사회체제의 규범적 평가에 달려 있다. 그 사회체제가 어떠한 규범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비동조 행위가 범죄 및 일탈행위로 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주의체제가 일탈화의 완전한 배제를 전제로 하였지만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회체제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가 방증한다. 사회범죄 현상이 특정한 사회체제의 가치를 위반한 일탈화로부터 범죄화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타나는 범죄와 일탈은 현 단계 북한체제의 성격 및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20)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Illinois: The Free Press, 1951), p. 251.

21) Robert K. Merton and Robert A.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p. 723~729.

22) 도흥렬, "북한의 사회범죄연구," 『북한』, 통권 제65호 (1977), p. 108.

나. 아노미(anomie)와 갈등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일탈과 범죄 뿐 아니라 이를 야기한 북한의 사회 상황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 구조적 맥락에 대한 것이다.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anomie)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격변기에 무규범 상태가 발생하고,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을 동원할 수 없게 되면 일탈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23)]

아노미 이론은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행위자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노미 이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을 향유할 수 없는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일탈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이론틀이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이라는 삶의 1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마저도 적법하게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법의료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북한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건강과 같이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적법한 절차로 추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일탈과 범죄로 규정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일탈과 범죄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

23) Emile Durkheim, *On Suicide* (New York: Penguin Books, 2006);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Illinois: The Free Press, 1957).

회에서는 적법한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불법이 되기도 한다. 또는 한 사회에서는 중범죄로 처벌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경범죄로 처리되기도 한다. 갈등이론은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의 문제보다는 무엇이 범죄로 정의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24]

이 이론에 따르면 일탈과 범죄란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권력을 지닌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저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다. 국가가 범죄를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갈등이론에서 범죄자란 사회적 부적응자 또는 일탈행위자가 아니라 권력 투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 행위는 도덕적 결함이 그 행위 자체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가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유도 범죄가 사회의 권력구조 및 정치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의 2004년 형법 개정 당시 '퇴폐문화' 관련 범죄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갈등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불법 녹화물을 시청, 제작, 유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라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모든 범죄가 갈등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2004년 당시 '치료거부죄'가 새롭게 명문화된 것을 권력자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나 검열에 관련된

24) Austin Turk, "Toward Construction of a Theory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55, no. 2 (1964), pp. 215~229; William J. Chambliss,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Crime," *Theory and Society*, vol. 2, no. 1 (1975), pp. 149~170; Richard Quinney, *The Social Reality of Crim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0).

사회주의 문화범죄 규정은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 당국이 여러 일탈행위를 공식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문화범죄는 체제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권력 상층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범죄가 규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갈등이론의 함의가 적용될 여지가 많다.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가. 북한법의 특징

일반적으로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정의실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대해 말할 때 사법은 분배 정의의 실현, 공법은 일반적 정의 내지 분배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은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규범이며 준칙"[25]으로 정의한다. 북한에 의하면 사회주의 법은 국가사회제도를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수단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 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25)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31.

특히 북한은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법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법은 계급투쟁의 무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며 낡은 사상에 물 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실시한다."[26]

또한 법은 사상교양 기능과 경제문화의 조직 동원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 규범과 준칙을 제시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그들이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게 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한다.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원칙과 방도, 거기에서 지켜야 할 사람들의 행동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하여 경제문화건설에서 조직 동원적 작용을 한다."[27]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법은 사회주의법무생활과 직결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28]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위법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법적통제를 실시하며, 법무생활에 대한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6) 백과사전출판사, "사회주의 법,"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27) 위의 책
28)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p. 330.

1990년 이전까지 북한은 법보다는 당에 의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다. 모든 주민이 국가가 만든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한다. 그리고 단일 국가경제체제 하에서 주민생계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통제는 체제유지 및 사회질서 유지에서 법적 통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한 국가경제가 파산하고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당적 통제를 통한 국가질서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상황에서 당적 통제와 함께 법적 통제를 주민통제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각종 법이 제정·개정되고 주민들에게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정과정과 법집행과정은 법제정과 그 준수를 둘러싼 각이한 이해관계 집단의 상호작용과정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의 변화와 그 준수현황은 1990년대 이후 변화된 북한상황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나.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라는 국가성격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법체계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일탈과 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의 형법 분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남한과 북한의 형법 분류 비교

<table>
<tr><th colspan="2">남한</th><th colspan="2">북한</th></tr>
<tr><td rowspan="2">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td><td>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td><td>반국가범죄</td><td>반국가 범죄</td></tr>
<tr><td>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td><td rowspan="2">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죄</td><td rowspan="3">일반 범죄</td></tr>
<tr><td rowspan="2">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td><td>공공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td></tr>
<tr><td>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td><td>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범죄</td></tr>
<tr><td>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td><td>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td><td>공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td></tr>
</table>

자료: 저자 작성.

남한의 형법은 침해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법을 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로 나누고 일반범죄를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형법을 남한의 법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29] 남한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29) 김영호·김용호(2014)는 남한 형법의 범죄 3분설에 따라 북한의 범죄유형을 분류했다. 그에 의하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는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자유에 대한 범죄, 재산범죄가 포함되며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사회적 도덕에 대한 죄가 포함된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 법인은닉 및 무고의 죄, 남한의 특별법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유형, 북한에서만 처벌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속한다.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 형법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하는 항목도 국가기능에 관한 범죄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한 형법에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①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④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 일부 항목이 북한 형법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죄에 포함되었다.

남한의 공공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집단적소동죄, 폭발물죄와 남한에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포함시키는 문서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와 공인 비법사용위조죄도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거의 없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관련된다.

또한 북한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에는 남한 형법조항에 없는 조항들도 있다. 비법국경출입죄, 비법국제통신죄, 영공·영해침입죄, 대외적권위훼손죄는 북한 당국의 폐쇄정책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북한 형법에만 있는 특수 조항이다. 일반 주민에게 부과되는 형벌인 과실적 비밀누설죄나 고의적 비밀누설죄, 출판질서위반죄, 정치협잡죄, 부당신소죄, 허위풍설날조죄도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 형법의 고유한 특별범죄다. 그러므로 북한 형법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 및 문화 분야 범죄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형법 또한 남한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의 형법상 범죄 대응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II-2〉 남북한 현행 형법상 사회범죄 대응 비교

사회적 법익		북한 형법상 사회범죄	남한 형법상 대응 범죄
공공의 질서·안전·평온	공공의 사회질서	불량자적 행위죄(제246조)	폭행·협박·공갈죄(제260조, 제283조, 제350조)
		패싸움죄(제247조)	소요죄(제115조)
		미성인범죄추긴죄(제248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공공의 법질서	직권참용죄(제251조)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
		거짓행세죄(제252조)	
		실력행사죄(제253조)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제324조), 점유강취죄 등(제325조), 중권리행사방해죄(제326조)
		명예, 칭호참용죄(제254조)	**형법상 없음**/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종류(제3조)의 관명사칭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	미신행위죄(제256조)	**형법상 없음**/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종류(제3조)의 미신요법
사회의 도덕	건전한 성풍속	매음죄(제249조)	음행매개죄(제242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범죄(제21조)[30]
		음탕한 행위죄(제250조)	공연음란죄(제245조)
	혼인관계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제257조)	**형법상 없음**/ 간통죄 폐지(2016년)
	부양, 보호 책임	늙은이, 어린이 보호책임회피죄(제258조)	유기, 존속유기죄(제271조), 영아유기죄(제272조), 유기 등 치사상죄(제275조)/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종류(제3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신고불이행
		양로사업질서위반죄(259조)	**형법상 없음**
		학대괄시죄(제260조)	학대, 존속학대죄(제273조)
	근로정신의 경제도덕	도박죄(제255조)	도박, 상습도박죄(제246조)
	종교감정의 공서양속	묘파괴죄(제264조)	분묘발굴죄(제160조)
기타 법익	국가 이익 및 재산	습득물횡령죄(제261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제262조)	**형법상 없음**
		약취물건거래죄(제263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제362조), 상습범(제363조)
	명령규범의 보호법익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65조)	부작위범(제18조)

자료: 저자 작성.

30) 우리의 경우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21조(벌칙)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남북한 간의 이러한 법적 대응의 차이는,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북한의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의 일탈과 범죄 인식이 남한의 인식과 다름을 유의하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체제 및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북한의 형법은 1950년 3월 3일 최초로 채택되었고, 1974년 12월 19일 1차 전면 개정된 이후,[31] 1987년 2월 5일 새로운 형법이 채택되었다.[32] 1987년 형법은 장별 법조문의 큰 변화 없이 1990년, 1995년, 1999년 등 3차례 개정되었다.[33] 이후 2004년에 와서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탈 현상, 즉 사회주의원칙에 반하는 행위 발생이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체제의 성격은 온전한 사회주의체제의 성

31) 1950년 북한 형법전은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총칙과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각칙으로 구분되며, 총 23장 3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개정된 1974년 형법전은 총 5편 17장 215개 조문으로, 제1편 형사정책의 기본, 제2편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 제3편 반혁명범죄, 제4편 일반범죄, 제5편 군사상 범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수, "북한 형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엮음,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p. 187~197.

32) 1987년 북한 형법전은 총 8장 161개 조문으로,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3장 반국가범죄,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입수된 별책 형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참고 (출판사항 없음).

33)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2008』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8), p. 161.

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배합된 체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체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일탈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여 단속해오다가, 형법상 범죄유형에 편입시켜 단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을 법적 근거에 따라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였다.

북한 당국은 2004년 형법전 편제를 변경하고 범죄유형을 기존 118개에서 245개로 확대 규정하였다.[34] 범죄유형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새로운 범죄유형 속에는 급격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범죄행위유형들이 다수 존재한다. 가령, 개인의 상적 행위죄(제110조)와 노력착취죄(제119조)가 그 대표적 범죄행위 유형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적 상거래행위와 노동력의 개인 고용행위 등이 북한 사회에서 나타났다. 이를 북한 당국은 범죄로 규정하여 단속했던 것이다. 2004년 개정 형법전은 같은 해 발간된 대중용 법전에 공개·수록되었다. 대중용 법전의 발간 취지를 보면, 형법전의 공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본 출판사는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을 편찬하여 발행한다(2004.8.25.).[35]

---

34) 2004년 북한 형법전은 총 9장 303개 조문으로, 1987년 형법전의 구성에서 제3장과 제4장 사이에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새로운 장으로 추가되었다.

3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북한 주민들 각자가 법의 존재를 알고 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 주민들이 법위반 시 북한 당국의 법적 처벌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 후,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실무 강화를 위해 2009년 법해석·적용에 대한 실무지침서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범죄수사기관의 인민보안원들의 법집행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북한은 계속해서 2006년 초판 증보판, 2012년 제2판, 2016년 제2판 증보판 발간을 통해 개정 형법에 규정된 신유형의 범죄규정을 공개하였다. 현행 북한 형법은 2016년에 발간된 법전(증보판)에 수록된 2015년 1월 21일 개정 형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5년 형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민 일탈과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북한 형법의 구성과 범죄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형법의 구성은 총 9장 300개 조문으로,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6장~제8장을 이 연구의 범위로 삼는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민 일탈과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 분석을 북한 형법 제6장에서의 사회문화범죄유형, 제7장에서의 행정관리범죄유형, 제8장에서의 사회질서범죄유형을 정치사회범죄유형으로 한정한다.

북한 형법상 범죄 개념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제10조).

범죄의 종류는 크게 반국가·반민족범죄(제60조~제73조)와 일반범죄(제74조~제300조)로 구분된다. 반국가·반민족범죄는 정치범죄로 취급되어 안전보위기관이 수사하고, 일반범죄는 인민보안기관 및 검찰기관에서 수사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46조).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관련 범죄는 모두 일반범죄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은 체제성격 및 시대의 특징적 변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던 시기에 제정된 1987년 형법, 고난의 행군기를 거쳐 종합시장이 허용된 시기 직후 전면 개정된 2004년 형법,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집권 직후 과도기에 개정된 2012년 형법,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 개정된 2015년 형법으로 나뉜다. 물론 북한 형법은 2004년 개정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2회씩 개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 형법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36] 또한 북한체제의 성격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주의 체제변화 전 시기, 시장 도입기, 시장활성화 모색기(또는 정권 과도기), 김정은 집권기 등으로 구분한다.

〈표 Ⅱ-3〉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과 북한 형법전

북한의 체제변화 시기	연도별 형법전
사회주의 체제변화 전 시기	1987년 형법전
시장 도입기	2004년 형법전
시장활성화 모색기(정권 과도기)	2012년 형법전
김정은 집권기	2015년 형법전

자료: 저자 작성.

36) 2004년 형법 이전에 개정된 1999년 형법은 그 형법전의 실체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에 존재하지 않는 점과 1999년 형법내용이 1987년 형법내용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존재하는 형법전만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시각과 유형 분류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위반사례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여 체제전환기 주민들의 국가 질서 준수,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실태와 그 변화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북한 형법의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에서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는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범하는 죄인 공무원 범죄와 국가질서를 지키는 과정에 범하는 죄인 주민들의 범죄로 나누고 있다. 북한 형법도 주민들의 국가질서위반과 간부들의 직무수행과정 범죄를 구분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국가기능 유지와 관련한 일반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총 26개 조항(집단적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날조·유포죄, 공인비법사용·위조죄, 문서·증명서의 비법처분·위조·사용죄, 출판질서위반죄, 폭발물·독성물질 비법휴대·사용·양도죄,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위반죄, 독립임무수행태만죄, 고의적비밀누설죄, 과실적비밀누설죄, 비법국경출입죄, 비법국제통신죄, 영공·영해침입죄, 거짓신고·진술죄, 증인협박죄,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일반범죄은닉죄, 일반범죄불신고죄, 도주죄, 뇌물죄, 정치협잡죄, 담보처분재산비법처분·이용죄, 부당신소죄, 대외적권위훼손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국가기능 유지과정에서 범하는 공무원의 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는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이

다. 북한은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가 공식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직장에 다니는 모든 주민은 국가에 고용되어 있어 남한 식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러므로 북한 형법에서는 직무상 범죄의 대상을 관리일꾼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리일꾼의 특징은 첫째,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둘째,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37] 예를 들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원급 이상의 일꾼, 전임 창고장, 직장장, 협동농장의 작업반장 이상, 당 근로단체 유급일꾼 등이 관리일꾼으로 된다고 한다.[38] 그러므로 남한에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어서 공무원범죄의 주체로 되지만, 북한에서 일반 교사는 관리일꾼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무상 범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

북한 형법의 직무에 관한 죄는 12개 조항 (직권남용죄, 월권행위죄, 직무태만죄,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 신소청원처리질서위반죄, 국가기관권위훼손죄, 비법체포·구속·수색죄, 강제수단 비법적용죄, 사건과장·날조죄,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부당한 판결·판정죄, 판결·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사회관리질서 위반죄에 속하는 형법조항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면, 북한에서 국가기능 유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추론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국가기능 유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일탈은 국가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외국인 불법 접촉, 국가행정질서 위반, 국가업무 태만, 간부들의 일탈, 세외부담, 인권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아래의 〈그림 Ⅲ-1〉 북한의 행정관리 일탈과 범죄 분류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37) 김근식, 『형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161.

38)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p. 382.

〈그림 Ⅲ-1〉 북한의 행정관리 일탈과 범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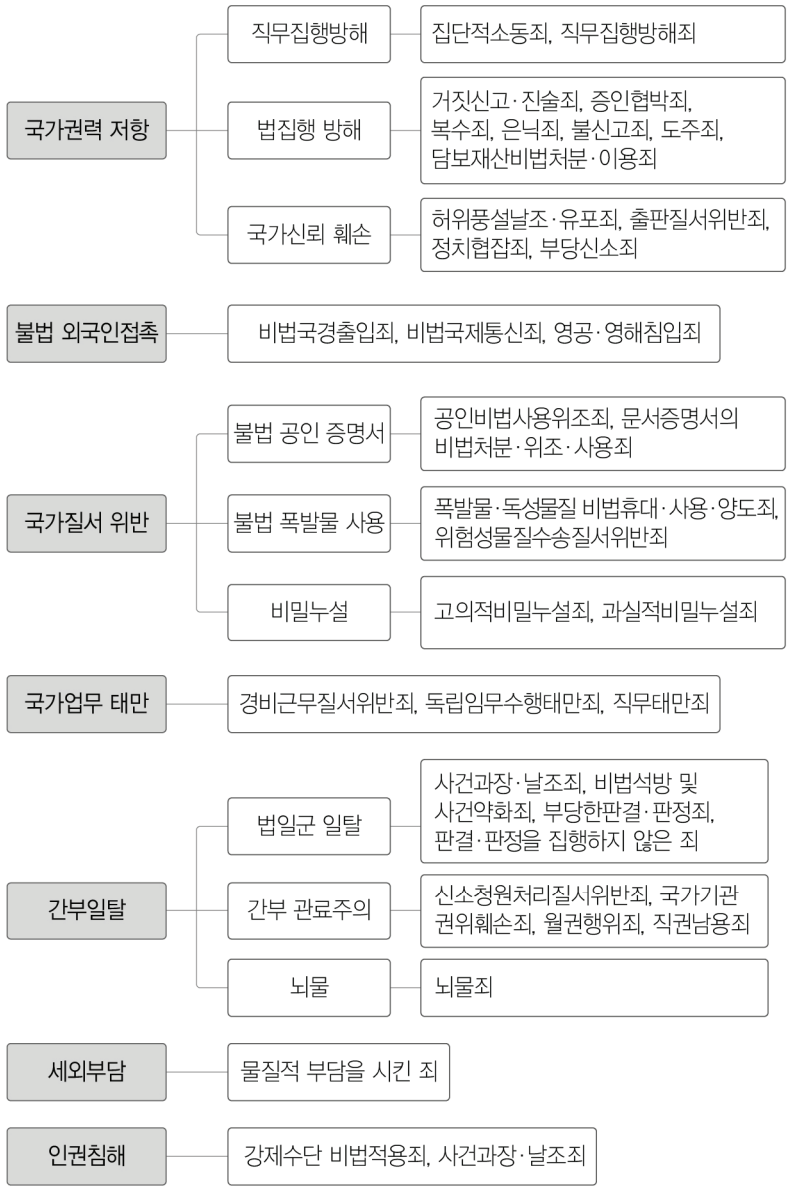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이후 행정관리 분야의 일탈과 범죄 실태와 북한 당국의 대응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장 신뢰성 높은 문헌인 2009년 북한 인민보안성에서 발행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법일군 참고서')를 분석한다. 인민보안성에서 발행한 참고서는 2009년에 발행되었으므로 2004년 형법에 기초하여 분류되었다. 북한에서 이 책을 발행한 취지는 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서는 법조항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전역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출판되었으므로 김정은 집권 이후 드러난 일탈과 범죄 등이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도 2004년 형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된 법적 조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이후 실태와 변화 및 참고서에 제시되지 않은 법적 대응 조치 등은 김정은 시대 개정된 최근 형법 조항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다.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가. 국가권력에 대한 산발적 저항

(1) 집단소요와 직무집행방해

집단소요와 직무집행방해는 다같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지만 집단적으로 방해하면 집단소요죄, 개별적으로 방해하면 직무집행방해가 된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집단소요 수준까지 높아졌다. 집단소요죄는 10여명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

나 1~2명이라도 집단을 배경으로 항의를 한 경우에 구성된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정황 284) 인민보안서 일군들이 시장에 나가 팔지 못하게 된 물건들을 파는것을 집중단속하여 압수한 물건들을 수매기관에 보관시키고 철수하였다. 그러자 기계설비와 의약품을 팔다가 압수된 홍치호와 김명수가 찾으러 가자고 소리치자 잠간사이에 20여명이 따라나섰다. 홍치호와 김명수는 수매기관에 이르자 기세가 등등하여 압수된 물건들을 당장 내놓으라며 책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들어메쳐 박살내는 란동을 부렸다.[39]

교화소 내의 광산에서 일하던 수인들은 국가적으로 추가 공급하게 된 식사를 제대로 내주지 않자 집단 단식에 들어갔으며 결국 형을 5년 더 받은 사건도 있었다.[40]

북한에서 집단항의는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는 범죄이다. 형벌수준을 보더라도 노동단련형[41]이 도입된 2004년 형법에서 최소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다. 그러나 2012년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집단소요가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했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주모자는 5년~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이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39) 위의 책, pp. 348~349.

40) 사례 1

41) 북한 형법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있다.

한편 이는 주민들이 시장 활동 과정에서 당한 부당한 단속이나 처벌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개별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서는 아래의 사건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 (정황 285) 려한식은 해당 기관의 법적승인없이 위치를 잡아 살림집을 짓다가 건설감독원 최길용이 중지시키자 네가 내집을 짓는데 무슨 상관인가고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때려 이발 두대를 부러뜨리고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게 하였다. 범의감정결과 최길용의 얼굴에 난 상처는 경상해로 결론되였다.[42]

> (정황 286) 순찰보안원 리광식이 시장밖에서의 장사행위에 대한 단속사업에 나갔다가 뒷골목에서 음식을 끓이며 술을 파는 녀인을 단속하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양진과 류운룡, 고영진이가 넌 술을 안먹고 사는 놈인가고 하면서 리광식의 얼굴에 술을 쏟아부어 단속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43]

> (정황 287) 방직공장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였는데 그와 련관된 상급기관의 책임일군인 호순일이가 부지배인을 시켜 검열나온 법일군들에게 먹자판을 벌리게 하고는 전화로 그들이 검열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세우겠다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여 더는 검열을 할 수 없게 하였다.[44]

---

42)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50.

43) 위의 책, p. 351.

44) 위의 책, p. 352.

위의 사건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불복한 것인데 그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노골적이다. 이는 주민들이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주민들이 상해치사를 가하면서 법집행을 거부하고 간부들이 법집행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를 노골적으로 행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2) 법집행방해

북한이 법치를 강화하면서 법집행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집행 방해 행위는 거짓신고·진술, 증인협박, 복수, 일반범죄은닉, 불신고, 구속인·교화인 도주, 담보처분한 재산 비법처분이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는 아래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황 307) 부양가족 정순녀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리혼결심을 가지고 다른 마을의 독신인 박철호와 치정관계를 맺고 살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때 이용하기 위해 자기 집 열쇠를 주면서 TV를 비롯한 물건을 가져다 보관하라고 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 다음 도적 맞혔다고 보안서에 신고했다.[45]

(정황 308) 한춘호는 국가재산 훔친 범죄를 감행하고 인민보안기관의 수사가 집중되자 자기의 범죄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우기 위하여 수사일군들을 찾아와 거짓신고를 하였다.[46]

(정황 309) 건설사업소 로동자 한길남은 자기 동생 성호가 불순록

45) 위의 책, p. 368.

46) 위의 책, p. 370.

화물을 보고 류포한 행위로 인민보안기관에서 형법 195조에 해당한 사건조사를 받게 되자 증인 한순철을 찾아가 입을 잘못 놀리는 날이면 죽는줄 알라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47]

(정황 310) 감찰원 김승기가 직무상 과오로 철직되어 탄광로동자로 내려가자 그곳에 있던 교화출소자 민두식이가 이미전에 자기를 취급하여 교화소에 보냈다고 하여 갱안에서 심히 구타하여 중상해를 입혀 병원에 실려가게 하였다.[48]

(정황 311) 도시경영사업소 로동자 문영길은 체육학원에 다니는 한 재명이 밤중에 수십만원분의 물건을 가지고 나타났기에 어디에서 난것인가고 물으니 그런 것은 묻지 말라고 하여 감추어줄것을 요구하자 자기 집 천정우에 올려다 숨겨놓은 후 그가 간 다음 5만여원분에 해당한 값나는 물건들을 몰래 빼내여 자기가 가지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먹어 은닉죄로 처분되었다.[49]

(정황 313) 구류장에 갇혀있던 강도범죄자 최명호는 계호원이 졸고 있는 사이 몰래 감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에게 발각되자 목조르기를 하여 질식시키고 도주하였다.[50]

이러한 법집행 방해 행위들은 북한에서 법이 매우 허술하며 주민들의 법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황 318) 벽돌공장로동자 조히택은 자기 아들 조승호가 개인재산 훔친범죄로 예심받는 기간 예심원 박영철의 집에 찾아와 2명의 입

47) 위의 책, p. 370.
48) 위의 책, p. 371.
49) 위의 책, p. 372.
50) 위의 책, p. 375.

회인을 세우고 재산담보처분한 다음 그것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후 해당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자 내것을 내가 처리하는게 무슨 상관인가고 하면서 망탕 써버리였다.[51]

북한에서 재산담보처분과 같은 법행위는 최근에 진행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로 보인다. 담보 처분한 재산을 비법 처분하면 형벌이 가해지는 행위임을 알았다면 제멋대로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가족이 생계단위로 되면서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가족구성원이 범한 범죄는 숨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시기 북한 당국은 가족 친척보다 국가가 더 귀중하다고 교양하여왔으므로 사람들은 가족이 지은 죄도 국가 앞에 솔직히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북한 형법은 가족인 경우에도 형법 제95조 국가재산강도죄,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제302조 개인재산강도죄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닉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일군 참고서'에 의하면 농장원 최안무는 아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인민보안소 담당보안원이 나와 요해할 때 자기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 후 아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최안무가 이미 아들이 감행한 살인범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불신고죄로 처리되었다.[52]

51) 위의 책, p. 378.

52) 위의 책, p. 373.

(3) 국가에 대한 불신 노출

북한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체계가 거의 없어진데다가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동원 강도만 높아지고 있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는 아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정황 288) 허풍산은 어떤자가 조작해낸 말을 듣고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농장원들이 논두렁에 심은 콩을 모두 바치게 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렸다. 그 말을 들은 일부 준비되지 못한 농장원들이 그것이 진짜 국가에서 취한 조치인줄 알고 좋지 못한 의견을 부려 사회적물의가 일어나게 하였다.[53]

북한 당국은 농장에서 생산한 알곡을 사정없이 공출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논두렁에 심은 콩을 바친다는 말도 사람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 속에 불만을 폭발시켰을 것이다.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말을 사실로 믿게 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정황 320) 세멘트공장 로동자 김명길은 자기가 어느 기관의 부원을 하다가 떨어진 문제가 군당일군에게 있다고 생각하던 나머지 그에 대하여 도당위원회와 중앙당에 무려 8차에 걸쳐 신소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부문에서 련합료해조를 무어가지고 내려와 군당일군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여러가지로 검토하여 김명길의 신소가 완전히 과장날조된 부당신소라는것이 판명되었다.[54]

---

53) 위의 책, p. 352.

‘법일군 참고서’에서는 이 죄가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로 신소처리기관의 사업에 저해를 주거나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러 번 반복 신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표현이며, 2004년 형법에서 부당신소죄가 개설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협잡죄는 2012년 형법에 새로 첨부된 조항으로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으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찾지 못했다. 정치적 성과를 위조하거나 성분을 위조하는 행동 등으로 추론해 본다.

나. 불법 외국인 접촉 증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힘을 넣는 분야는 외국과 단절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의 승인 하에서만 외국인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기업소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기업소에 무역권을 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구역·군만이 외화벌이 회사를 조직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으며 그 회사의 일꾼만이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화를 벌자면 국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외국인과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 제시된 사건은 아래와 같다.

54) 위의 책, p. 379.

(정황 302)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사람은 자기 어선을 몰고 공화국의 승인없이 몰래 우리 측 령해에 들어와 바다무역을 하려다가 해상경비순찰정에 단속되였다. 해당 기관에서 조사후 적대적행위가 없다는것이 확증되여 인민보안기관에서 취급처리하도록 넘겨왔다.[55]

바다에서 밀무역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 행위로 주로 군부의 비호아래 행해지는 것이 많다.

(정황 303) 농장원 박인학은 자기가 관리하던 소를 끌고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사람에게 50만원을 받고 판 다음 그가 소를 밖에 매놓고 자리를 뜬 사이 다시 그 소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와 농장에서 리용하였다.[56]

(정황 304) 북부국경일대에서 살고있는 서영철은 자기 마을에 월경기도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국경통과로정을 알려주면서 다른 나라의 어디로 가려면 국경을 넘어가 보라는 식으로 소개해주고 그들이 국경을 넘어갔다온 다음 인사차림으로 50만여원분의 물건을 받아가지였다.[57]

노동력수출은 국가 외화벌이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으나 폐쇄정책의 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2004년 형법에 대외적권위훼손죄를 첨부했다. 그러나 재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

---

55) 위의 책, p. 364.
56) 위의 책, p. 365.
57) 위의 책, p. 366.

(정황 321) 재외대표부 로동자 독고정남은 그 나라의 개별적 사람으로부터 난방관을 수리해줄데 대한 청탁을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15살난 녀자를 강간하고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적발체포되었다. 해당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강제출국시키면서 우리 나라에서 처벌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58]

북한에서는 이를 대외적권위훼손죄로 처벌하였다.

북한은 2015년 형법에 비법통신죄를 첨부하였다. 북한 국경지역에서는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국제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통화 대상은 중국사람 또는 남한의 탈북자이다.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국경통제가 강화되어 탈북자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경지역 주민들 속에서 핸드폰 사용자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가. 국가질서 위반

(1) 돈벌이에 필요한 공인과 증명서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개인인감이 아닌 공인 직인만이 있으므로 이는 공공질서가 아닌 국가질서 위반죄로 취급된다. 북한에서 공인비법사용·위조와 증명서와 문서 위조·불법사용은 누구나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법행위다. 그러므로 공인비법사용죄는 2012년 형법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감형되었고 문서·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도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무거운 경우

58) 위의 책, p. 380.

에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통행증은 현재도 대부분 돈을 주고 발행받고 있어 법적처벌을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서인지 2012년 형법에서는 증명서 매매죄가 삭제되었다.

> (정황 289) 부원 안명현은 공장에 필요한 건물의 리용허가신청서를 내는 기회에 단위책임자의 승인없이 빈 종이들에 여러매의 공인과 보조공인을 찍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과 물자거래계약을 맺고 리행하지 못하여 해당 기관들에서 산소가 제기되게 하였다.[59]

북한에서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소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안명현도 직권을 이용해서 공인을 도용함으로서 장사를 크게 할 수 있었으며 그의 계획대로 장사가 되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 (정황 291) 자재공급소 로동자 리용묵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무역회사에서 기요사업을 하는 4촌누이 리련희를 구슬려 그 회사의 부원이라는 가짜신분증을 만들게 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대치물자를 주고 전복, 해삼 등 수산물과 교환한 다음 밀수자와 공모하여 외화를 받고 밀수함으로써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었다.[60]

대성회사 사장은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지사장 신분증을 만들어 주어 내려 보내 외화벌이를 하게 했는데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돈을 꾸어가지고 돌려주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러다가 붙들렸는데 이에 책임을 지게 된 것을 뇌물을 먹여

59) 위의 책, p. 353.
60) 위의 책, p. 355.

서 벗어났다.[61] 이와 같은 예들은 북한에서 무역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개인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해서 국가기관 일꾼으로 사칭하여 장사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정황 292) 회계부원 오해옥은 공장에 대한 법기관의 검열이 들어오자 비법처리한 액수를 회계장부들의 내용을 고치는 방법으로 맞추어 놓았다.[62]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는 2중 장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해옥은 운이 나빠 걸렸을 뿐이다.

(2) 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폭발물 사용

폭발물은 인명과 재산에 대한 파괴력이 매우 큰 물건이므로 불법사용 시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북한에서는 폭발물 수송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므로 폭발물 수송질서 위반과 관련한 처벌수위를 높게 정했다. 그러나 폭발물 사용에서 무질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는 아래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 (정황 295) 자재과장 박철남은 휘발유를 아무런 소방대책도 없이 몰래 유개화차에 실었다. 휘발유가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열차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휘발유를 담은 비닐통의 밑 부분이 터지면서 휘발유가 흘러내려 화차바퀴축함에서 일어난 불에 당기게 되었다. 결과 유개화차 2량과 차에 실려 있던 50만원의 국

61) 사례 1

62)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355~356.

가재산이 불에 탔다.[63]

최근에는 폭발물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2012년 형법에서는 그와 관련한 조항도 새롭게 개설했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개인에 의한 광물과 석탄 채취가 늘고 있다. 그런데 화약은 국가통제품이다. 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화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약 뇌관 도화선을 기업소에서 불법으로 빼내거나 자체로 제조하고 보관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64]

(3) 돈이 되는 비밀

북한에서는 비밀엄수를 공민의 중요한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비밀에 대한 의식은 높지 않다.

(정황 300) 교육연구소 타자수 리금희는 중앙급 대학입학시험문제를 타자하면서 자기와 친한 동무인 장영실에게 화장품세트 1조를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주었다. 그후 장영실은 시험문제를 가져다가 답안까지 작성하여 과목당 1만 5000원 또는 1만원씩 받고 수험생들의 학부형들에게 팔아먹었다. 이로 하여 중앙급 대학입학생선발에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고 시험문제를 다시 내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65]

(정황 301) 공작기계공장 설계실장 전명수는 새로 연구개발한 〈T-20〉 설계도면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렬차에 올라 졸다가 잃어버렸다. 그후 한달이 지나 어느 역기다림칸에서 열려있는 트렁크 안에 설계도면이 들어있는것이 발견되여 찾았다.[66]

63) 위의 책, pp. 358~359.

64) 사례 1

65)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62.

양강도의 군간부는 신원요해를 위한 출장중에 술을 먹고 가방을 통째로 도적 맞혔다. 끝내 찾지 못해 처벌 제대되었다.[67]

북한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비밀누설행위는 경제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입학시험문제 누설은 상적 행위와 연결되어 사건이 확산되었으며 설계도면 분실은 도적이 성행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비밀문건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도적질의 목적은 돈이나 물건이었으므로 관련 없는 비밀문건은 외딴 곳에 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2004년 형법에 출판질서위반죄를 첨부하였다. 북한에서는 프린터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기관이 보유하는 프린터가 늘면서 그를 이용하여 위조화폐를 찍거나 국가승인을 받지 않은 출판물을 복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증언에 의하면 위조화폐사건이 적발된 것도 몇 건 된다고 한다.[68]

나. 국가업무 태만: 방만한 국가 업무

(1) 직무유기

북한 형법에는 관리일꾼의 범죄로 직무태만죄, 일반 주민의 범죄로 경비근무질서위반죄와 독립임무수행태만죄 조항이 있다. 북한에서 직무유기는 주민들과 간부들 속에서 일상화된 행위가 되고 있다. 간부들은 국가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을 이용하여 재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노동자들은 국가일은 무보수노동이므로 상급의 눈을 피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그

66) 위의 책, p. 363.
67) 사례 3
68) 사례 1

리고 직장에 출근해도 공장이 대부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회동원에 참가하게 된다. 주민들은 사회동원은 출석이 중요할 뿐 일은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서는 직무태만죄로 아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정황 326) 비료공장 합성직장 직장장 민영기는 고압열교환설비를 집중보수하면서 불량품을 조립하여 3개월동안 바킹짬으로 시간당 300㎥의 질소와 수소혼합가스가 새여 240여t의 질소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69]

북한에서는 계획경제가 파산했지만 시장경제 도입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민영기의 직무태만죄는 국가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속품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정황 297) 상점경비원 원용선과 신주일은 경비근무를 서면서 술을 마시고 만취되여 잠든사이 어떤자가 손수레를 끌고와 수십만 원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70]

(2) 직권남용

(정황 323) 철도사령원 박도철은 도자기공장 자재과 부원 강대철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고 중요물질공사장에 배차하여야 할 화차 1량을 떼내여 그가 요구하는 탄광으로부터 도자기공장까지 석탄 수송에 쓰도록 배차하였다. 결과 물길공사장에서는 불도젤(불도저)과 양수기를 싣고와야 할 화차가 없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69)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86.
70) 위의 책, p. 359.

큰 지장을 받게 되였다.[71]

(정황 324) 광산지배인 현재남은 5.1절 체육경기를 조직하면서 자금문제를 론의하다가 회계장 한경숙에게 로동자들에게 생활비로 지불할 현금 200만원을 뚝 떼서 체육경기용상품을 사다가 리용하게 하였다. 결과 일부 로동자들속에서 공장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기때문에 기분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는 좋지 못한 의견들이 제기되게 하였다.[72]

(정황 325) 기능공학교 부교장 한춘보는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의 울타리공사를 하면서 구역도시경영과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해당 기관의 지시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터밭(텃밭)까지 침범하여 울타리를 2m나 내다가 높게 만들고 그 둘레에 키가 큰 나무들을 심었다. 결과 터밭을 침범당하였거나 마당에까지 울타리가 생겨 해빛을 받을수 없게 된 20여세대의 살림집들에서 불만을 가지고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에 신소가 제기되게 하였다.[73]

북한에서 직권남용죄는 남한의 직권남용죄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북한은 직권남용죄가 구성되려면 그로 말미암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대한 결과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하락시켰을 경우다.[74] 그리고 직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이기적 목적이 없이 일을

71) 위의 책, p. 384.
72) 위의 책, p. 385.
73) 위의 책, p. 391.
74) 김근식, 『형법학』, p. 162.

잘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75] 그러나 남한의 형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대한민국 형법 123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직권남용죄는 국가적인 성과창출에 지장을 주는 것을 경계하는 법이며 남한은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가. 법을 사유화하고 있는 법일꾼

북한 형법의 법일꾼 관련 범죄조항은 5개로 직무상 범죄조항 11개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에서 법집행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법일꾼들이 국가관이 부족하고 법집행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는 아래의 사건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 (정황 335) 예심원 최윤호는 대량의 아편을 이러저러한 특수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밀매한 행위로 구류된 피심자 한금일의 사건을 예심하면서 그의 가족, 친척들과 련관된 부문의 일군들로부터 800US＄의 돈과 TV를 비롯한 많은 물자를 뢰물로 받아먹고 개인들에게 마약을 판 행위만 문제시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결과 10년이상 로동교화형에 처할 피심자 한금일에 대하여서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게 하고 마약밀수를 목적으로 한금일에게서 마

75)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83.

약을 산 특수기관의 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러한 형사책임도 추궁하지 않았다.[76]

(정황 314) 검찰소 검사 박문일은 검찰감시법에 따라 국가재산횡령범죄행위를 한자를 검찰소에 억류시켜놓고 취급하다가 도주시켰다.[77]

(정황 336) 수사원 정대철은 로동교양대의 뒤산에서 양묘사업소 로동자 김영천이 력사유물도굴행위를 하다가 주변에서 소리치자 달아나는것을 로동교양처벌자들인 주영일과 김금성이 따라가 붙잡아온것을 그들과 함께 여러명의 로동교양처벌자들이 달라붙어 때려죽인 사건을 상부에 제기되면 재미가 없다고 하며 가해자들로부터 뢰물을 받을 목적밑에 피해자가 달아나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사망한것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78]

(정황 337) 재판장 최효일은 정당방위초과살인죄로 기소된 피소자 염기준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사전에 600US$의 돈을 받아먹고 정당방위행위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그후 이에 대한 피해자측의 신소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항의에 의하여 상급재판소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79]

(정황 338) 재판소로부터 피소자 한남기에게 2년간의 로동단련형을 적용할데 대한 판결서등본과 확정통지서를 받은 군인민보안서 예심원 최우춘은 웃단위일군의 부탁을 받고 한남기를 집에 내보내여 병치료를 시킨다고 하면서 군인민병원의 감정과 그에 의한 재판

76) 위의 책, p. 393.
77) 위의 책, p. 375.
78) 위의 책, p. 394.
79) 위의 책, p. 395.

소의 형벌집행정지판정을 받음이 없이 1개월간이 되여오도록 형벌 집행을 하지 않아 그가 다른 나라로 도주하게 하였다.[80]

법일꾼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공무원 사칭범죄는 주로 보안원, 검열대, 군인신분 위조로 나타나고 있다.

(정황 293) 무직자 한상철은 인민보안원의 신분증명서를 훔쳐 그것을 가지고 시장밖이나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대량의 물건들을 빼앗아가지였다.[81]

한상철의 범죄는 증명서의 비법처분·위조·사용죄와 군인으로 가장한 죄, 개인재산 빼앗은 죄가 병합된 형사범죄로 취급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나. 군중 위에 군림하는 간부들

북한은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 형법조항들을 논하면서 간부들이 직무상 직위를 벼슬자리로 생각하면서 그 어떤 특권이나 특전을 누리려고 하거나 직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혁명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직권을 휘둘러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뇌물을 받아먹거나 인민들에게 호령하는 것과 같은 관료식 행동은 국기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대중을 이탈시킬 수 있다고 한다.[82] 그러나 북한에서 신소청원 묵

80) 위의 책, p. 396.
81) 위의 책, p. 356.
82) 김근식, 『형법학』, p. 156.

살, 아랫사람 무시 같은 행동이 더 늘고 있다.

(정황 329) 군인민위원회의 신소부원 석상호는 관내 협동농장의 분조장 함세일로부터 자기와 물질관계로 엉켜있는 관리위원장 지영철의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신소가 제기되자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신소자 함세일의 허물을 들추어 그를 분조장 자리에서 떼여리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7작업반 농장원으로 내보내도록 하였다.[83]

(정황 330) 작업반장 우정호는 농장원 박태길이 자기에 대한 신소를 하였다고 그에게 힘든 일만 시키고도 공수를 적게 주고 쩍하면 트집을 걸어 압력을 가하였다.[84]

(정황 331) 종합식당 책임자 한숙녀는 년령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쩍하면 종업원들에게 야비한 말을 하거나 쌍욕을 퍼부으며 세도를 부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이 상급기관에 찾아와 울면서 옛날 지주, 자본가놈들보다 더한 그와 일을 못하겠다고 제기하였다.[85]

(정황 332) 피복 공장의 창고장 김명훈은 응당 내주어야 할 자재를 가지고 재세하면서 개별적으로 자재를 타러 오는 녀성종업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창고안의 으슥한 곳에 끌어들여 끌어안으며 추잡한 행위를 하거나 옷을 벗기려 하다가 반항에 부닥쳐 성교하지 못하고 내보냈다. 그리하여 녀성종업원들속에서 그를 〈징글보〉, 〈바람쟁이〉라고 하면서 창고장 자리에서 떼던가 자기들을 다른 부문에 조동시켜달라고 공장책임일군들에게 제기하였다.[86]

---

83)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88.
84) 위의 책, p. 389.
85) 위의 책, p. 390.
86) 위의 책, p. 392.

다. 일상화된 뇌물행위

뇌물행위는 북한에서 일상화·구조화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의 월급이 노동자보다 조금 높을 뿐 큰 차이가 없다. 중앙당이나 군 간부들이 국정가격으로 공급을 일부 받을 뿐 국가공급으로 살 수 있는 간부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간부들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과의 생활상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형법에서 뇌물죄를 직무상범죄에서 삭제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 포함시켰다. 이는 뇌물죄를 조명해서 오히려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거나 너무 뇌물죄가 일상화되어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 (정황 340) 도시경영관리부장 리영순은 국가공공건물 13동과 살림집 1세대를 이관, 인수해주는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돈 1만 1810US$와 현금 723만원, 휘발유표 94장, 디젤유표 24장, 승용차 1대를 뇌물로 받아 미국돈 8560US$, 현금 683만원, 휘발유표 94장, 디젤유표 24장은 경영용물자구입에 소비하고 승용차는 자기가 타려고 차량감독부서에 기관등록으로 신청하였으며 미국돈 3250US$와 현금 40만원을 사취하였다.[87]

북한에서는 이 경우 리영순이 받은 뇌물의 양은 기업 관리에 쓴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소비하거나 사취한 양으로 계산한다. 그리하여 리영순이 사취한 미국 돈 3,250 달러와 현금 40만 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7) 위의 책, p. 398.

(정황 341) 신발공장보위대장 김금혁은 다섯달여간에 보위대장 직무를 리용하여 공장에 신발을 빼내기 위해 찾아온 부양가족 임해옥을 여러차례 공장에 비법출입시킨 대가로 그로부터 현금 1만원, 수산물 8만원분, ≪크라빈≫ 담배 10곽(1650원분)을 받았으며 공장안의 3명의 종업원들이 신발을 훔쳐내가는것을 눈감아주고 현금 17만원을 받아 총 26만 1650원분의 돈과 물건을 가정생활에 소비하였다.[88]

'법일군 참고서'의 예시는 아랫간부들 속에서 나타난 뇌물행위 중 비교적 약한 것들이다. 사실 뇌물행위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많고 액수도 크다. 북한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관계없이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무조건 뇌물을 써야 한다.

저라면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검찰소, 보안서, 은행, 통계부 이 여섯 기관에 항시적인 압박을 받게 돼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제 사업은 국가가 요구하는 경제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무슨 범죄가 상생이 되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하고 사업관계가 좋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뇌물이 반드시 안받침 되지 않으면, 북한은 현재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나니깐 제가 우선 인민위원장을 완전히 껴야 되고, 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직비서.... 내가 행정경제적으로 인민위원회 지시를 받고 내 당적인 제가 당원이고, 당에서 저를 임명했으니깐 내 모든 정치생활, 경제활동에 대한 총화를 당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우리 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직비서, 검찰소장, 보안서장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벌써 모든 단계마다, 예를 들어

88) 위의 책, p. 399.

서, 명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체 사생활까지 내가 돌봐야 된단 말입니다. (사례 16)

5. 세외부담과 인권

가. 국가재정 대신 세외부담

북한 형법의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는 사실 북한지도부가 종용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위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면 자체로 한다'는 구호까지 만들어내면서 아래에서 자체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체로 한다는 것은 필요한 자금과 자재 노력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인민반과 직장에서는 사회적 과제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돈이나 노력동원을 일상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 세외부담 시키는 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시가 내려와요. 동원해서 하라고, 사회적 동원 시키라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부담 주는데 이건 하지 말라면서도 그건 김정일 때부터 세외부담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외부담인데 한마디로 평양에 꽃밭 조성. 김정일이가 중국 갔다 와서 중국 가니까 도로 옆에 화단 조성 쫙 했더라. 그래서 평양시에서 총 동원해서 도로 가운데 까고 한번 했던 적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마다 콩자갈을 20킬로씩 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동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발 빠른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있는 마광기 갖고 자갈 쪼갠 거 나오는 거 가서 돈 주고 사다가 어디다 쌓아놓고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개인집들이

세대별로 나와서 언제 콩자갈 주우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가 내죠. 이런데서 만약 조직한 사람이 이런 걸 절대 돈 주고 사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한다. 이렇게 못했을 때 세외부담에 걸리는 거예요. (사례 2)

양강도 인민반에서는 월평균 북한돈 2만원~4만원(사례 3), 평양에서는 동원에 1회 빠질 때마다 5만원~10만원을 인민반장에게 주었다. (사례 7)

직장에 부과되는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한 부담은 매우 많다.

충성의 외화벌이, 군중외화벌이. (외화벌이기업소인데 외화벌이 과제가 또 있어요?) 아니, 이건 모든 공장기업소 주민한테 다 차례지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왜 없는가. 우린 외화 버는 단위니깐 우리는 거기서 뚝 잘라내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화벌이사업소가 아닌 기업소는 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중외화벌이과제, 분토과제, 파철과제, 국토총동원계획, 산림과제, 철도과제, 도로과제, 그담에 군사훈련과제, 농촌지원. 이걸 이거만 하재도 내가 지배인으로서 생산자 기업운영보다도 여기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사례 16)

만약 양로원을 지으라고 하면 도에서 다 부담해요. 도에서는 각 시에 내려 먹이고, 시에서는 인민반별로 다 포치해서 뭐 뭐 이제 돌쌓기 하라. 인민반에서 다 짓고 주민들이 다 동원해서 짓는데 다 지어놓으면 김정은이가 돌아보고 이게 당의 배려로 의해서 양노원이 건설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원은 아니에요. (사례 11)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는 북한에만 있는 특수한 형법조항이다. 북한은 국가경제 파산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

운영의 상당부문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돈 또는 물건을 거두거나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등장 이후 선전성 건설이 늘면서 세외부담이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간부들의 범행으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법일군 참고자료에서는 대외건설사업소의 직장장 김진걸은 꾸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종업원들로부터 미국 돈 3,800달러와 휘발유표 19장(285kg)을 바치게 한[89]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대외건설사업소의 경우 모든 직장은 '더벌이' 명목으로 자체로 외화를 벌어서 위에 바치는 제도가 있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음성화되어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가렴주구로 고통을 겪고 있다.

나. 국제사회를 의식한 인권침해 방지

북한은 인권침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박하면서 한편으로 인권침해로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04년 형법에서는 불법 구속·구인·수색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정했고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는 경우 처벌조항도 넣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법일꾼이 고의적으로 조문에 지적된 행위를 법적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하였거나 법적 요구에 어긋나게 하였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정의되어있는 법조항을 북한에서는 사건과장·날조죄로 명함으로써 인

89) 위의 책, p. 391.

90) 박영자 외, 『북한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91.

권침해 현상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행정처벌법에 인권유린행위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처벌법 "제165조 (인권유린행위) 법일군이 인권유린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그러나 인권유린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처벌법에 속했으므로 처벌강도가 매우 낮으며 인권침해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정황 333) 농작물경비에 동원된 보안원 윤명일은 낟알찾기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러한 혐의근거와 수색결정서를 작성, 비준받음이 없이 관내 12세대의 살림집들에 대한 수색사업을 망탕 진행하여 5세대의 살림집들에서 터밭농사와 돼지를 길러 기관에 수매하고 받은 강냉이와 벼 650kg을 훔친 물건이라며 압수처리하였다.[91]

(정황 334) 수사원 윤치선은 패싸움으로 단속된 패의 관계자들을 구금시켜놓고 조사취급하면서 그들을 때리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취급하는 방법으로 악형을 가하여 관내의 미결사건으로 남아있는 살인강도사건을 그들이 감행한것으로 날조하여 예심부서에 넘겼다. 그후 예심과정 수사원 윤치선의 조사자료가 날조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92]

'법일군 참고서'에서 예로 지적한 것은 그리 엄중하지 않은 사건만을 선택한 것이며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

91)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92.

92) 위의 책, p. 392.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가. 피동분자 용서, 주동분자 강한 처벌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현 북한 형법은 1990년에 채택된 후 10회에 걸쳐 수정되었다. 북한법연구회에서 수집한 자료는 북한에서 발표된 채택·수정 날짜와 차이난다. 북한법연구회에 의하면 북한 형법은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되었으며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되었다. 그 후 2004년, 2010년, 2011년, 2012년 4월, 5월, 2013년 6월, 9월, 11월, 2014년, 2015년 1월, 7월 수정보충 되었다.

1987년에 제정한 형법은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된 법과 거의 차이가 없다. 북한 형법이 크게 수정된 것은 2004년과 2012년이다. 그러므로 1990년 형법은 김일성 시대의 형법 2004년 형법은 김정일 시대의 형법, 2012년 이후 형법은 김정은 시대의 형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을 허용하기 전인 1999년 8월 11일 형법과 시장이 허용된 이후 발표된 2004년 형법, 그리고 김정은 정권 출현 후의 변화를 담은 2012년과 2015년 형법에서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를 비교 고찰했다.

법의 변화는 법조항의 변화와 형량의 변화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북한 형법의 법조항은 2004년 대폭 늘어났고 2012년과 2015년에도 신설·수정되었다. 2004년 형법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의 법조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2004년 형법에는 11개 조항(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날조·유포죄, 증명서매매죄, 출판질서위반죄, 과실적 비밀누설죄, 봉인손

상죄, 증인협박죄, 복수죄, 뇌물죄, 부당신소죄, 대외적권위훼손죄)이 첨부되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인 2012년 형법, 최근 형법인 2015년 형법 조항도 일부 변경되었다. 2012년 형법은 2개 조항(독립임무수행태만죄, 담보처분재산비법처분·이용죄)이 첨부되었으며 4개 조항(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 증명서매매죄, 국경출입협조죄, 항해어로구역이탈죄)이 삭제되었다. 2015년 형법은 2개 조항(비법국제통신죄, 정치협잡죄)이 첨부되었으며 2개 조항(봉인손상죄, 비법협조죄)이 삭제되고 폭발물 비법휴대·사용·양도죄가 폭발물·독성물질 비법제조·휴대·사용·양도죄로 변경되었다. 독립임무수행태만죄, 비법국제통신죄, 정치협잡죄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조항들이며 담보처분재산비법처분·이용죄는 시장발전상황을 반영한 법조항이다.

북한 형법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형량의 변화이다. 2004년 2012년, 2015년으로 가면서 형량이 크게 변했다. 한편,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형벌이 더 엄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일반 범죄에 부과하는 형벌은 남한이나 중국에 비해볼 때 매우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의 감옥이나 노동단련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형벌의 정도를 형벌기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004년, 2015년으로 가면서 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죄의 대부분 항목에서 형벌이 경감되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에서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강제노동만 부여하는 노동단련형을 새로 내오고 대부분 범죄에 노동단련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형법에서는 대외적권위훼손죄와 영공·영해침입죄를 제외한 모든 법조항에서 경한 범죄의 경우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2004년 형법과 김정은의 2012년, 2015년 형법에서 중한 죄의 형벌 변화에서는 차이가 있다. 비교가능한 조항의 형량 변화를 보면 2004년 중한 죄의 경우 유지가 13조항으로 가장 많고 감소된 조항 6개, 증가된 조항 3개이다. 그러나 2012년과 2015년 형법은 중한 죄의 경우 유지된 조항은 3조항에 그치고 감소되거나 없어진 형량이 14조항, 신설되거나 증가한 조항이 11조항이다.

중한 경우의 형량을 유지한 죄는 4개 조항(직무집행방해죄, 문서·증명서의 비법처분·위조·사용죄, 일반범죄은닉죄, 대외적권위훼손죄)이며 중한 죄를 신설한 조항은 2개(증인협박죄,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형량을 늘인 것은 10개 조항(폭발물 · 독성물질 비법제조·휴대·사용·양도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물질적 부담을 시킨죄, 국가기관권위훼손죄, 비법체포·구속·수색죄,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부당한 판결·판정죄)이다.

즉, 체제유지에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어 용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위험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늘여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조성하며 복종하게 하는, 김정은의 통치방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미약했던 김정은은 대중의 인심을 얻기 위해 인민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행적을 보였다.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솔직히 자수하면 용서해준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 김정은이 출마해서부터는 처음에는 뭐 총살하고 이렇게 하던 게, 0.01프로의 잘못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추방을 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좀 김정일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례 6)

〈표 Ⅲ-1〉 법적 대응의 변화: 2004, 2012, 2015년 형법 조항과 형량 비교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집단적 소동죄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주동분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직무집행 방해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유지**
법일군의 직무집행 방해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엄중한 경우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삭제**		
허위풍설 날조·유포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형 감소**
공인비법 사용·위조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삭제**
문서·증명서의 비법처분·위조·사용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유지**
증명서 매매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삭제**		
출판질서 위반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삭제**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폭발물 비법휴대·사용·양도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폭발물·독성물질 비법제조·휴대·사용·양도죄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대량의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증가**
위험성 물질수송 질서위반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대량의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대량의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경비근무 질서위반죄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상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독립임무 수행태만죄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신설**
고의적 비밀누설죄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과실적 비밀누설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영공·영해 침입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유지**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비법국경 출입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증가**
국경출입 협조죄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비법협조죄로 개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삭제**	
비법국제 통신죄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신설**
항해·어로 구역 이탈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삭제**		
거짓 신고·진술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증인 협박죄	•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신설**
사건 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일반범죄 은닉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유지**
일반범죄 불신고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형 감소**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도주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파괴 폭행을 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파괴 폭행을 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같음	**경죄 감소** **중죄 감소**
뇌물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대량의 뇌물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대량의 뇌물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유지** **중죄 증가**
정치협잡죄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신설**
담보처분 재산비법 처분·이용죄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형 유지**
봉인 손상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삭제	**형 감소**
부당 신소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형 감소**
대외적 권위훼손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형 유지**
직권 남용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유지** **중죄 증가**
월권 행위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삭제**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직무 태만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증가**
물질적 부담을 시킨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여러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한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 중죄 증가**
신소청원 묵살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삭제**
국가기관 권위훼손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 중죄 증가**
비법체포·구속·수색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강제수단 비법적용죄로 개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 중죄 증가**
사건과장·날조죄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공모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유지 중죄 증가**

범죄 유형	2004년 형법	2012년 형법	2015년 형법	변화특징
비법석방 및 사건 약화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경죄 감소 중죄 신설·증가**
부당한 판결·판정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같음	**경죄 감소 중죄 증가**
판결·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같음	**형 감소**
관리일군 뇌물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 뇌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받은 경우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삭제**		

자료: 저자 작성.

나. 행정 기구와 간부: 권위 약화 추세

(1) 국가의 정치적 권위 지속적 약화

북한에서 비록 산발적이고 드물지만 국가권력에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등 범죄의 정치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주의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집단소요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 속에서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통제만 강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으로 표출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집단소요죄와 직무집행방해죄의 사건은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특히 국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불공정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경지역에서 2016년 탈북한 상인의 증언에 의하면 법집행자들도 주민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 솔직히 지방 안전원들은 그렇게 잘 사는 게 없어요. 뇌물을 고여도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따지는 게 있고. 왜냐면은 이렇게 북한도 백성들이 막 항의하잖아요. 그것 좀 받아들이거든요. 막 보안원이 이렇게 했잖아요? 백성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정복을 벗어야 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안서에서 보안원들이 범죄를 약간, 범죄라기보다도 이 사람도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도 두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문이란 게 있잖아요, 누구누구 어디 간대. 어디서 어디 갔대.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괜찮고 한 명은 괜찮지 않잖아요? 한 명은 보내도 되는데 한 명은 보내지 말라고.{그럼 또 항의해요?} 네, 이구동성 말하면은 안 보내요. {옹호해주면 또 안 보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사례 8)[93]

정치협잡죄의 신설도 당과 국가의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통용되는 협잡과 사기가 정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과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평가도 뇌물에 의해 좌우되고 간부등용도 사고파는 현상이 늘고 있어 정치적 사기를 법으로 제재해야 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3) 사례 인용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중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말이다.

간부직책을 판단 말입니다. 돈 주고 직무를, 예를 들어, 내가 간부부인데 5만 달러 내야 되잖습니까. 돈 내고 간부 한다는 사람들 실지 능력은 없고 이 사람들 하면 나라를 망칠 사람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실무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돈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자리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내가 돈 있고 다 있는데 좋은 자리 들어가서 편한데 여기 말하면 공무원자리, 국장자리, 지도원자리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안단 말입니다. 야, 좋아 너 어느 자리 해주겠으니까 2만 달러 내라. 우린 돈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어느 자리 만 달러, 외국 가는 거 2만 달러. 외국대표부로 나가는데 5,000달러 규정되어있는데 이거 내라. 이거 결국은 간부부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책임비서가 하라는데 책임비서는 또 제가 하고파서 합니까? 김정은이가 하라는데 이렇게 되니깐 간부자리 판단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김정일 시대부터 조금조금 통제되더니 이제는 김정은 시대 와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됐단 말입니다. (사례 16)

(2) 간부 일탈

북한은 간부를 당의 골간역량,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규정하고 당과 국가 활동에서 간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간부들의 일탈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형법을 수정하면서 죄가 중한 경우 형량을 증가한 범죄 10조항 중 7개 조항이 직무상 범죄에 속하는 법조항들이다. 이는 북한체제 유지에서 간부들의 일탈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부들 속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보안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사회는 사법일꾼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다. 상부에서는 뇌물행위를 처벌하는 것

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눈치껏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는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뇌물을 받지 않으면 법일꾼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일을 많이 하는 검사나 보안원은 먹을알이 많고 적게 하면 그만큼 차려지는 게 적어요. 우리도 밤에라도 나가서 단속 많이 해야 자기 뇌물 들어오지. 나가기 싫어서 단속 통제 못하면 그만큼 차려지는 것도 없죠. 100바퀴 보안원. 내가 아산시 모선동을 맡았다면 모선동을 하루에 100바퀴 돌라는 거죠. 김일성 때부터 나온 게 100바퀴 돌라. 100번 돌아보면 도둑도 걸리고 밀수도 걸리고. 그래서 가만 앉아 있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계속 순찰하라.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범죄도 잡고. 군중들 속에 기본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잡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하면, 누가 가져다주나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많이 덮쳐야죠. (사례 1)

> 정치부장이 말 하는 게 '먹어라. 열 번 재고 한 번 먹어라. 그러나 들키면 옷 벗을 각오하고.' 먹지 말란 소리는 안하죠. 왜냐하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죠. 두드려 봐라. 먹어도 안전하다 할 때 먹어라. (정치부장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왜 미련하게 먹고 신소 민원이 제기 되어서 옷 벗고 나가는 건 안타깝다. 여기 안 먹는 사람 어디 있냐. 먹고 살아야지. (사례 1)

> 법 기관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그걸 더 장려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그래서 자기가 믿음직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면 돈을 받든가. 담배를 받든가 해서 쉽게 증명서를 떼어준다든가. 또 죄를 지어서 안전부나 보위부에 들어갔다 해도 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자는 거니까. 법을 지켜서 모든 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다 영특하고 영리하게 자기한테 고이면 얼마

든지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만들어졌다고 해도 법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례 6)

실제로 북한에서 법일꾼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에 뇌물을 바치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자리에 출세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일꾼 뿐 아니라 당간부, 행정간부 할 것 없이 모든 간부들 속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간부들이 이러하니 일반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15년 형법에 독립임무수행태만죄가 신설된 것은 주민들 속에서도 국가일태만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대응 실태: 법적 대응력 약화 및 당적 통제 강화

(1) 무질서의 지속과 확산

현재 북한에서는 법적통제가 당치로부터 법치로 이행하고 있지만 과도적 상황이어서 당의 통제도 법적 통제도 다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법의식이 매우 약하다.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고 법위반에 대한 자책감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기 협잡, 도적 등 불법행위가 산적하고 있으며 주민들 속에서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북한 형법의 형량 감소 조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법대로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과 중국에서라면 노동교화형을 구형해야 할 범죄를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129조)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중국 형법(164조)에 의하면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액수가 매우 크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러나 북한 형법(230조)에 의하면 대량의 뇌물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990년 북한 형법(130조)에서는 뇌물죄의 형량이 최소 2년 이하 노동교화형이었다.

도주죄의 경우도 대한민국 형법(145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북한 형법(229조)은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다. 시설을 파괴·폭행하고 도주했을 때 대한민국 형법(146조)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북한 형법(229조)은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다. 1990년 북한 형법(123조)에서는 단순 도주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파괴·폭행 후 도주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다.

또한,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2015년 형법에서 폭발물 비법휴대·사용·양도죄를 폭발물·독성물질 비법제조·휴대·사용·양도죄로 변경한 것을 보아도 북한에서 폭발물 관련 범죄도 이전에 비법휴대·사용·양도죄에서 지금은 비법제조 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개인들이 탄광 광산을 개발하면서 부족한 폭발물을 직접 제조하고 있으므로 법을 변경한 것이다.

2015년 비법국경출입죄 조항과 함께 비법국제통신죄 조항도 신설한 것도 외국과의 연계가 다양해지면서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2015년 담보처분재산비법처분·이용죄의 신설도 북한에서 개인소유권이 형성·강화되면서 발생한 범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 국가재산을 횡령했을 때 몰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담보 처분할 개인재산이 없다보니 이러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2) 당적 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질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권력이 법보다 더 강한 사회이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법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도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당적 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법적 통치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법은 '주민들이 지켜야 할 국가사회질서'로 당적 통치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법 제정이 당에 의해 주도되고 법 간부 인사를 당이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수령의 교시와 당, 국가 결정보다 하위에 있다. 남한이나 중국에서 징역형에 속하는 범죄를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면서도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적 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외형상으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 통제의 방법이 사상교양과 조직적 통제에서 강압과 처벌로 바뀌고 있다.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시각과 유형 분류

가. 시각과 분석틀

탈사회주의 이행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일탈화 현상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폐쇄체제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일탈화를 통제하기 위해 개정형법에 새로운 범죄규정들을 두기 시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성매매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전해왔지만, 식량난 등 경제위기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매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4년 개정형법에 '매음죄(제261조)'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게다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전인민이 무장한 사상강국이라고 선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굿 또는 점을 보는 행위 등을 '미신행위죄(제267조)'로 처벌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사회에서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화가 무너진 현상은 곧 북한 형법의 '비법혼인·가정파탄죄(제270조)'로 나타났다. 이들 대표적 사회범죄는 곧 자본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체제의 근원적 원리가 범죄발생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매음죄는 물론이고, 돈이나 물건을 대가로 행해지는 미신행위죄, 미혼여성의 장사활동금지 및 직장복귀방침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비법혼인죄 등이 경제적 이득의 유인으로 벌어진 현상이다.[94]

이러한 범죄규정으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사회공동생활에서 과거 발견되면 안 되는 일탈현상들이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94)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나타나고 있는 일탈행위 분석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일탈을 파슨스(Parsons)가 말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동조화를 벗어난 일탈화라고 보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탈사회주의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일탈이 시사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즉 남북한 사회통합 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사회적 일탈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실태 분석은 〈그림 Ⅳ-1〉의 분석틀에 따라 진행한다.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는 공공의 질서·안전·평온, 사회의 도덕, 기타 사회질서 등의 사회적 법익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각각의 세부적인 사회법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의 질서·안전·평온은 공공 사회질서, 공공 법질서, 공공 안전과 평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의 도덕은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혼인관계, 부양·보호책임, 근로정신(경제도덕), 공서양속(종교감정)으로[95] 분류할 수 있다. 기타 사회질서는 국가이익, 명령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95) 공서양속이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뜻하고,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일반적 이익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18.8.30).

〈그림 Ⅳ-1〉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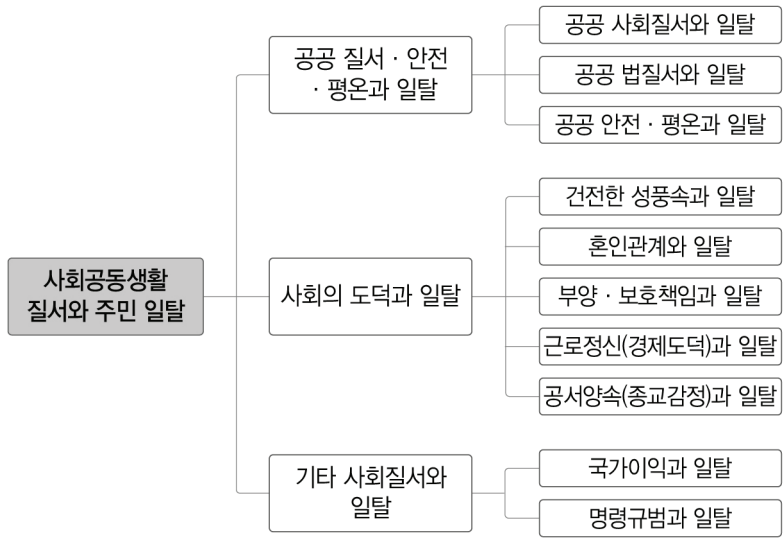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의 사회적 일탈 및 범죄 실태 파악은 북한 사회내부의 변화 내지 병폐 진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사회공동생활의 변화를 독해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박행위, 성매매행위, 이권다툼 등으로 인한 패싸움행위, 불법혼인, 부화방탕행위,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일탈행위는 과거 주민통제가 엄격했던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볼 수 없던 일탈행위이다. 이는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일탈행위 및 범죄이다. 법으로 규정짓지 않을 뿐 이행기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범죄는 그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리라 예상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탈'하려는 이행기에 놓여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 사회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탈 및 범죄 실태 파악을 위해 2015년 형법의 범죄규정과 범죄수사 및 단속기관인 북

한 인민보안성이 2009년 발간한『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상의 사회범죄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유형별 사회적 일탈과 사회범죄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한 사례를 각각의 일탈유형별 사례로 제시한다.

나. 시기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일탈 유형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범죄는 20가지 유형으로, 이 범죄유형에 따라 사회적 일탈 유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 김정은 집권기에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일탈행위로는 불량행위, 패싸움, 미성인의 불법행위 유인, 성매매 관련 일탈행위, 집단음탕행위, 타인의 직권참용, 관료사칭, 자구행위(실력행사), 칭호참용, 도박, 미신행위, 이중혼 등 불법혼인, 부당이혼, 타인의 가정 파탄행위, 노인 및 아동 부양회피, 양로사업질서 위반행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대괄시행위, 습득물횡령, 장물거래, 묘훼손, 대외무역일꾼의 사례금착복 등이 있다.[96]

이 보고서 Ⅱ장 4절 서론부분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시기 및 해당 시기별 형법전을 사회주의 체제변화 이전시기(1987년 형법), 시장도입기(2004년 형법), 시장활성화 모색기(또는 정권과도기, 2012년 형법), 김정은 집권기(2015년 형법)로 구분하였다.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일탈 유형 파악을 위해 시기별 개정된 각각의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범죄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96) 북한은 주민들의 행위통제수단으로 형법 외에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여(2004년)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 등을 행정처벌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위법행위 가운데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어긴 행위(옷차림과 몸차림이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사회주의생활양식에서 벗어난 옷차림 등을 북한식 사회주의규범으로부터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다. 현재 북한여성들은 남한 드라마 등을 통해 남한에서 유행하는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표 Ⅳ-1〉 체제 특성 변화에 따른 시기별 사회범죄 유형

시기	사회범죄 유형	
사회주의체제 변화 이전시기 (1987년 형법: 총 10개 규정)	◦ 불량자행위죄(제131조), 미성인범죄추긴죄(제132조), 직권참용죄(제133조), 도박죄(제134조), 습득물횡령죄(제135조),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제136조), 학대괄시죄(제137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138조), 묘파손죄(제139조), 약취물건거래죄(제140조)[97]	
시장도입기 (2004년 형법: 총 20개 규정)	기존	◦ 불량자행위죄(제258조), 미성인범죄추긴죄(제260조), 직권참용죄(제263조), 도박죄(제266조),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제271조), 학대괄시죄(제272조), 습득물횡령죄(제273조), 약취물건거래죄(제275조), 묘파손죄(제276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77조)
	신설	◦ 패싸움죄(제259조), 매음죄(제261조), 음탕한 행위죄(제262조),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용죄(제265조), 미신행위죄(제267조), 미신행위조장죄(제268조), 실력행사죄(제269조), 비법혼인죄(제270조),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제274조) → 밑줄표시는 2012년에 삭제됨
시장활성화 모색기 (2012년 형법: 총 20개 규정)	신설	◦ 양로사업질서위반죄(제259조)
	삭제	◦ 미신행위조장죄(제268조)
	수정	◦ 불량자적 행위죄(제246조), 명예·칭호참용죄(제254조), 비법혼인·가정파탄죄(제257조): 조문명에 추가,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제262조): 이득금 삭제, 묘파괴죄(제264조): 묘파손죄 → 묘파괴죄로 수정 → 밑줄표시는 추가된 사항임
김정은 집권기 (2015년 형법: 총 20개 규정)	수정	◦ 불량자적 행위죄(제246조): '잔인한 방법으로' →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로 수정
	보충	◦ 미신행위죄(제256조):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추가(2004년 미신행위조장죄의 일부를 미신행위죄의 행위부분에 다시 부활시킴)/ '정상이 무거운 경우' 기존 법정형 3년 이하 → 3년 이상 7년 이하 노동교화형으로 강화

자료: 황의정,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17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참고 보완.

97) 2004년 형법 개정 이전까지 북한 형법은 각 조문명 내지 범죄명을 달지 않아, 2004년 형법의 조문명을 참조하여 범죄명(조문명)을 붙였음.

다. 사회적 일탈 유형분류 및 법적 대응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현상은 집단주의 가치, 사회적 소유 개념 등 사회주의 도덕 · 생활규범에서 벗어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사회의 기본적 작동원리인 규범적 통제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위반행위, 즉 사회범죄의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가치가 곧 법규범의 존재 의의가 되기 때문이며, 그러한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는 일탈행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대표적인 규범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형법이다. 형법은 일반적 기능으로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적 기능은 법익의 보호를, 보장적 기능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 형벌로부터의 보장을, 사회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공동생활의 전제조건인 사회질서 혹은 법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의미한다.[98] 여기서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 즉 보호법익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가치이다. 따라서 사회범죄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은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서 사회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법일군 참고서’)에 따르면, 사회주의공동생활이란 사회주의에

98) 이재상,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1999), pp. 5~8.

맞는 도덕규범 및 생활규범에 기초한 일상생활을 말한다.[99] 그렇다면 북한에서 사회범죄 및 사회적 일탈은 북한식 사회주의적 도덕규범 및 생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한 사회주의적 규범(집단주의 정신, 노동의무의 신성화, 가정 공고화, 공동재산 애호 등)을 위반한 행위가 사회범죄행위이며 사회적 일탈행위이다.[100]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범죄 유형은 몇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우리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란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법익은 공공의 법질서·안전·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의 도덕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회의 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인의 성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 등의 도덕적 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즉 성풍속(성도덕)과 관련한 행위, 도박과 관련한 행위, 신앙(종교감정)과 관련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101]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행위는 사회적 법익 중 공공의 법질서·안전·평온과 사회의 도덕 등 두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정된 2015년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범죄를 사회적 일탈행위로

99)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02.

100) 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와 이를 어긴 일탈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라는 게 이제처럼 기본은 뭐냐면 북한에서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는 겁니다.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고 조직생활에 제대로 참가한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생활이거든요. 북한에서 이제처럼 조직생활 안하고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이게 벌써 이거는 사회주의 생활기준이 무너진 거죠. 회사 출근 안한 것도 비사회주의이고, 조직생활 안한 것도 비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 조직생활, 공동생활 집단주의가 아닙니까. 기본 기초는 집단주의니깐 이게 무너지는 게 비사회주의고."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탈행위들을 비사회주의라고 하고 있다. (사례 11)

101)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p. 416.

재구성하여 사회적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김정은 집권기 사회적 일탈 유형

사회적 법익	북한의 사회적 일탈행위
공공의 질서·안전·평온	불량자적 행위, 패싸움, 미성인범죄유인행위, 실력행사행위, 직권참용행위, 거짓행세행위, 명예 · 칭호참용행위, 미신행위
사회의 도덕	성매매행위, 음탕행위, 불법혼인 및 가정파탄, 노인 · 아동에 대한 부양회피, 양로사업질서 위반행위, 학대괄시행위, 도박행위, 묘파괴행위
기타 법익	습득물횡령행위,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행위, 장물거래행위, 엄중한 결과발생방임행위

자료: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참고.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된 북한 형법은 20가지 사회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탈사회주의 이행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일탈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2004년 형법 개정 시 10가지 범죄유형을 신설하였다.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칭호참용죄, 미신행위죄, 미신행위조장죄, 실력행사죄, 비법혼인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등이 그것들이다.

북한 사회범죄 유형을 세부적인 사회법익에 따라 우리 형법상 범죄유형과 대응해서 비교하면 앞선 Ⅱ장의 4절 '〈표 Ⅱ-2〉 남북한 현행 헌법상 사회점죄 대응 비교'와 같다. 북한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회범죄로는 명예·칭호참용행위, 미신행위,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행위, 사례금 미헌납행위 등이 있다.

2. 공공질서 일탈

가. 공공의 질서·안전· 평온의 일탈

(1) 사회질서 일탈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 불량자행위, 패싸움, 미성인범죄유인행위가 있다. 북한 형법은 불량자행위를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제246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량자적 행위란 "다른 사람에게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손하고 비도덕적이며 유치한 행위나 추잡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감행"한 경우를 말한다.[102]

그리고 파렴치한 행위란 체면이나 창피도 모르는 극히 뻔뻔스러운 행동을 말한다. 파렴치한 행위의 구체적 행위에는 "쌍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희롱하였거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놓거나 자신이 벌거벗는 등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거나 무참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있다.[103]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 중 '과다노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불량자행위의 사례를 보면, 피복공장의 창고장으로 있는 관리일꾼이 자재를 받으러 오는 여종업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창고 안으로 데려가 끌어안고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리일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세도를 부리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과 외부적 환경을 이용한 불량자행위라고 한다.[104]

---

102)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366.
103)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03.
104) 위의 책, p. 391.

또 다른 사례로는 전차 안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면도칼로 째놓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변태적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의 행위의 경우가 있다.[105] 이 같은 사례의 구체적 정황으로 '법일군 참고서'는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42) 소매치기범죄자 송일은 무궤도전차안에서 안전면도칼을 리용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손님들의 손가방을 째고 50여만원의 돈을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묻어나온 증명서들을 공동변소에 버리거나 불태워버렸으며 녀성들이 고급외투와 사치한 옷을 입고 다니는것을 보면 따라가서 안전면도칼로 째놓는 행위를 하였다.[106]

사회불안·공포 조성하는 불량행위 증가

북한에서 불량자행위는 체제변화 이전에도 존재하던 일탈행위로 1987년 형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었다. 북한은 불량자행위를 착취사회의 잔재적 악습의 하나로 보아 사회주의 공동생활준칙 및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새로운 세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퇴폐적 부르주아생활양식을 전파하는 유해로운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처벌하여 왔다.[107]

2004년 형법상 "불량자행위죄"는 2012년 형법에서 "불량자적 행위죄"로 죄명이 바뀌고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의 경우가 추가되었다. 북한 당국은 집단형태의 불량자행위를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 주동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 가중처벌보다 더 엄히 규율하고 있다. 2015년 형법은 불량자적

105) 위의 책, p. 474.
106) 위의 책, p. 403.
107) 김근식, 『형법학』, p. 174.

행위죄의 기본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기존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서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로 개정하였다. 집단적인 불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변화는 북한 사회에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공의 사회질서의 문란은 물론이고 사회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집단적 불량자행위로 패싸움 행위가 자주 발생하였다. 북한의 형법은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나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제247조)를 패싸움죄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 다중이 운집하여 싸운 경우”와 “다중이 운집하여 싸움을 한 사람 수가 많고, 규모가 크고,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경우”를 패싸움행위로 규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는 패싸움죄의 구체적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44) 어느 일요일 들놀이로 유원지에 간 신발공장의 작업반장 최일호는 작업반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옆에서 식사하다가 일어난 다른 공장의 로동자가 지나가면서 술에 취해 넘어져 음식물의 일부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하여 그를 때리려다가 그 공장 로동자들이 가만있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 작업반원들을 부추겨 패싸움이 벌어지게 하였다. 결과 서로 주먹과 발로 차고, 때리는 등으로 수라장이 벌어졌다.[108]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 규모가 큰 사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흥상인계층인 돈주들 간 이권다툼이 벌어지곤 하였다. 건설업, 광산채굴권, 어업권 등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돈주들 간의 이권다툼

108)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04.

으로 인해 대규모 패싸움부터 청부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109] 이런 규모의 패싸움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자리 때문에 가족 단위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 장마당에는 자리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옆에는 잘 팔리는데 내거 안 팔리면 심술 나서 뭐 하나 잘못 말해도 와당탕하고 그래요. 걸치고. 이 사람이 괜히 일반적인 말해도 너 왜 그래. 그렇게 싸움 하고. 그러면 세대주들이나 동생들이 와서 싸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조직적으로 이권이나 그런 건 아녜요. (사례 2)

이와 다른 증언도 있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보다 김일성 시대에 오히려 학생위주의 패싸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패싸움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당국이 법적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실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 사회에 왜곡된 집단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지역 패싸움이나 학교 패싸움이 잦았다. 하지만 시장 도입 이후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집단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요소 및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청소년 유형의 패싸움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불량자적 행위가 실은 전보다 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법이 강화됐다기보다는 안정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량자적 행위라는 게 아무리 제가 학교 90년대 졸업했는데 그때 김일성 시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패싸움. 정말 쌈질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시기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109) "'패싸움부터 청부살인까지' 북한 돈주들, 사업권 놓고 '무력 충돌'," 『조선닷컴』, 2015.7.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5/2015072501098.html〉 (검색일 2018.7.30).

거의 없어졌어요. 거리를 꽉 메우고 나가니깐 한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움하러 나갈 때 주로 중학생들이거든요. 청소년시기 그때 당시 심리적 충동, 자리를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좌우간 이게 없어졌습니다. 김정은 시기 와서 통제를 정말 강화했습니다. (사례 12)

한편, 불량자행위의 연장선으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불량자행위 및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북한 형법은 이를 '미성인범죄추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북한 형법은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이다(제248조). 이 구성요건에서 파악할 수 있듯, 이 범죄가 미성년자에게 범죄행위에 가담 또는 불량자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행위로도 보아야 한다. 어린이의 교양육성을 중요시 여기는 북한에서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교사하는 행위는 죄질에서 특히 중하게 보고 있음을 그 형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형법상 미성인범죄추긴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대한 형량이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인데, 2012년, 2015년 개정형법에서는 다른 범죄유형의 기본 형량이 노동단련형으로 감형된 것과 달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성인범죄유인행위의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황 345) 로동단련교양을 받고 나온 허칠성은 한마을에 사는 계부모자녀인 윤명섭(남자, 15살)이 집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오자 그를 데리고다니며 개인집의 닭이나 토끼를 훔쳐오게 하거나 소창문으로 기여들어가 물건들을 훔쳐내오게 하였다. 그후 윤명섭은 자기 집에서 나와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 물건들을 훔치는 도적이 되고말았다.

(정황 346) 남편이 무역선을 타고 외국에 나간 사이 집에 혼자남은 정옥순이 이웃에 사는 16살난 한영진학생을 집에 데려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랫배를 눌러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흥분시켜 여러차례 성교하였다. 그후 한영진은 그에 재미를 붙이고 길가는 녀학생을 덮치다가 단속되였다.[110]

미성년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죄질에 물들도록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중하게 보고 노동단련형보다 형이 중한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독특한 사회주의식 범죄규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형법 전통이 있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범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111]

(2) 법질서 일탈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회적 일탈행위에는 직권참용행위, 거짓행세, 실력행사, 명예 · 칭호참용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법질서 내지 국가질서란 국가가 정해놓은 공무원의 직권 및 직위, 국가가 부여한 명예 및 칭호 등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일탈행위는 직권이나 직위(사회적 위신)를 도용한 행위들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들이다. 북한은 직권참용이나 거짓

110)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405~407.

111) 러시아 형법 제150조(미성년자 범행 유인) 제1항 "18세 이상의 자가 약속, 기만, 협박 기타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범행에 끌어들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한다."; 중국 형법 제262조의2 제1항 "미성년자들을 조직해 절도·사기·강탈·협박·갈취 등의 치안관리 위반활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베트남 형법 제48조(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1. 다음의 것은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으로 간주된다. 미성년을 선동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서울: 법무부, 2015), pp. 1039~1041.

행세, 명예·칭호참용행위가 다른 불법행위를 쉽게 감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들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112]

먼저 직권참용행위는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였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제251조). 여기서 '참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사람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113] 우리 형법은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를, 러시아 형법은 공무원권한사칭죄(제288조)를, 중국 형법은 군인사칭죄(제372조)를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51) 출소자 한상철은 청년동맹유급간부로 가장하고 사진기를 메고 다니며 기동예술선전대 배우들을 선발하러 왔다고 하면서 학교를 지나다니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곱게 생긴 처녀들을 골라 노래도 불러보게하고 글도 읽어보게 하며 사진까지 찍은 다음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음주접대와 뢰물까지 받아먹고는 육체미가 있어야 무대에 나설수 있다면서 처녀들을 반라체상태로 벗겨놓고 줄자를 가지고 가슴과 허리, 엉치부위를 잰다며 여기저기 만져 흥분시켜놓고는 성교까지 하였다.[114]

위의 직권참용행위 사례는 간부를 사칭하여 음주접대 및 뇌물을 받은 경우 외에도 우리의 법으로 볼 때,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북한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규제하

112) 김근식, 『형법학』, p. 177.

113) '참용(僭用)',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5%83%AD%E7%94%A8&cp_code=0&sound_id=0〉 (검색일 2018.8.30.).

114)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410~411.

는 별도의 규정 없이 이를 불량행위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외에 김정은 시대를 살다온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한 다음의 사례들도 있다. 법기관 일꾼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자신이 가짜인 것이 밝혀져도 도리어 비법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뇌물을 주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또는 법기관 단속일꾼이 모자라 임시 단속일꾼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직권을 사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단속일꾼 등으로 사칭행위 증가

보안원이나 보위부 사람들은 다 정복을 입고 다니는가? 사적인 일도 정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일 볼 때는 출근할 때는 정복을 입지만은. 사적인 일은 안 입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안원이고 누가 일반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보안원이다 하면 믿을 거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걸리는 때가 많고. 내가 단속원, 가짜 단속원 있고 단속 당했어요? 그니까 내 가짜잖아요. 가짠데 왜 그런, 법적 처벌이잖아요? 가짠데 왜 날 잡냐고 하면은 그래 내가 가짜니까 법에 가서 내가 신고해줄게. 그럼 당연히 고이게 생겼잖아요(뇌물을 주는 일). 법에다가 고일 걸 이 사람한테 고이면 되잖아요. (사례 8)

그런 현상을 이야기는 들어는 봤습니다. 거짓단속원들 가장 우리 혜산 쪽에서 볼 때는 법관들 대놓고 법에서 인원이 통제를 하려고 하니깐 통제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에서 8.3이라고 하는데 8.3노력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 법관은 아니거든요. 임시로 법의 일을 방조해주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건데 이런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는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이 처벌이 적용되더라고요. (사례 12)

직권참용죄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거짓행세죄'는 검열일꾼이나 단속일꾼으로 가장하여 사회적 위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제252조).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에서 이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 사례로는 러시아 형법의 '공무원 권한사칭죄(제288조)'와 중국 형법의 '국가기관 공무원이나 인민경찰 사칭죄(제279조)'가 있다. 북한에서 거짓행세죄는 검열일꾼이나 단속일꾼 또는 감독일꾼으로 가장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인 위험행위를 실행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53) 송배전소 로동자들인 배장건과 김종수는 서로 공모하여 자기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구역의 인민반들에 나가 전력감독대에서 ≪전기검열≫을 나왔다고 하면서 비법적으로 전열기와 전기밥가마, 물끓이개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도시에서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5000여원씩의 ≪벌금≫을 받아내거나 사용하던 전기제품들을 ≪회수≫하여가지고 달아났다.[115]

> 우리가 단속일군이 아닌데 … 고난의 행군시기 그런 게 많았거든요. 당원도 아닌데 세포비서라는 사람도 많았고. 주로 북한에서 제일 많은 게 단속자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단속 걸리면 그 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배 한 곽이라도 받아먹으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담배를 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없을 수가 없지요. 이게 다 사기에 속하거든요. (사례 11)

115) 위의 책, p. 412.

한편 북한에서 실력행사행위에 대해 법질서의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권리 실현에 있어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116] 북한 형법상 실력행사죄는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자"에 성립되는 범죄이다(제253조). '법일군 참고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62) 집을 사준다는 부양가족 허춘녀에게 200만원을 속여먹기 당한 일용품공장 로동자 황진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가족, 친척들을 데리고 그의 집에 가 강제로 물건들을 빼앗아왔다.[117]

> (정황363) 어느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이 자기네 공장의 발동발전기를 가져다 쓰면서 마사놓고 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력행사로 기계설비를 빼앗아왔다.[118]

북한이탈주민들이 화폐개혁 시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자력구제를 해보려다가 시도도 못한 사례나 김정은 시대보다는 김정일 시대에 실력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 그때 북한에서 화폐개혁 했어요. … 남이 하지 말라는 비법이랑 해서 모은 돈을 누구한테 꿔줬어요. 북한 돈으로 200만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 그 돈이면 쌀 150지대(포대) 사는 돈, 그니깐 북한은 25키로짜리 지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혁하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100대1로 물어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땐 150지대됐는

116)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 1064.
117)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421~422.
118) 위의 책, p. 422.

데 물건 값으로 하면 지금 받으면 그게 쌀 1지대 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한 손해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렇게는 손해 못 보겠다. 차라리 물건대 물건으로 하든지, 그때 돈으로 따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면 150지대는 절반감소하면 75지대는 내야 되잖나. 그런데 그 북한법이 그걸 막아줘요. 그걸 우리가 당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가정집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사례 11)[119]

자기 힘으로 가서 빼앗는 데는 구타를 하고 사람 막 내쫓고 집을 뺏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는 그런 현상이 심했거든요. 김정일 때도 심했습니다. 김정은 시기에 역시 법적으로 강하게 조이고 있거든요. … 집에 가서 함부로 특히 가정집물건, 가장 중요한 건 텔레비라든가 선전물, 이런 걸 손대지 말라고. 이런 걸 들고 오는 경우에는 내가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집을 빼앗으면 내가 오히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집은 생존과 관련된 거고, 텔레비는 당 정책하고 관련된 거고. (사례 12)[120]

명예·칭호 사칭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북한 사회에서 직권참용이나 거짓행세 외에도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는 행위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2004년에 북한 형법에 명예·칭호참용죄가 새롭게 규정되었는데,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를 규제하고 있다(제254조). 칭호나 명예는 국가적 수준에서 부여하는 것으

119)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평등주의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세하게 잘사는데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싶으면 그것을 법으로 보호해준다고 한다. (사례 10)

120) 북한은 텔레비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당의 선전 및 정책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텔레비전의 의미는 당 정책으로 통한다.

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대우하는 영예군인, 선군시대 공로자, 영웅 같은 명예나 칭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칭호나 명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증서를 이용하거나 훈장, 메달을 달고 다니거나 말로 표현하여 상점, 식당, 열차, 버스, 살림집 등을 이용함에 있어 우대를 요구하거나 거짓 결혼하는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다.[121] '법일군 참고서'는 명예나 칭호를 도용하여 여러 여성들과 혼인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이는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와 병합한 사례이다.

> (정황 355) 건설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절고있는 최명철은 삼촌의 영예군인 메달을 달고 영예군인행세를 하며 6명의 녀성들과 약혼 또는 결혼을 하여 남편 또는 사위대접을 받으며 2명의 아이를 출생시켰다.[122]

> 영예군인 이용하는 건 내가 불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어느 순간을 하나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대목을 넘기기 위해서. 군대 아닌 사람이 군인인 것처럼 하고 군인인 경우 보안서가 단속을 못하잖아요? 군인 모자를 쓰고서 이자처럼 불법 물건을 나른다던가. 또는 어느 구간을 통과한다던가. 북한은 도덕을 넘어갈 순 없잖아요. 영예군인 신분증, 메달 걸어놓고 다니는 거죠. (사례 9)

경제위기 이후 느슨해진 국가통제의 틈을 이용해 관료부패가 만연해지는 시기에 일반 주민들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직권이나 직위(사회적 지위 등)를 사칭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시대 와서 민심잡기 목적으로 훈장이나 영웅칭호 수여를 남발

121)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14.
122) 위의 책, p. 413.

하였다. 과거에는 명예·칭호를 받으면 장래를 보장받는 등 포상의 혜택이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칭호가 행정처리나 처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123]

남한의 법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를 "관명사칭 등"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3) 공공의 안전·평온의 일탈: 사상통제체계 이완과 사상 해이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체제 및 국가적 위기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들의 통치자 및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 역시 증폭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조직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나 인민반 등 여러 겹의 조직활동을 통해 사상적 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상교양, 사회주의생활양식 주입, 사회질서유지, 노력동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식량난으로 인해 사상통제체계의 이완현상이 발생하였다.[124]

이는 곧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은 주민들의 사상적 일탈행위이다. 북한은 2004년 개정 형법에 사회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미신행위죄 및 미신행

123) "김정은, 민심잡기 목적 훈장 및 영웅칭호 남발," 『데일리NK』, 2012.2.28, 〈https://www.dailynk.com/김정은-민심잡기-목적-훈장-및-영웅/〉 (검색일: 2018.9.27.).

124) 황의정,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56.

위조장죄 등 신 범죄유형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미신행위조장죄는 2012년 개정 형법에서 사라졌다가 2015년 개정 형법상 미신행위죄 구성요건에 미신조장행위가 추가되었다.

현행 북한 형법은 미신행위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제1항).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으로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북한에서 미신행위란 손금보기, 관상보기, 점치기, 궁합보기, 액풀이(굿행위) 등을 말한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59) 역기다림칸에서 렬차를 기다리던 오문옥은 문혜영이라는 녀성을 알게 되였는데 그가 자기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좋은 팔자를 가진 녀자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손금을 보자고 하며 아이는 오누이이고 재산은 얼마나 붙겠다고 추어주기에 자기에게 그 방법을 배워달라며 현금 5000원을 주고 명태국밥까지 사먹이였다. 그후 문혜영으로부터 판상보기와 손금보기, 궁합보기방법을 배운 오문옥은 장난삼아 몇 번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소문이 나서 여러사람들이 돈과 물건을 들고 찾아오는 과정에 처녀총각의 궁합을 보아준다는것이 범과 쥐라고 하며 살면 안된다고 하여 파혼까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25]

점·굿 등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미신행위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회 전체에 미신행위가 퍼져있다고 한다. 군대의 장군들, 중앙당 과장이나 지도원 등의 간부

125)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417~418.

들 아내들이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점을 치는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먼저 다가와서 인상을 보면서 세대주가 내일 모레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을 건다고 한다. 그 일례로 다음의 사례를 증언하였다.

> 군에서는 포병참모장 같은 것도 점쟁이가 아내한테 당신 남편 한 주일 내로 어디 먼 데 출장 가겠는데 큰 덩어리가 덮치려고 한다. 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미신딱지가 포사령부가 기동훈련을 한다는 정보를 알았거든요. 정보를 먼저 알고 그걸 말한 거거든요. 며칠 있다가 간다.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훈련 안 나간 거예요. 문제는 이 미신딱지가 다른 데 가서 잡혀서 법에 잡혀서 이걸 불렀거든요. 이 참모장이 그때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당 철직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사례 2)

북한에서 굿하는 행위를 '방토'라고 말한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부적 소지, 점·손금·관상 등을 보는 미신행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경제난에 따른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굿 행위를 통해 치유를 비는 미신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이 통치하면서 눈만 뜨면 온갖 구실로 잡아가고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니까, 굿을 해서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가 많다"면서 "쌀값이 올라도 미신(점쟁이)을 보는 사람이 많다. 통제를 심하게 하지만 (미신 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126]

점본 일로 발각된 주민의 경우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해당 여맹에서 미신행위로 인해 혁명적 사상단련과 엄격한 정신 교육을 받는

126) "김정은 시대 사회불안 심화…미신행위 '굿' 성행," 『데일리NK』, 2013.5.7, 〈https://www.dailynk.com/정은 시대 사회불안 심화-미신행위-굿-성행〉 (검색일: 2018.9.27.).

다. 또한 미신행위를 한 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자를 따라 붙인다. 이처럼 북한은 당조직이나 인민반을 통해 미신행위를 통제한다. 한편 북한 당국이 이처럼 엄격한 통제를 하는 이유는 미신행위로 인해 군사훈련 동원 회피는 물론이고 당사상에 대한 충실도 약화 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신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요. 당적으로도 포치하고 인민반에서도 포치하기도 해요. … 법관들도 그런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가는 사람 있대요. 당에서 문제시 하죠. 암만 일이 안 돼도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일이 다 된다고 당에서 포치하는데 자꾸 왕청같은(뚱딴지같은) 생각하면 당에서야 그거 단속하게 생겼지요. 그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 진짜 미신적으로 이런 예하면 … 동원이 제기돼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 다 끌고 가야되는데 그 미신재(미신봐주는 사람)가 거기 가면 아마 죽을 수 있다 가지 말라 하게 되면 못 가게 되잖아요. (사례 11)

북한 주민들이 미신을 핑계로 군사훈련 동원을 회피하는 일탈행위 외에도 병 치료를 위한 미신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1990년 중후반 대규모 아사자 및 식량난민이 속출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과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로 북한 주민들은 생계문제에서 오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미신(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던 것이다.

이 시기 의료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굿 등의 미신행위를 통해 결핵이나 간암 등의 병을 고치고자 하였다.[127] 주민들의 미신행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당국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불안이 증폭되자 북한 당국은 이를 통제하고자 미신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

127)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 1075.

3. 사회도덕 일탈 I : 성(性)과 가족

가. 성풍속의 일탈

북한 사회에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질서에 벗어나는 일탈행위로는 매음(성매매)행위와 음탕한 행위가 있다. 매음행위란 성매매의 다른 말로, 북한은 성매매라는 말보다 매음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성을 판 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2004년 북한 형법에 '매음죄'와 '음탕한 행위죄'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 매음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매음행위를 한자"로,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은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이다(제249조).

매음죄는 북한 사회범죄 중 눈여겨 볼 범죄 중 하나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은 '성매매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매음죄의 신설은 그러한 선전과 달리 북한 사회에서 성매매범죄가 형벌을 가해야 할 만큼 불가피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방증해준다.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보면, 러시아 형법은 '성매매의 관여(제240조)', '성매매업의 조직(제241조)'을, 중국 형법은 '매음조직 및 강제적 매음행위 강요(제358조)', '매음행위 중개(제359조)'를, 베트남 형법은 '매춘은닉죄(제254조)', '매춘알선죄(제255조)',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죄(제256조)'를 규정하고 있다.[128] '법일군 참고서'는 북한의 매음행위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48) 무직자인 남편 서명호로부터 매음하도록 사촉을 받은 문향실은 역전공원에 나가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담배장사 하는 한옥실이 소개해준 출장자 김택호를 데리고 ≪대기려관≫으

128) 위의 책, pp. 1046~1050.

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홍만식의 집에 가서 성교하고 매음대상자인 남자에게 받은 현금 1만원중에서 ≪대기려관≫주인 홍만식에게 2000원, 소개자인 한옥실에게 1000원을 준 다음 나머지는 가정생활에 소비하였다. 문향실은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한옥실, 홍만식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매음행위를 하였다.[129]

위 사례에 대한 '법일군 참고서'의 형법적용에 대한 해답을 보면, 우리의 성매매처벌법과는 다르게 북한 형법은 성매수자를 제외하고 성판매자만 매음죄의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수자의 경우는 형벌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형법상 매음죄규정에 따라 '여러 번'의 매음행위를 '다섯 번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130]

2004년 매음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자"로,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은 "상습적으로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제261조)였다. 2015년에 와서 '여러 번' 및 '상습' 조건이 삭제되어 매음죄 구성요건이 더 강화되었다. 위 사례에서 성매수자인 김택호의 경우 형법상 제재가 아닌 행정처벌법상 제재를 받는 이유를 2013년 탈북한 인민보안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서 알 수 있다.

이 북한이탈주민은 성을 파는 여성이 매음행위를 한 번으로 끝났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나 다섯 번 이상 매음행위를 할 경우 매음죄로 처벌받고, 성을 사는 남성이 행정처벌법상 불량자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한 여성에게 한 번의 매음행위로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131] 북한에서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이 행위의 반복성에

129)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07.
130) 위의 책, p. 408.
131) 사례 1

있고,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죄 처벌에 성별 차등이 있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남한의 경우와 다른 점은 일회성 성매매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다르게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민보안원이 매음행위를 적발해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뇌물을 받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 북한에서 매음죄 갖고 여성이다 하면 성을 돈 받고 판 거 아녜요? 이걸 법적으로 감옥 가고 이런 건 듣지 못했어요. 여기서 걸리면 이게 하나의 상업형을 띄고 있습니다. 지방에 운전기사들이 갔다 오면 재미나게 얘기해요. 여기서처럼 매음행위 했다고 하는데 운전수끼리 신의주가면 너무 뽑지 말고 오라 흔히 하는데. 처벌 받는다는 건 잡히면 안전원들의 돈벌이 수단이죠. 그런 거 하면 잡을 때는 그게 양쪽에서 뜯어먹는 거죠. 보안원도 그걸 내가 올려서 잡아서 넣었다 하게 되면 내 입에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사례 2)

경제적 성매매 증가와 성의식 변화

경제위기 이후 가족부양과 생계를 떠맡은 북한 여성들 가운데 장사 밑천이 없는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밑천으로 일탈노동의 형태인 성매매를 시작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숙박을 하는 포주나 개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까지도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심지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성적 녹화물까지 동원되는 상황에 이르러 집단 성적 행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는 북한 형법에 '음탕한 행위죄'로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음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먹고 살기가, 일단 장마당에서 장사하기도 힘든데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밑천은 안 생겨요. 밑천은 안 생기는데 한번하면 가격대가, 좀 예쁘고 그런 사람들은 중국 돈 50원, 50원이면 많지 않아요. 50원 주는데 그게 북한 내에서는 엄청 큰돈이에요. 50은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장마당에서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자기 물건 밑천들인 물건이잖아요. 그걸 팔아가야 총 밑천까지 합해야 20원을 벌면 잘 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아예 밑천도 없이 통째로 자기 돈이 아니에요. (사례 11)

혜산시에서는 CD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인물 들여다가 매음행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대기숙박, 개인집에다 사람 데려다 놓고 매음시키고 집세 받고 여자들하고 나눠먹고 이런 행위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 시범적으로 걸린 게 어느 남자가 자기 집에다 대학생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성인물을 보면서 그대로 매음행위를 조장시킨 게 자료적으로 적발되다 보니까 그게 큰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해서 크게 떠들면서 총살시켰죠. (사례 1)

8.15돌격대라고 있어요. 돌격대가 북부철길 보수공사에 나왔는데 이제 중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온 애들 나이가 18, 19, 20살. 성년이죠. 그런 어린 처녀애들이 일하는 거 보게 되면 어깨에다 짐을 마대지고 나르고, 땅 파고 정말 주는 건, 먹이는 건 정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며 힘들잖아요. 그때 처녀애들이 이제처럼 매매죠, 성매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또 거기 나오는 애들 자체가 집의 가정생활이 힘든 애들이거든요. 큰 권력 있고 잘사는 집 애들은 거기 내보내지 않고 돈 주고서도 빼내요. 애들이 성매매 많이 했다고 했어요. 북한 돈 5000원 받았다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회적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김정은 시대 내려와서. (사례 12)

북한 형법상 음탕한 행위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제250조).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보면, 러시아 형법은 ‘음란행위(제135조)’를, 중국 형법은 ‘다중 음란활동(제301조)’를 규정하고 있다.[132] ‘법일군 참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49) 어느 한 도시에서 생일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3명이 같은반 동창생인 녀자 4명을 데리고 와 밤새껏 술을 마시며 록음기를 틀어놓고 노래부르며 춤을 추다가 서로 다른 방으로 갈라져 성교하였는데 그중 한명의 남자만이 2명의 녀성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교대로 성교하였다.[133]

위 사례는 음탕한 행위죄가 아닌 불량자적 행위죄가 적용된다. 이 사례에 대한 형법적용 해답은 음탕한 행위죄의 구체적 행위를 “남녀가 한곳에 모여 쌍쌍이 성교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사례의 미성년자들이 혼인적령기에 이르지 않아 그들의 행위는 난잡한 성적관계로 불량자적 행위죄를 적용하고 있다.[134]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잘사는 집, 즉 간부자녀들이 음탕행위로 적발되어 간부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135]

(1) 혼인관계 일탈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는 2004년 북한 형법에 새롭게 규정된 범죄이다. 혼인관계와 가정의 공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비법혼인 및

---

132)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p. 1053~1054.
133)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08.
134) 위의 책, p. 409.
135) 사례 8

가정파탄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자"이다(제257조). 이 범죄규정은 말 그대로 불법혼인관계를 규율한다. 우리의 폐지된 간통죄규정과도 유사한 규정이다.

2012년 형법은 2004년의 '비법혼인죄(제270조)' 조문명을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제257조)"로 변경함으로써 죄명을 명확히 하였다. 그 구성요건은 2015년에서도 그대로이다. 한편 다른 사회주의 권 형법을 보면, 중국 형법은 '중혼 등(제258조)', '현역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제259조)'를, 베트남 형법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위반죄(제147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일군 참고서'는 북한에서 불법혼인 및 가정파탄의 사례로 다음을 들고 있다.

> (정황 364) 지방에서 올라와 평양시의 어느 한 중앙급대학에 다니는 채문일은 학생기간과 졸업후 배치문제를 도움받을 목적으로 간부집 딸인 박춘실과 약혼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와 파혼하고 결혼등록없이 다른 녀성과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그 녀성이 음식을 잘 만들줄 모르고 녀성다운 애교가 없이 무뚝뚝하다고 하여 곱게 생긴데다가 애교가 있는 난방사업소 로동자 백경수의 아내 송미순과 살것을 약속하고 부화하여 그의 가정을 파탄시켰다.[136]

생계 및 배우자 외도 등으로 이혼 증가

> 비법혼인, 중첩죄 역시 포고 내려왔고 이 문제를 강하게 사회를 문란 시키는 행위다, 기강을 바로 잡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북한에서는 그거를 통제합니다. 한국에서는 동거라 합니

136)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422~423.

까?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이걸. 내가 유부남인데 이혼을 안했어요. 본처하고 이혼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사는 문제. 이것도 중첩죄에 걸리거든요. (사례 12)

(정황 364)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가족법이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지만 실생활과 범죄확정에 있어 사실혼도 인정하고 있음을 형법적용 해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물론이고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공고화를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서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도 그러한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 당국의 결혼 및 가정정책과 달리 경제난 이후 생계문제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문제가 증가해왔다. 재판이혼만 인정되는 북한에서 당의 지시로 부부교양을 통해 이혼을 예방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내려오지만 생계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는 부부들이 재판소 등에 뇌물을 받쳐 이혼을 하기도 한다.[137]

2004년 비법혼인죄 신설은 북한 당국의 가정해체 우려와, 미혼여성의 장사활동금지 및 직장복귀방침이 내려지면서 위장결혼과 함께 직장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대책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138] 인민보안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기 불법이혼이나 위장결혼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불법이혼의 경우는 부인이 장사 다니느라 몇 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른 여성을 재판소에 데려가 아내라고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위장결혼의 경우는 집을 얻으려고 불법적으로 혼인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례 11)

---

137) "이혼 재판 받기 위해 뇌물 바쳐야," 『오늘의 북한소식』, 제317호, 2009.12.22; "남편 외도에도 이혼 얘기 못 꺼내," 『오늘의 북한소식』, 제406호, 2011.6.8.

138)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제9권 2호 (2015), p. 18;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25~230.

(2) 부양과 보호책임 일탈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공동생활서 침해범죄 범주에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양로사업질서위반죄, 학대괄시죄를 두고 있다. 이들 범죄는 부양 및 보호책임과 관련한 범죄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 범죄는 개인의 보호법익을 중시하기보다는 북한 사회 자체가 집단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범죄 영역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와 학대괄시죄는 노인, 아동, 노동능력상실자와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요보호자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범죄유형이다.

북한의 법적용 해설서인 '법일군 참고서'도 이들 범죄에 대해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는 부양 및 보호의무를 외면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지는 범죄라면, 학대괄시죄는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의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139] 한편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살펴보면, 러시아 형법은 '미성년 양육의무의 불이행(제156조)', '자녀 또는 노동능력 없는 양친에 대한 부양금 지급의 악의적 회피(제157조)'를, 중국 형법은 '연로자, 연소자, 환자 또는 기타 생활능력 상실자에 대한 부양의무 회피(제261조)'를, 베트남 형법은 '부양의무의 거부 또는 태만죄(제152조)'를 규정하고 있다.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의 구성요건은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이다(제258조). 이 범죄에서 요보호자에 속한 노인은 가족관계에 의해 부양 및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요보호자에 속하는 아동은 혈연 및 인척관계에 있는 자녀, 위탁양육 어린이 등을 말한다.[140] 노동능력상실자는 계약 또는 법률관계에 있는 요보호자이

139)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27.

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68) 결혼후 몇년이 지나 따로 살던 시어머니 김순남이 남편이 사망하자 가장집물을 모두 가지고 외아들인 홍광식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자 며느리인 박명심은 살림방이 한방인데다가 시어머니가 장사도 할줄 모르고 몸을 잘 거두지 않으며 쌀만 축낸다고 하면서 척하면 시어머니와 싸움질을 하여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따로 나가라고 하였다. 결과 시어머니 김순남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고민하던 끝에 양재물을 먹고 자살하고 말았다.[141]

노인 돌봄에 소홀 양상

북한은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늙은이·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규정 다음에 ‘양로사업질서위반죄(제259조)’를 신설하였다. 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양로사업을 잘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이다(2015년 북한 형법 제259조). 여기서 양로사업은 식량 공급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돌봄을 통해 노인들이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공을 세운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는 사회전체의 국가적 의무이다. 이 범죄의 행위의 주체는 양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일꾼들이다.[142]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국가기관들의 운영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난 등 이유로 노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양로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

140)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 1085.
141)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25.
142)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 1087.

나타나고 있다.

> 그게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양로원, 중등학원 여기에 김정은이 관심을 많이 돌렸고 전국적으로 도에서 양로원 하나씩 더 확장보급,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전에 있었어요. 더 확장하여 노인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라. … 그런데 김정은 시기 특징이 뭐냐면 당에서 과제를 떨궈줘요. 도마다 떨궈주는데 국가가 부담해주는 몫이 있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주는데 그러나 그 나머지는 도자체로 보장해라. 그러나 이제처럼 건설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내가 먹여 살리는 문제에서 배급이거든요. 식량 이런 건 아마 국가가 해줄 거예요. (사례 12)

한편, 학대괄시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이다(제260조 제1항).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은 "앞항의 행위로 보호대상자가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망되게 하였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이다(제260조 제2항). 이 범죄는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직무관계, 법률관계, 계약관계 중 어느 관계에서 자기 보호책임 아래 있는 사람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143]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보면, 러시아 형법은 다양한 학대형태(공무관계, 임산부, 의존관계, 고용관계 등 학대)를 규정한 '학대(제111조)'를, 중국 형법은 '감독관계에서 학대(제246조)', '가정구성원 학대(제260조)',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학대(제443조)'를, 베트남 형법은 '학대죄(제110조)', '직계관계 학대(제151조)', '전쟁포로 등 학대(제340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일군 참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할 법한 학대괄시행위의 사례로 다음을 들고 있다.

---

143) 위의 책, pp. 1092~1093.

(정황 370) 돌격대 소대장 박금혁은 대원들의 생활을 잘 돌볼대신 돌격대의 다른 소대에서 넘어온 리영호가 말을 잘하지 않고 몸이 약하여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척하면 몰아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구박을 주어 그가 기를 펴지 못하고 고민중에 나중에는 자살하게 하였다.[144]

위 사례는 군대의 소대장이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부하 대원을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괴롭혀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살에 이르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소대장의 행위는 학대괄시죄로 처벌된다.

학대괄시죄의 실례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원인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몇 월 며칠 상급자가 자신을 괴롭힌 사실을 편지에 써서 당중앙위원회 신소과(민원과)에 직접 가서 제출하였다. 그 하급자는 처음에는 당 군중사상노선에 배치되게 사상적으로 상급자를 고발하고 나중에는 상급자가 자신을 대중 앞에서 인격모욕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신소·청원이 들어가면 중앙당에서 반드시 검열이 나온다고 증언하였다(사례 2).[145]

---

144)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27.

145) 실제로 북한에는 1998년에 제정된 '신소청원법'이 있다.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북한 신소청원법 제2조). 신소는 공민이 직접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신소할 수 있다(동법 제9조). 그리고 신소청원의 방법은 해당 기관 등에 찾아가서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2), pp. 86~87.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가. 노동중시 의식 약화와 도박·마약 증가

건전한 근로관념 또는 근로정신 등의 경제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박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이고,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은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이다(제255조). 도박죄는 1987년 형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었다. 1987년 도박죄(제134조) 구성요건은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자"로 1년 이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도박에 사용된 돈과 물건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박죄 구성요건은 2004년과 2012년 형법에서 개정되었다. 2004년 형법상 도박죄(제266조) 구성요건은 1987년 형법상 기본 범죄행위와는 같지만 법정형은 2년 이하 노동단련형을 적용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 노동교화형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을 강화하였다. '법일군 참고서'는 이 범죄 사례로 고의적 중상해죄와 병합한 다음의 정황을 들고 있다.

> (정황 356) 로씨야의 원동지방에 벌목로동을 나가있던 최철순은 몇 명의 로동자들과 돈을 대고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이 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딴다고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 결김(화가 난 나머지)에 마시던 술병으로 한 로동자의 머리를 쳐서 중상해를 입혔다.[146]

시장 활성화와 함께 도박, 마약범죄 증가

146)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14.

옛날에 조금씩 있었는데 크게 취급을 안했어요. 5, 6년 전부터. 그것도 유행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시내에서 도박 즐기는 애들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하면서 전문 하고. 한 번 끊어지면 잠잠했다가. 도박 건으로 취급도 하고 애들이 밀수랑 하고 돈이 많은 애들이 하죠. 조그마한 건 도박으로 보지 않아요. 큰 애들이 너무 빚지고 하니까. 와이프들이 신고하죠. 버릇을 떼느라고. … 정신 차리느라 빙두 쓰면 정신 말짱해지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도박하는 게 머리가 잠이 안 오고 정신 나기 때문에 동반하는 게 필수에요. (사례 11)

2004년 형법상 도박죄의 형벌 강화는 마약범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박을 하는 자들이 마약에도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147] 마약범죄가 증가할수록 도박범죄도 같이 증가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화투, 주패, 당구 등에 의한 도박행위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148] 이러한 문제로 북한 당국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도박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도박죄에 대한 2012년 형법상 형량이 감소된 데에는, 2012년 형법이 마약범죄 가중사유에 사형적용을 추가한 것 외에, 나머지 일반범죄규정에 대한 형을 감량 또는 완화하는 형사정책을 펼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도박현장을 덮치기도 한 인민보안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도박범죄는 마약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빙두 같은 마약을 하면 정신을 맑게 해서 잠이 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도박에서는 필수적으로 마약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기 전보다 이후에 도박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졌는데, 보통 도박하는 남성

147) 김석향,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p. 93.

148)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p. 160.

들의 부인들이 남편의 도박버릇을 없애려고 신고하기도 하고, 인민반에서 제기되면 조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149]

나. 묘파괴 현상

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을 매장하여 사자(死者)를 제사하거나 기념하는 장소이다.[150] 따라서 조상에 대한 일종의 종교감정 내지 신앙과 같은 선량한 풍속이 묘파괴죄의 보호법익이다. 묘파괴죄의 구성요건은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이다(제264조).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보면, 러시아 형법은 '사체 및 묘소에 대한 모독(제244조)'을, 베트남 형법은 '사체, 분묘석, 유골침해죄(제246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일군 참고서'는 이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76) 장례집에 가서 입관을 주관한 구운명은 사망한 녀자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두 개나 끼워있고 금이빨을 한가득 한 것을 보고 한달쯤 지나 야밤에 산에 올라가 죽은 녀자의 묘를 파헤치고 판넬을 뜯어낸 다음 시체에서 금이빨과 금가락지를 빼낸후 대충 묻어 봉분을 없애버렸다.[151]

위 사례에 대한 형법적용 해답은 형법상 묘파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묘파손행위는 시체를 묻은 봉분이나 비석같은 것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재산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질투심, 복수심 같은 비렬한 동기에서 묘를 파헤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시체를 손상시킨 것 같은 행위"이어야

149) 사례 1

150) 법무부 통일법무과, 『북한형법 주석 2014』, p. 1107.

151)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31.

한다.[152]

묘비 손괴 및 철근 절취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고난의 행군기에 남의 조상의 묘비를 깨서 철근을 절취해 파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시장에 팔 물건 마련이라는 명목이 타인 묘 및 묘비를 훼손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철을, 파철을 중국에다 팔아넘기는데 묘 비석(묘비)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비석을 만드는데 거기 다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팔아먹느라고 비석을 다 들이깼어요. 묘에 가서. 지금은 깰 비석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비석을 세우고 하니깐 지금은 나무비석까지도 막 가져다 불 땐다고요. 묘 도굴문제는 골동문젭니다. 개성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묘들이 도굴 당했다고 해요. (사례 12)

152) 위의 책, p. 432.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가. 습득물 횡령

북한 형법상 사회범죄 유형과는 거리가 있는 범죄유형이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장에서 다뤄지고 있다. 습득물횡령죄,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약취물건거래죄,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사회범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이익(국가재산)에 대한 것과 명령규범에서 보호하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명령규범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 또는 금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습득물횡령죄는 타인의 재산 및 국가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이다(제261조). 다른 사회주의권 형법을 보면, 베트남 형법이 '재산의 불법소지죄(제141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일군 참고서'는 이 사례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황 371) 승용차운전수 오순철은 낯모를 손님을 차에 태우고 달려가다 그가 내린 후 사업소에 돌아와보니 뒤좌석에 손가방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수많은 외화와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처음에 그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다가 가방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게 되자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모두 가지였다.[153]

북한에서 습득물 횡령행위는 행위자의 의식 속에 부르주아사상 등의 잔재가 자리잡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재산이나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153) 위의 책, pp. 427~428.

동동생활준칙을 위반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여긴다.[154]

나. 대외사업일꾼의 사례금 착복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이다(제262조). 이 범죄는 2004년 형법에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로 새로 규정된 범죄유형이다. 2012년 형법에서 이득금이 삭제되고 사례금만 해당 조문에 남았다. 2004년 형법에서 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제274조)까지 규율하고 있었다.

이 범죄행위는 공무수행과정 중 발생한 사례금이나 이익금을 사사로이 착복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례금'은 대외건설부문 일꾼이 무역 및 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과 물건을 말하고, '이익금'은 외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얻게 된 이익 외에 그밖에 더 얻은 이익을 말한다. 대외사업과 관련 없이 기념품을 받거나 친분관계에서 사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준 경우는 제외된다.[155]

이 범죄는 일반행정질서 침해범죄에 해당하는 '뇌물죄'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관리일꾼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대외사업일꾼이 사례금을 착복한 경우 직무 대가성은 없더라도 '대외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가 성립한다. 이 범죄 사례로 다음이 있다.

(정황 373)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나가있는 대외건설부문

154) 김근식, 『형법학』, p. 180.

155)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29~430.

일군이 대방과 사업하여 려비를 더 받아 나누어가졌거나 대방나라에서 우대하여주는 물자들에 대하여 인원수를 더 늘여 더 받아 공동탐오하였다.[156]

대외사업 관련 일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에서 '사례금'은 비자금의 일종이며 공식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자금이다. 예를 들어, 대외무역일꾼이 당국으로부터 석탄이나 조개 50톤에 대한 수출입허가권인 와크를 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석탄이나 조개 100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와크 수수료를 따로 챙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증언하였다.[157]

다. 약취물건 거래 및 나쁜 결과 발생방임

약취물건거래죄의 구성요건은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이다(제263조). 약취물건거래죄는 우리의 장물죄와 비슷한 범죄유형이지만, 우리의 형법은 장물죄를 재산범죄로 규율하지만, 북한 형법은 사회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약취물건거래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재산 등이라는 점을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정황 374) 무직자 김동철은 부양가족 박영실의 집에 무단숙박하면서 그와 공모하여 미상인들이 훔쳐온 부림소 5마리를 현금 75만원을 주고 사다가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 112만 7,600원을 받아 전부 매식에 소비하였다.[158]

---

156) 위의 책, p. 429.

157) 사례 2

158)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30.

여기서 부림소란 “짐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기 위하여 기르는 소”를 말하는데,[159] 북한에서 부림소는 생산수단에 해당하므로 개인재산이 아닌 국가재산에 속한다. 위 사례에서 약취물이 부림소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약취물건거래죄 외에 국가재산고의적 파손죄까지 지게 한다.

이외에도 기타 사회질서범죄에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라는 명령규범의 보호법익을 위반한 부작위범죄가 있다.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을 위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60] 이러한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자”이다(제265조). 이 범죄의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 (정황 378) 피복공장 지배인 김옥실은 공장뒤산에서 산불이 발생한것을 보았으며 산불끄기에 로동자들을 동원할데 대한 군인민보안서의 통지를 받고도 생산이 긴장하다고 하여 한명도 동원시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산불이 점점 퍼지면서 30정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161]

위 사례에서 김옥실은 산불이 난 것을 알았다. 또한 산불끄기에 노동자들을 동원할 것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산불 소화를 위한 노동자 동원을 하지 않은 부작위적 방임행위로 인해 대량의 산림피해를 초래하여 이 범죄로 처벌 받는다.

---

15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검색일: 2018.7.30).
160) 이재상, 『형법총론』, pp. 114~115.
161)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434.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이상으로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일탈과 사회범죄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간 북한은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162]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사회질서 확립의 전거로 삼아 왔다.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조직적 ·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개조, 교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전통적 공공질서 준수 의식은 아래로부터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있을까?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김정은 시대의 주요 특징

(1) 주술적 힘에 의지하는 미신행위 증가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에 발생하였던 각종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지속되는 것을 넘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불안 및 공포를 조성하는 불량행위가 증가하고, 국가질서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우선시 되면서 관료사칭행위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계 및 국가적 혜택(의료, 주택문제 등)을 책임져주지 않는 당이나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사상적

16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92.

해이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신행위(운수, 궁합, 굿 등)를 통해 건강문제나 자신의 미래를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등 사상교양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상강국'이라고 표방하는 북한에서 사상통제체계가 이완된 결과가 주민들의 행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2) 성매매 및 성의식 미흡

인터뷰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가운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주민들의 성의식의 정도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불법의식은 국민 모두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음지에서 나타나는 불법적 성매매자들 및 관련 알선·중개업자들의 의식까지 포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에서 성문제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인식 속에서, 북한 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건전한 성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의식 또한 자리 잡혀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향후 통일대비 남북한 간 주민의 성의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북한에서 생계를 이유로 경제적 수입의 일환으로 성매매가 증가하고, 외부문화유입으로 불법 성녹화물 등이 유포되어 북한 주민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향후 어떻게 주민들을 개도해나갈 것인지도 주목할 사항이다.

또한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방식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음도 주목할 사항이다. 성을 파는 여성은 형벌로, 성을 사는 남성은 행정처벌로 규제하는 성별 차이를 두는 처벌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뇌물을 써서라도 행하는 재판이혼과 도박·마약범죄 증가

한편 법률혼 및 재판이혼만을 인정하는 북한에서 중혼문제, 배우자 외도 문제 등으로 법정 혼인관계가 깨지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뇌물을 써서라도 재판이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경제위기 이후 부모자식의 생계가 문제가 되어 꽃제비 현상까지 발생했던 북한에서 노인·아동 부양에 대한 책임 회피문제 역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적 노력동원, 군사훈련 동원 등을 위해 노동의무를 신성시했던 북한에서 근로정신 및 사회주의적 경제도덕이 붕괴되면서 마약과 도박행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있지만, 우리 민족 정서상 조상의 묘를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모셔왔던 풍속마저 없어지고 경제적 이득과 생계 우선으로 타인의 묘를 도굴하고 묘비를 파손하는 행위에서 남북한 주민 간 공서양속의 감정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201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 패싸움 등의 집단 불량자적 행위나 미신행위, 성매매, 집단 음란행위, 도박행위, 불법혼인관계, 사례금 착복행위, 양로사업질서위반행위 등을 더욱 강력히 법적으로 단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일탈행위는 북한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포고문 등을 내리고 공개처형도 실시하여 해당 범죄행위, 가령, 조직적 성매매행위나 집단 음란행위, 마약행위 등에 대해 강력 처벌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4) 뇌물 수단이 되는 형벌규정과 임시 단속의 비실효성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법기관 일꾼들은 당국의 반짝하는 통제정책에만 그대로 따르고, 당의 정책적 지시가 사라지면 형벌규정 등을 활용하여 뇌물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건설과는 요원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당의 지시로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임시적으로 단속, 통제할 뿐 시간이 흐르면 아무런 효과 없이 예전처럼 주민들이나 관료들이나 구분 없이 사회적 일탈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이다.

인민보안서에서 근무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범죄규정이 만들어져도 그것은 적용하는 보안원들만 알고 있을 뿐 일반 주민들은 사회적 일탈행위들이 비사회주의인 것은 인식하나 범죄행위인 것은 알 도리가 없다고 한다. 실제 인터뷰한 법기관 일꾼과 거리가 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과연 위에서 언급한 사회범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죄, 음탕한 행위죄 등이 북한 형법상 범죄행위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 법적 통제를 강화하다가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 등을 얻기 위해, 사회적 일탈 등에 대해 통제를 가벼이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를 비사회주의로 여기고 북한에서 살고자 하면, 비사회주의는 생계를 위해 기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7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는 과연 법에 의한 통치, 물론 당적 영도 하의 그들식 사회주의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라 하겠다.

나. 당국의 대응 평가: 일탈 지속과 단속시스템의 비효과성 증대

김정일 시대에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회주의규범인 집단주의 정신, 노동의무의 신성화, 가정 공고화, 공동재산 애호 등에 대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이에 반하는 일탈행위를 보였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일탈행위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각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완화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의 양상 및 실태에 있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일 시대와의 차이점은 김정은 시대 들어 통제부분에 있어 단속시스템을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기구 등을 신설하여 운영했다는 점이다. '109상무' 등 각종 단속반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163] 그러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검열을 실시하지만, 그 성격상 임시적 단속형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오히려 통제의 비효과성만 노정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상당하다.

163) 한재현, 『김정은시대 사회통제전략의 변화와 지속성: 풍기단속을 통한 통제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연구용역보고서, 2017), p. 43.

V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시각과 유형 분류

이 장에서는 북한 형법 중 '사회주의 문화범죄'로 분류된 일탈행위에 대해 각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에도 사회주의 문화범죄 중 일부 범죄행위의 실태를 조망하는 연구가 있었다. 가령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양상이라든가 북한의 마약 사용 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164] 그러나 북한 형법이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규정한 범죄를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주의 문화범죄는 여타 범죄와 달리 체제의 정체성 및 정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한 처벌규정보다는 남한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함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범죄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 및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어떻게 통제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주의 문화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자.

헤겔은 역사의 진보란 그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165] 독일 관념론 철학을 계승, 완성시킨 헤겔은 인간의 이성이 인류를 진보로 이끌며, 서로 다른 시대정신의 충돌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물질, 경제, 생

164)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2호 (2013); 양옥경 외,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동아연구』, 제37권 1호 (2018).

165)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서울: 동서문화사, 2016).

산 등의 형이하학적 '하부구조'가 정신, 철학, 이념과 같은 형이상학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166] 역사는 시대정신이 아닌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순서로 진보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계승한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레닌은 사회주의 문화가 자본주의 경제(=물질)의 발전으로 인해 형성된 자본주의 문화(=정신)를 없애고 인민의 사상 개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주의 문화란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유흥 문화를 없애고, 신이라는 관념론적 존재를 퍼뜨리는 종교를 말살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 내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확립하는 사상개조 문화운동이었다.

북한 헌법은 문화의 원칙을 별도의 장으로 따로 떼어 설명하고 있는데(제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반대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제41조),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것(제42조)을 선언하고 있다(〈표 Ⅴ-1〉 참조). 즉,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문화란 인민의 의식을 개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의 교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166) 카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울: 지만지, 2008).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에서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리고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167]

그렇다면 북한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주의 문화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영역은 무엇인가? 표를 통해 정리하면 아래 〈표 Ⅴ-1〉과 같다.

〈표 Ⅴ-1〉 북한 사회주의 문화의 의의 및 영역: 헌법 「제3장 문화」

사회주의 문화의 목표와 원칙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교육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16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42.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과학기술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예술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체육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의료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환경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자료: 2016년 6월 29일 수정보충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해 저자 재구성.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안에 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불건전한 문화적 요소들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추진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 과학, 예술, 체육, 의료, 환경 등 사회생활 전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문화양식을 확립함으로써 인민의 사상적 요구를 구현할 것을 추구한다.

결국 사회주의 문화범죄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노선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며, 북한은 형법을 통해 이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형법 변화 과정에서 수정 또는 추가된 사회주의 문화범죄 유형은 아래 〈표 Ⅴ-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Ⅴ-2〉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 유형

개정연도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규정	
1987년 (총 6개)	◦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제97조), 저작·발명·창의고안 묵살·도용죄(제98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제99조), 의료사고죄(제100조), (의료일군 아닌 자의) 비법의료죄(제101조), 비법적 아편재배, 마약·독약 제조·보관·이용·양도죄(제102조)	
2004년 (총 26개)	신설	◦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 **적대방송청취·인쇄물, 유인물수집·보관·유포죄**(제195조), **역사유적도굴죄**(제197조), **역사유물밀수·밀매죄**(제198조), 컴퓨터망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유포죄(제203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제204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제205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제206조), 치료거부죄(제208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생산죄(제210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제212조), 국경검역을 무책임

개정연도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규정	
		하게 한 죄(제213조), 사람의 장기·태아·혈액의 취득·매매·이용죄(제214조), 가짜의약품·식료품제조, 판매죄(제215조), **마약밀수·밀매죄**(제218조) → 18개 신설, 밑줄표시는 2012년 삭제
	보충	◦ 1987년의 (의료일군 아닌 자의) 비법의료죄(제101조) → **(의료일꾼 아닌 자 또는 의료일꾼의 병원 외에서 이기적 목적의) 비법의료죄**(제211조)
	분리	◦ 1987년의 (제98조) → 저작·발명·창의고안 묵살죄(제199조), 저작·발명·창의고안 도용죄(제200조) / (제102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16조), 비법마약사용죄(제217조)로 분리, 아편·마약 등의 양도죄는 새로이 밀수·밀매죄에 포함 신설
2012년 (총 26개)	수정 또는 보충	◦ 2004년의 적대방송청취·인쇄물, 윤인물수집·보관·유포죄(제195조) → 적대방송청취·적지물수집·보관·유포죄(제185조)로 수정 ◦ 2004년 형법상 정보파손죄(제202조)의 정보처리장치, 매체 파손 부분 → 정보파손죄(제193조)의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 파손으로 수정보충 ◦ 2012년 형법상 후비양성질서위반죄(제195조),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제196조): 2004년의 이들 범죄구성요건에서 뇌물, 직권남용 부분 삭제됨 ◦ 비법의료죄(제200조): 기존 의료일꾼의 병원 외 이기적 목적의 의료행위 → 의료일꾼의 의무활동 외 이기적 목적의 의료행위로 수정 ◦ 불량의약품생산죄(제201조): 불량의료기구 부분 삭제 ◦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제206조): 독성물질 제조 추가 ◦ **마약밀수, 밀매죄**(제208조): '특히 대량'10년 이상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처벌 등 가중사유 추가
	분리	◦ 2004년의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제196조) →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고의적파손죄(제186조)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과실적파손죄(제187조)로 분리
2015년 (총 26개)	수정	◦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제206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특히 대량 및 정상이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경우 등 5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처벌 등 가중사유 추가
	분리	◦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제206조) 중 독성물질제조죄 → 행정부문의 '폭발물·독성물질비법제조·휴대·사용·양도죄(제215조)'로 이동

자료: 황의정,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161을 수정 및 보완.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북한에 외부문화의 유입이 불가피해진 첫 사건은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동구권 및 구소련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부족한 재화와 용역을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조달해 왔으나 동구권 및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상품을 국제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퇴조하면서 외부문화의 유입이 활성화되었고 북한 내부의 이념적 · 사상적 통일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초 비(非)사회주의적 현상을 제거 및 감시하기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빠'(이하 비사그루빠)를 조직하고 북한 전역에 걸쳐 주민들을 검열·단속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주민들은 이념보다는 물질을,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168] 특히 생계유지를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시장 활성화로 이른바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 집단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유흥이나 여가활동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169]

또한 경제난의 심화로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서 청소년에게 당의 공식적 가치지향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학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의 '새 세대'들은 물질적인 이익과 부의 축

168) 이우영,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169)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적에 비중을 두며,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집단 중심의 가치관에서 자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170]

북한의 경제난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자연스럽게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남한의 문화상품들이 북한 사회 내부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외부사조의 유입에 따른 북한 체제의 위기의식은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1999년 6월 1일자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침투를 막기 위해 모기장을 튼튼히 치고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171] 그러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한 간 인적교류가 증대되면서 외부사조 및 문물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기 어려워졌다. 다수의 주민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상개조나 교양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규율 준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172] 결국 북한은 2004년 대대적인 형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는 사회문화적 일탈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점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느 사회나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기제가 존재

---

170)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41.

171)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노동신문』, 1999.6.1.

172)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하는데 그 방식은 크게 공식적 기제와 비공식적 기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73] 공식적 사회통제는 명문화된 법 규정을 통해 일탈행위를 제재하며 그 규정을 강제하는 기구(예: 법원, 경찰, 감옥 등)가 분명하다. 반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사회적·도덕적·문화적 규범을 통해 개인의 일탈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며 그 규범을 강제하는 실체도 불분명하다.

2004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규제는 비공식적 통제기제가 주를 이루었다.[174] 일탈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처벌하기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규율을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체제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인민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당 정책 및 공산주의를 학습시키고 사상개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전형적인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불가피해졌고 이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형법을 통해 공식적 통제기제를 강화했다.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87년 형법에서 단 6개 조항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무려 26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표 Ⅴ-3〉 참조).

2004년 형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부문화 규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문물을 보고 들었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2004년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담은 매체를 보고 듣거나, 따라하거나, 제작, 유포할 경우(제193~194조), 또한 적대방송을 청취하거나 인쇄물 및 유인물을 수집, 보관, 유포할 경우(제195조) 죄의 경중에

173) Albert Cohen, *Deviance and Control*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174)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 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p. 69~105.

따라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은 남한의 '자본주의 날라리풍 문화'를 우회적으로 지칭하며 적대방송 및 인쇄물, 유인물 역시 남한의 매체를 겨냥한 것이다.

〈표 Ⅴ-3〉 사회주의 문화범죄 형법의 세부 변천사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고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록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	제185조 (적대방송 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 국가에서 보존 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6조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6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고의적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과실적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7조 (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8조 (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 (력사유물 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	제189조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 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리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1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리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1조 (콤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콤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2조 (콤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콤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 (정보파손죄) 콤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3조 (정보파손죄) 콤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 (허위정보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콤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 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허위정보 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콤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혼란을 조성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교육부문 일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5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후비양성질서위반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6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 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6조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9조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제207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 보호관리 질서를 어겨 인명피해를 일으	제197조 (어린이보호, 관리질서 위반죄) 탁아소, 유치원 일군이 어린이 보호, 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킨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 (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 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 (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 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9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약을 잘못주어 환 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 생산죄) 의약품 제조 또는 의료기구 제작을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의료기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 (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 제조를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환자를 죽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제211조 (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	제200조 (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또는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군이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리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 외에 리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2조 (위생방역사업 태만죄) 위생방역 일군이 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3조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 국경검역 일군이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 (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품, 동식물 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들어오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이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태, 혈액을 취득, 매매하였거나 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5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 것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 것을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제215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리기적 목적으로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판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판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 의약품, 식료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판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가짜 의약품, 식료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17조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조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2015년 형법
	제218조 (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 (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거래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자료: 저자 작성.

한편, 2004년 형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조항이 신설된 분야 중 하나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것이다. 1987년 구(舊)형법에서는 6개 조항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26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이후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2004년 형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표 Ⅴ-2〉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 문화부문 범죄 유형〉 참고)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문화범죄를 내용별로 유형화 하면 △ 퇴폐행위 관련 범죄 △ 컴퓨터 및 정보 관련 범죄 △ 의료 관련 범죄 △ 교육 관련 범죄 △역사유물 관련 범죄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요 유형별로 실태를 분석한다.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가. 퇴폐범죄

2004년 형법 개정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폐문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중국을 오가며 소규모 밀무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암시장이 발달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이완되었다. 외부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중국을 통해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남한 영상물이 암암리에 유포되었다. 북한 당국이 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외부 문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퇴폐'의 의미

북한에서 말하는 '퇴폐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문란한 성풍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상과 생활방식을 퇴폐적이라고 규정하고, 부르주아 제국주의자들이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북한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계한다. 즉, 남한의 영상물이나 문화상품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북한 당국의 기준에선 모두 퇴폐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이 2009년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법일군 참고서')에는 문화분야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문화는 정치, 경제와 함께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를 이룬다. 문화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시대의 혁명적 문화수준을 가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며 우리의 사상문화를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드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175]

즉, 북한 당국은 사상문화적 침투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외부 문화의 유입이다. 형법 제183조(2015년 형법 기준)는 퇴폐적인 내용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반입 및 유포했을 경우 처벌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입된 경로가 타국 또는 적대국가일 경우 퇴폐적인 문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퇴폐범죄로 규정되는 '타국'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남한 문화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

175)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63.

의 문화도 퇴폐문화로 간주되며, 심지어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문화는 전부 퇴폐문화로 간주된다는 증언도 있었다.

> 북한에는 '퇴폐적인 날라리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조선 것은 아무리 건전한 것이어도 안 되는 거다. 퇴폐적인 날라리풍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나라에서 온 문화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인도, 러시아, 중국 것은 괜찮다. (사례 10)

> 북한 것, 인도 것, 중국 것, 구소련 것은 괜찮다. 요즘의 러시아 것은 퇴폐주의로 간주된다. 중국 것은 판권을 사서 북한TV에서 틀어주는 것은 괜찮다. 중국영화는 몰래 봐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중국 영상물로는 문화대혁명, 중일전쟁 이런 역사물들은 괜찮다. 수호전, 삼국지, 이런 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그냥 지워라 그러고 간다. 러시아 영화 중에서는 흑백영화나 사회주의 시절의 영화는 괜찮다. 인도영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괜찮다. TV에서도 보여주고. (사례 13)

> 북한에서 퇴폐적이라 함은 북한식이 아닌, 외국식, 자본주의식을 모두 일컫는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옛날에는 공산국가였지만 지금은 중국문화도 퇴폐적이라고 한다. 중국글자가 옷에 새겨져 있는 걸 입고 다니면 퇴폐적인 거다. 북한식이 아닌 건 다 퇴폐적이다. 특별히 성문화를 특정해서 퇴폐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사례 14)

'법일군 참고서' 역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거나 외국인이 들여온 문화 매체를 퇴폐물 반입 및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다.

> (정황 242) 해안도시에서 사는 부양가족 강영옥이 CD록화물을 파는 것을 단속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감정을 한데 의하면 남조선과

다른 나라에서 비법적으로 들어온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부르죠아 문예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출처를 해명하여 보니 해안동에 사는 무직자 함경호가 미상의 화교인으로부터 3편의 이러한 록화물을 사다가 자기 집 옷방에 복사설비를 차려놓고 30여 갱의 CD판에 복사하여 강영옥과 다른 부양가족인 최수옥에게 넘겨 팔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이들의 행위를 어떤 법조에 해당한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
(해답) 함경호와 강영옥, 최수옥의 행위를 형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와 형법 제110조 개인의 상적행위죄를 병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176]

그러나 반드시 퇴폐문화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일군 참고서'에서 제시한 아래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퇴폐문화를 국내에서 창작하는 것 또한 이 법의 저촉을 받는다.

(정황 243) 병원 로동자 김경진은 마그네샤크링카공장 로동자 김순옥을 구슬려 집을 데려다가 라체사진 한 장을 제작하는데 현금 2000원씩 주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옷을 벗겨 여러 가지 추잡한 동작들을 형상하게 하여 수자식사진기로 찍은 다음 그에게 그 일부와 함께 현금 30만원을 주었다. 그 후 김경진은 찍은 라체사진들을 이웃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넘겨주고 인민화폐 2000 RMB. Y(웬)을 받아가지였다. 이런 경우 어떤 범죄로 되는가.
(해답) 김경진, 김순옥의 행위는 형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로 된다(이하 생략)[177]

176) 위의 책, p. 307.
177) 위의 책, p. 308.

‘법일군 참고서’는 이에 대해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는 퇴폐적인 문예작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행위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문예작품을 만들기만 하여도 성립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퇴폐물 역시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다.[178]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 역시 음란물 및 퇴폐적 문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만 타국이나 외부 문화로 한정짓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중국 형법 제367조는 “본법에서 말하는 음란물품이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노골적인 색정표현의 출판물·영화필름·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사진과 그림 및 기타 음란물품을 가리킨다” 고 적고 있다. 즉,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화를 퇴폐적이라고 규정할 뿐, 그것이 어느 국가에서 반입이 되었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2) 퇴폐문화 확산의 배경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내용을 보면 남한 영상물은 장마당 등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북한 사회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드라마를 자주 본다. 평남도(평안남도) 평성시장에 가면 파는데, 주로 USB나 알판(CD)으로 사서 본다. (평성시장은 평양에서) 한 시간 정도 차타고 나가면 되는데 전문적으로 한국 알판을 파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 몰래 사서 본다. 왜 보냐면, 사람들이

178) 위의 책, p. 308.

> 북한 대중문화나 영상물은 안 본다. 모든 것이 수령중심론이라 지겹다.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생각한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179]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는 이유가 단지 남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남한의 영상물을 본 이후에는 남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볼 만한 영상물이 없어서 남한 영상물을 접하게 된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

> 집에 있는 TV가 색TV(컬러TV)인데, 북한방송에서는 흑백영화나 무성영화를 틀어준다. 어떻게 2015년도에 이런 걸 보란 말인가. 성우 한 사람이 등장인물 전체의 더빙을 하더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봤는데, 다들 "도대체 이게 뭐냐"고 했다. 시대를 너무 역행하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USB로 외부 문화를 많이 본다. (사례 13)

이러한 증언들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욕구가 잠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헌법은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제74조)는 조항을 통해 북한 주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문화권은 각종 단속 및 처벌 때문에 사실상 적법하게 구현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이에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문

179)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6.5, 경기도)

화적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더라도 공급이 차단되어 있었다면 북한 사회에 남한 영상물이 전파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영상물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어렵지 않게 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 관행이다.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많은 경우 뇌물을 통해 처벌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다.

> 남한영상물을 보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제재 자체가 보안성 사람들에게는 먹잇감이다. 지시문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처벌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전원들이 더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먹잇감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회수한 녹화물은 팔아먹는다. 보안성 사람들이 불법녹화물을 회수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다. "별 떨어질지언정 지금 못 벌면 안 돼" 권력이 있을 때 돈을 못 벌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례 10)

둘째는 기술의 발달이다. 과거 VHS 테이프를 녹화기로 보던 시절에는 숨기기가 쉽지 않아 적발이 용이했지만 알판(CD롬), USB 등 매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 예전에 녹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특정 지역이 의심된다 싶으면 일부러 정전을 시키고 가택(수색)을 한다. 그러면 녹화기에서 테이프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녹화기는 점점 덜 쓰고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노트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트텔 자체가 노트북 정도 크기니까 숨기기가 쉽다. (사례 14)

결국 뇌물 등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또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외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문화적 불평등 문제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문화가 너무 널리 퍼지다보니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수준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정보범죄

정보범죄 역시 2004년 형법 개정에서 크게 강화된 부분이다.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 조항이 있었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조항들은 새롭게 추가되었다. 북한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북한 내부적으로만 작동되는 국가망을 운영한다. '법일군 지침서'에 따르면 △컴퓨터망 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망에 침입한 행위, △컴퓨터망 가입대상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암호열쇠(비밀번호)를 열고 정해진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어있는 자료들을 열람한 행위, △컴퓨터망에 유사한 정보, 혹은 전혀 필요 없는 정보를 입력했거나 유포시켜 가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행위, △처리능력 이상의 접속신호를 보내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행위,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중요정보를 바이러스 유포 등을 통해 파손시킨 행위 등을 컴퓨터 관련 범죄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다.

> (정황 259) 제1중학교 학생 김명수(15살)는 프로그람 작성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 제작프로그람을 가지고 비루스 제작한 다음 비루스의 전파 및 파괴능력을 시험할 목적 밑에 국가콤퓨터망에 류포시켜《절대비밀》에 속한 중요정보를 파손시켰다.

이런 경우 어떤 범죄로 되는가.
(해답) 김명수의 행위는 형법 제202조에 규정된 정보파손죄로 된다(이하 생략).[180]

(정황 260) 콤퓨터 전문가인 한익선은 다른 콤퓨터 전문가들이 자기보다 기준이 높은데 대하여 질투심을 가지고 콤퓨터망에 처리능력 이상의 접촉신호를 보내어 정보처리 중에 있는 콤퓨터가 정보봉사를 못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되는가.
(해답) 한익선 행위는 형법 제203조에 규정된 허위정보 입력, 류포죄로 된다(이하 생략).[181]

(1)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의 유통

컴퓨터 사용은 일반인보다는 당, 기업소, 연구소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북한에서는 국가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도, 또한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때 당국이 국가망 확산을 장려한 적이 있지만 가입비가 비싼 것에 비해 크게 쓸모가 없어 국가망 사용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가망은 전화선으로 모뎀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다. 수요도 많지 않다. 망 관련 국가 인프라가 너무 빈약해서 해킹이라든가 그런 범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훔쳐갈 자료도 없다...(중략)...국가망이 활성화된 게 2009~2010년도쯤이다. 대체로 평양 사람들이 가입했다. 초기 가입비가 100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었다.

180)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23.
181) 위의 책, p. 324.

일단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돈도 있어야 개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컴퓨터로 별로 할 게 없다. (사례 13)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서관에는 국가망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내부 사실들을 검색한다. 날씨라든가, 현지지도 하는 뉴스라든가. 그런 것만 검색되고 외부 뉴스 같은 것은 검색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무슨 용도로 쓰는지?} 문서편집, 출력, 저장 그 정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같다. (사례 14)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의 컴퓨터 사용을 단속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각종 정보의 유출 및 유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과 태블릿, 각종 저장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기에 한해서 사용을 허락했다고 한다.[182] 당국이 개인의 컴퓨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었다.

2009년인가, 나도 노트북이 있었다. 중국을 통해서 구입했다. 처음에는 몰라서 등록을 안 하고 가지고 다녔는데 노트북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오는데 보안원이 따라 들어오더라. 어깨에 멘 게 노트북이 맞냐, 등록은 했냐고 묻기에 안했다고 하니까 회수해버리더라. 보위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바치고 겨우 찾았다. 나중에 알았는데 컴퓨터를 사면 국가정보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등록할 때 컴퓨터 내부를 다 검색한다. 중국을 통해 온 물건이니까 혹시 중국 매체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을 검열하더라. (사례 14)

182) "북, 국가기밀 유출 우려 노트북 태블릿 사용 엄격히 제한," 『자유아시아방송』, 2017.12.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12122017080722.html〉 (검색일: 2018.9.1.).

또한 북한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 검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 '붉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를 스캔하면서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파일을 지우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도에 국가에서 무료로 보급을 했다. 컴퓨터에 그게 깔려 있으면 단속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랬다. '붉은기'로 뭘 지웠는지 기록이 남긴 하지만 어차피 파일명은 다른 걸 사용하니까 지운 파일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윈도우즈7이 나오면서 '붉은기'가 호환이 안 되어서 사용이 흐지부지되었다. (사례 13)

(2)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의 발생

이처럼 컴퓨터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국가망을 통해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모임은 반국가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2009년에 네티즌이라는 말이 북한에도 퍼졌다.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모임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모인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당국에서 주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조직화된 모습을 보게 되니 국가가 불안했던 것이다. (사례 13)

이처럼 정보관련 범죄는 퇴폐관련 범죄 못지않게 북한의 정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컴퓨터 관련 범죄는 외부 정보를 유출 및 유포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의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범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가. 의료범죄

북한은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개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의원에 찾아가는데, 퇴직한 의사나 간호사, 의료업계 종사자,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가정집에서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고 약을 지어주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현상이며,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개인의원을 찾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비법의료죄'에 해당한다. '법일군 참고서'는 다음과 같이 '비법의료죄'의 사례를 적고 있다.

> (정황 270) 부양가족 류미옥은 산부인과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자궁에 바람을 넣으면 녀성들을 류산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전거의 쥬브에 바람을 넣는 펌프를 가지고 어느 한 녀성의 음부에 바람을 넣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런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
> (해답) 류미옥의 행위를 형법 제211조 비법의료죄로 처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183]

(1) 비법적 개인의원의 증가

비법의료죄는 의료일꾼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꾼이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돈벌이와 같은 이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 적용된다. '병원 밖'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

183)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34.

의 의미가 아니라, 치료시간 외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가 병원에서 일하면 배급이나 노임을 받지 못하는 반면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의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보니 어떻게든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합법적으로 그만둘 수 있으므로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여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북한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만큼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한다. 어쨌든 기술을 배워놓으면 돈도 벌수 있고, 약도 빼돌릴 수 있으니까. 특히 간부집 딸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 의대 졸업하고 부양으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의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례 10)

> 어머니가 아는 분 중에 힘 있는 분이 있어서 OO의학 전문학교에 들어갔다. 사실 돈 벌려고 의대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학대학을 나왔거나, 의사거나, 교원이거나,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선호한다. 어머니가 권해서 의대를 갔다.[184]

비법의료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하지만 워낙 일반적인 현상인데다 합법적인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큰 제재를 받는 일은 드물다. 또한 비법의료죄는 마약범죄나 불순녹화물 범죄와 달리 정치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심하지도 않고 처벌도 약한 편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보니 가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184)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10.23, 경기도)

녹말가루로 가짜 아스피린을 만들어서 장마당에서 판다. 프레스 기계를 들여다가 녹말가루로 진짜약처럼 만든다. 그리고 그걸 진짜 아스피린이랑 섞어서 판다. 그래서 약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정품을 사야 한다. 페니실린 주사약도 공장제품이 있고 짝퉁제품이 있다. 공장제품은 더 비싸고, 짝퉁은 싸다. 약도 막 희석해서 (다른 물질이랑) 섞어 가지고 만들고 그런다. 잘 보면 살짝 다르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여도 완전 약효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병이 잘 낫지를 않는다. (사례 18)

(2) 마약의 확산

의료관련 범죄 중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함흥 지역 제약공장에 다니던 과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마약 거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마약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마약은 경제력이 있는 당 간부들 사이에서 먼저 퍼져나갔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상당수 사용하게 되었다.

소위 '빙두'라고 불리는 암페타민 계열의 이 마약은 각성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빙두는 중독성이 없다고들 그랬다. 마약이 아니라고. 검열관, 단속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북한에서는 빙두를 코로 흡입하지 정맥주사로 맞지 않는다. 거기에서 중독성에 차이가 나는 거 같다. 코로 하면 중독성은 없다. 밀수하는 사람들이 빙두를 많이 하는데, 잠을 안 잘 수 있어서 한다. 밀수란 게 밤에 몰래해야 하는 거니까. 국경연선의 군인들도 많이 한다. 저녁 8시면 야간근무를 서야 하니까. (사례 18)

빙두는 일종의 응급처치약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고혈압이나 뇌혈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을 때 쓰면 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사례가 많았다.

> 집에 1그람에서 3그람은 다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탄내를 마셨거나 순간적으로 뇌혈전이 생기거나 했을 때 구급차 오기 전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구급약처럼 가지고 있다. 일종의 비상약이지, 중독은 아니다. 계속하는 사람은 없다. 가스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온수난방이 3일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때던 탄을 땠는데 가스를 잘못 마셔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다. 구급차가 와서 산소공급하기 전에 빙두를 맡고 살아났다. 후유증은 없었다.[185]

> 병이 생겨서 살이 많이 쪘었다. 어딜 가서 뭘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빙두로 고쳤다고 하더라. 3일만 먹으면 살이 쫙 빠진다고 했다. 함흥 사람이 권해서 빙두 1그람을 30달러에 샀다. 빙두를 했더니 사흘밤낮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했다. 살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쪘다. (사례 10)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부칙을 신설해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는데, 마약 밀수, 밀매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사형 및 재산몰수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형법부칙 제11조). 마약은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여타 범죄에 비해 훨씬 중한 정치범죄로 간주된다.

185)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6.5, 경기도)

북한에서 말하는 문화는 남한에서 보는 문화와 많이 다르다. 북한은 문화 자체를 정치의 유형으로 본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범죄도 정치범죄나 같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문화범죄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범은 물질적인 범죄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절시키면 되지만 사회문화 부문은 그렇지 않다. 정권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 북한 당국이 70년간 강조해온 사상문화가 마약 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다. (사례 2)

북한이 2013년 형법 수정을 통해 비법아편재배 및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밀수 및 거래죄(제208조)를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형벌을 강화한 것 역시 마약이 북한 사회의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가. 교육범죄

2004년 형법 개정에서는 교육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형법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교육 부문 일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집행한 행위(제204조)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했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학교 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행위(제205조)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중요 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바로 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행위 등이다. 유치원, 탁아소 등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정(제207조)은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유지되었

다.

교원의 비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법일군 참고서'는 교원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정황 262) 교무과장 허진택은 봄과 가을 산나물과 도토리 채취로 학생들에게 수십 일간 일을 시키고는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해도 교육강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여러 과목들의 과정 안에 계획된 형태별 교수를 자의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결과 학생들 속에서 실기능력과 응용능력이 떨어져 학과실력을 높일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범죄로 되는가.
> (해답) 교무과장 허진택의 행위는 형법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로 된다(이하 생략).[186]

> (정황 263) 학교사업에 대한 검열판정과정에 밝혀진데 의하면 경제전문학교의 교원 한상운은 지난 5년여 간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시험치러 오는 10여명의 대상들로부터 미국돈 5000US$와 10만여 원분의 뢰물을 받아먹고 성적을 올려주어 부당하게 입학하게 하거나 15명의 학생들로부터 50여만 원분의 뢰물을 받고 실력평가를 부당하게 하였다. 이런 경우 어떤 범죄로 보는가.
> (해답) 교원 한상운의 행위는 형법 제205조에 규정된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로 된다(이하 생략).[187]

186)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26.
187) 위의 책, p. 327.

(1) 교원의 부정부패

교원들의 부정부패는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등 여러 부업을 통해 생계를 벌었으나 교원들은 학교를 비울 수 없어 생계활동이 불가능했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담임교사의 생계를 걱정해 학부모들이 소액의 돈을 모아 '인사치레'로 교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

> 수업료를 내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조금씩 도와준다. '그래도 내 자식을 잘 가르쳐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소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서 선생님 집에 쌀도 나무도 없다고 해서 보태준 기억이 있다. 선생님이 직접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중국돈) 100원씩 1년에 5번 정도는 도와준다.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이 배급도 없어서 어찌 살겠나. 교원이 제일 못산다.[188]

> 선생님들한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돈을 주는 거 같다. 한 학급이 30명인데 10달러씩 모아서 300달러를 만든 다음에 5명의 선생님에게 60달러씩 준다. 밥을 굶지 않고 사는 서민의 삶을 영위하는 생활비가 한 달에 50달러 정도다. 뇌물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예의의 의미다. 내 자식을 잘 봐달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사치레다. 사람 사는 예의.[189]

그러나 이러한 인사치레 수준을 넘어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구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실력이 아닌 뇌물로 교육의 기

188)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7.31, 경기도)
189)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9.25, 경기도)

회를 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대학시험을 볼 때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특정 학교에 10명이 할당되는 것이 정상이라면, 학교장이 실제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3명뿐이고 나머지 7명은 학부모들이 직접 당일꾼들과 사업을 해서 따온다. 학교장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줘야 하는데 대학에 못 갈 수준의 아이들에 대해 추천서를 써줘야 하니까 학부모들이 뇌물을 준다. 아무래도 부모들은 담임교사랑 가까우니까 담임이랑 먼저 사업을 하고, 담임은 학부모들에게 교장을 잘 구워삶으라고 조언한다. (사례 14)

> 제1고등학교를 나왔다. 고등학생 때 715최우등상이라고 전국적으로 치는 시험이 있었다.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합격됐다. 시험장에서 컨닝하다가 잡혀서 밖에 나간 사람들까지 합격했더라. 엄청 분개했었다. 담임교원이 중앙에 선이 있어서 다 붙이고 그런다. 대학 갈 때 대학별, 학과별로 가격이 다 있다...(중략)...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가 적용된다면 선생들은 다 잡혀가야 한다. 북한에서는 윗간부들을 갈아치우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 일선 교사를 잡아넣거나 하지 않는다. (사례 13)

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과외다. 북한에는 신흥 부자들을 중심으로 과외를 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발생하자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교원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다보니 사교육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과외에도 시기별로 유행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악기를 가르치는 과외가 성행했다면 이후로는 외국

어, 최근에는 국어, 수학, 물리 같은 기본과목들의 과외가 증가하고 있다.

> 과외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게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유명무실화되면서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형편이 확 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지면 그 때부터는 자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악기, 그 다음은 외국어, 그 다음은 국어, 수학, 물리 같은 기본과목들 과외가 생겨났다. 국어, 수학, 물리 같은 과목들은 2010년 이후부터 과외가 생기기 시작한 거 같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이런 과목도 과외가 시작된 거다.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부문에 배치를 한다. 외화벌이기관 같은데 배치를 받는다든가…. (사례 14)

(2) 대학의 의미

대학은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 내지는 지위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발판으로 작용한다. 북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분과 토대, 경제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대학도 그 중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 대학졸업도 성분의 일부다. 토대에 걸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군대도 갔다 와서 당원이 됐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간부 일을 할 수가 없다. 좋은 대학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 (사례 18)

대학이 일종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학문을 접하거나 기술을 배우지는 않더라도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

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혜산을 중심으로 장마당이나 밀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식 교육 등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전문적으로 밀수 일을 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식들 보기에 대학을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02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큰 애도 있고…. 세상이라는 건 자꾸 발전하게 돼 있다. 애들이 다 자라서 아빠 남들이 대학 다닐 때 뭐했냐고 물으면 담벽걸이(졸업장)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의학대학을 다녔지만 검찰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안원을 할 수도 있고 당일꾼을 할 수도 있다. 의학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의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사례 17)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교수들이 뇌물을 받고 성적을 올려주는 일이 많은데, 졸업 학점이 좋아야 좋은 직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남편이 2014년 3월부터 OOO 공업대학에 다녔다. 시험을 칠 때도 돈을 낸다. 대학 졸업할 때 5점이 제일 좋은 점수인데, 한 과목이라도 3점이 있으면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배치되기 어렵다. 그래서 다들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관한테 돈을 고여야 한다. 일반과목들은 한 과목당 중국돈으로 20원, 영어나 컴퓨터는 50원을 고인다. 한 학기에 시험 비용으로 300원 정도는 내야 한다. 교수들이 요구를 한다. 한 문제도 못 풀어도 돈을 내면 시험이 끝난 뒤 따로 불러서 모범답안을 주고 그대로 베끼게 한다.[190]

190)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7.31, 경기도)

이외에도 포치되는 각종 사업에 동원되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거의 매일 5~10원(중국돈)을 내야하며,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교육 전 과정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하루도 무언가 때문에 돈을 안 내는 날이 없다" 보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한 학기에 얼마씩을 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게 낫다" 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191]

결국 경제적 자본(돈)은 문화적 자본(교육)의 차이를 만들고, 이는 다시 경제적 자본의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부잣집 자녀는 과외를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배치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 역사유물 범죄

1987년도 북한 형법은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규정하였는데(제97조), 2004년 형법에서는 역사유물의 훼손은 물론 도굴(제197조), 밀수 및 밀매(제198조)까지도 처벌하는 새로운 법규정이 추가되었다. '법일군 참고서'는 역사유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 여타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92] 주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고의적으로 훔치거나 파손시킨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사유적이나 무덤을 파서 골동품을 찾는 행위(도굴) △역사유적

191) 북한이탈주민 OOO 면접(2017.7.2, 경기도)

192)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서 사회주의 문화범죄를 다룬 사례는 총 42가지로, 퇴폐범죄(정황242~245)와 교육범죄(정황262~265)가 각 4건, 정보범죄(정황255~261)가 7건, 역사유물 범죄(정황246~254)가 9건, 의료범죄(정황266~283)가 18건을 차지했다.

을 훔치기 위해 훼손한 행위(훼손) △역사유적을 팔아서 금전적 이익을 챙긴 행위(밀수 및 밀매)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황249) 경로동직장 로동자 최원일은 쌀과 부식물을 가지고 고려시기 량반들이 많이 묻힌 고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직골에 들어가 여러날째 탐침으로 땅속깊이 찔어가며 골동품을 찾기 시작하였다(이하 생략).[193]

(정황250) 사회보장자 김윤철은 력사유적도굴죄로 7년형을 받고 로동교화소에서 출소된 이후에도 개준하지 못하고 탐침으로 고분들을 찾아 력사유물(골동품) 도굴행위를 하였다(이하 생략).[194]

(정황252) 상하차공 김태석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땅을 파다가 고려사기 청자기 1개를 발견하였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동생결혼식을 구실로 무산군에 들어가 이웃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8000US$로 밀매하였다(이하 생략).[195]

(1) 역사유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역사유물에 관련된 범죄 조항이 늘어나고 처벌이 강화되었을까. 북한에서 도굴꾼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경의 일로, 일부 도굴꾼이 골동품을 찾아내 중국에 팔아 돈을 벌게 되자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196] 특히 개성에는 역사유적이 많아 이 지역에서 탐침을 가지고 골동품을 찾으러 다니는 이가

193)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313.

194) 위의 책, p. 315.

195) 위의 책, p. 318.

196)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북한 주민들 '미군 유골 비싸게 사고팝니다'," 2009.8.5, 〈http://nambukstory.dong.com/Board?bid=123&m=list&timeseed=250&#!lid=302125&bid=123&p=981&m=view〉 (검색일: 2018.9.1.).

많았고, '고난의 행군'으로 살길이 막막해지면서 골동품을 찾아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급증하였다.

> 고난의 행군 즈음 역사유물을 도굴하는 일이 많았다. 곡괭이처럼 생긴 도구로 땅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무덤을 파서 시체에 금이빨을 빼가기도 하고. 시계나 반지 같은 걸 같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팔아먹고. (사례 13)

> 개성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대 동료가 개성에서 도굴을 해서 그걸 연선까지 보내 팔아먹었다. 물건을 중국에 보내면 (가치를) 선별해서 만약 가짜면 다시 돌려보낸다더라. 골동 팔아먹는 게 1990년대 초반에 제일 극성이었다. 골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 하도 많이 팔아먹어서 이제는 그런 범죄가 적어졌다. 개성이 워낙 역사유적이 많이 나오다보니, 비석을 봐서 오래된 무덤이면 파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본다. 부잣집은 거기에서 반지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니까 팔아먹고…. (사례 18)

역사유물을 도굴해서 밀매하는 범죄가 늘어난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골동품을 업자에게 넘기거나 발굴되지 않은 사적을 도굴하는 것을 넘어, 중앙역사박물관의 유물을 훔치거나 실제 사적에 침입해 불상을 훔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범죄의 강도가 점차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 북한사람 치고 문화재 팔아먹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략)…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물을 팔아먹기 위해 우선 나라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자꾸 붙들리니까 북한에서 법을 참 엄하게 정해서 총살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돈맛을

> 알고 하니까 가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중앙역사박물관도 터자고 접어들고요. 제가 있을 때 함북도에 저 유명한 칠보산 큰절의 금불상을 대학생이 훔쳐서 그것을 찾느라 도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197]

골동품 사업은 일확천금이 되는 사업이었다. 초기 수집업자들은 큰돈을 벌었지만 점차 북한 마을들에 골동품이 고갈됐고, 골동품이 막대한 돈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주민들도 별치 않은 골동품도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골동품 업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굴이다. 특히 개성지역에는 고분이 많아 파면 골동품들이 적잖게 나왔다. 이렇게 도굴된 골동품은 물론, 북한 중앙역사박물관 등 각지 박물관의 국보급 유물들도 남한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언젠가 중앙역사박물관에 중앙조사단이 들어가 조사해 보니 진열됐던 진품 국보들이 상당수 사라지고 가짜 모조품들만 있었다. 그래서 해설원 등이 무더기로 총살당했다.[198]

(2) 역사유물을 통한 세계화 추진

역사유물의 도굴과 밀매가 성행하자 김정은은 역사유적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994년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강화한 이 법은 총 6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유산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음

197) "[남과 북, 어제와 오늘] 북한의 문화유산②," 『자유아시아방송』, 2010.6.17, 〈www.rfa.org/korean/weekly_program/hope_news/yesterday_now-061720101511 23.html〉 (검색일: 2018.9.1.).

198)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북한 주민들 '미군 유골 비싸게 사고팝니다'," 2009.8.5, 〈http://nambukstory.dong.com/Board?bid=123&m=list&timeseed=250&#!lid=302125&bid=123&p=981&m=view〉 (검색일: 2018.9.1.).

을 천명하고 문화유산의 발굴은 국가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통보하며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이 민족유산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제정되었다(〈표 Ⅴ-4〉 참조).

〈표 Ⅴ-4〉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조항 변천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제정, 2012년 폐기)	문화유산보호법 (2012제정, 2015년 폐기)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제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1조(문화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문화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1조(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물 같은 력사유물에 속한다.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눈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물 같은 력사유물에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민족유산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눈다. 물질유산에는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같은 것이 속한다.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력사유물을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제3조(문화유산의 소유권) 문화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제3조(민족유산의 소유권)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제정, 2012년 폐기)	문화유산보호법 (2012제정, 2015년 폐기)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제정)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력사유물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문화유산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화유산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민족유산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11조 문화유물 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전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문화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 문화유산의 발굴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산 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 수도 있다.	제11조(민족유산의 발굴기관) 민족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민족유산 발굴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 수도 있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문화유산발견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을 발견하면 문화유산보존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민족유산발견의 통보) 민족유산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보존기관과 해당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2012년과 2015년 법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에서는 물질적인 것(유형문화재)만 문화유물로 간주한 반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는 비물질적인 것(무형문화재)이 포함됐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법 개정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데,[199]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구비하기 위함이다.[200]

김정은은 집권 이후 문화유산보호를 강조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201] 실제로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2014년 북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김정은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유물 감독원으로 일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당 차원에서 역사유적 보호에 대한 강력한 방침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 김정은이 전당적으로 역사유적에 대한 강한 방침을 내렸다. 우리 도에만도 문화유적보존관리 책임부원을 두었던 걸 국으로 격상

199)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을 뜻한다.

200)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문화돋보기』, 제57호 (2017).

201)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노동신문』, 2014.10.30.

시켰다. 당의 방침이라면서 매일, 매주, 매달 전달받으니까 당비서고 초급당비서고 등한시 못한다…(중략)…항상 역사유적에 가서 누가 파손시키지는 않았는지, 주변 땅에 농사를 짓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훼손됐으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자기 능력으로 복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복구 안 되는 건 유적마다 후원단체를 통해 복구한다. 예를 들어 내가 관리하던 유적은 OO시 OO동 소속인데 그 근처에 있는 농장이 후원단체였다. 농장원들이 농사 중에 짬을 내어 보수 공사에 동원되었다. (사례 17)

역사유물의 도굴 및 밀매·밀수는 고난의 행군을 전후한 1990년대 중반까지 가장 극성이었고 이후에는 도굴할 유물이 줄어들면서 관련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사유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훼손이 심각해지자 김정은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 이면에는 대북제재 등으로 정치적 국제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매개로 비정치적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당국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가. 최근 통제강화 동향과 주요 문화범죄 특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형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법집행을 강화하거나 비공식적 통제기제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620상무'다. 2016년 국가보위성은 불법영상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620상무'를 조직해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주민들

이 불법 영상물 보유죄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02] 또한, 한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109상무'가 김정은 집권 이후 활동을 재개해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대대적인 검열을 실시하였다.[203]

2016년 5월에는 제7차 당대회 이후 주민결속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620 군중정치사업제강'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돼 각 지역 도당과 시군의 하부조직에 하달되었다. 이 문건은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만든 일종의 행동지침서로 불순녹화물 시청 및 유포, 마약 사용 및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행위"들을 "반국가범죄" 행위로 규정하였다.[204]

비(非)사회주의 범죄로 처벌하던 것을 반국가범죄로 처벌할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해지며, 실제로 문건은 해당 사건들로 체포된 사람들이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소에서 총살당했다고 적고 있다. 문건은 "이색적인 퇴폐적인 사상문화는 우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모든 세포들을 괴사·붕괴시켜 나중에는 당의 령도도 거세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낼 수 있으며, 적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 사상문화를 짓뭉개버리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3월 19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내리고 남한 영상물을 뜻하는 '불순녹화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05]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

202) "北, '620상무' 신설해 함북 주민 불법 영상물 대대적 단속," 『연합뉴스』, 2016.11.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072200014.HTML〉 (검색일: 2018.9.1.).

203) "북 109상무, 단속 대상 확대," 『자유아시아방송』, 2015.10.23,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rackdown-10232015102305.html〉 (검색일: 2018.9.1.).

204) "북한 내부 자료에 담긴 반국가범죄 사례," 『뉴시스』, 2017.8.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466〉 (검색일: 2018.9.1.).

205) "北, 남북·북미회담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포고문' 내려…사진 입수," 『뉴시스』,

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이완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을 단속할 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문화범죄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 및 밀매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게끔 형량을 강화하였다. 마약이 북한 사회에 퍼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아편 등의 마약을 재배하고 이를 해외에 밀매해왔다.[206] 이 중 일부가 북한 내부의 암시장에 흘러들어오면서 마약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207]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함흥 지역 제약공장에 다니던 과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마약 거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208] 마약은 경제력이 있는 당 간부들 사이에서 먼저 퍼져나갔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상당수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의료복지가 일천한 북한에서는 몸이 아플 때 변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마약을 응급약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마약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마약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18.3.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5_0000291017〉(검색일: 2018.9.1.).

206) Sheena Chestnut,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pp. 80~111.

207)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 9, no. 1 (2013), pp. 45~60.

208) "'북 주민 마약실태' 발표한 김석향 교수," 『자유아시아방송』, 2013.9.30,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terview-09302013105803.html〉(검색일: 2018.9.1.).

나. 마약과 퇴폐 범죄 처벌 강화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권력 이양 및 '후계자 만들기' 작업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출범된 김정은 체제는 정당성 확립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사회주의 문화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마약 관련 범죄와 퇴폐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두 범죄는 북한 사회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흔들어 체제유지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Ⅴ-5〉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형법 조항 가운데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관련된 주요한 것을 추려 형량을 비교한 것이다. 아편·마약 제조 범죄의 최고형량이 사형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아편·마약이 현재 북한 사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창궐해있으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퇴폐범죄 역시 최고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한국 녹화물이 널리 퍼져 남한의 발전된 실상이 알려지면 북한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한 당국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5〉 주요 문화범죄 형량 변화

김정일 시대 형법(2004년)	김정은 시대 형법(2015년)
제21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① 비법적 아편 재배 또는 마약 제조: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②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① 비법적 아편 재배 또는 마약 제조: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② 대량 아편 재배 또는 마약 제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③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 또는 마약 제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④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김정일 시대 형법(2004년)	김정은 시대 형법(2015년)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① 퇴폐물 반입, 제작, 유포: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②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① 퇴폐물 반입, 제조, 유포, 보관: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② 대량 반입, 제작, 유포, 보관: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③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7조 (력사유적도굴죄) ①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③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제188조 (력사유적도굴죄) ①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②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2조 (정보파손죄) ①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3조 (정보파손죄) ①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자: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②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① 교육부문 일군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법규정 삭제됨)
제205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① 뇌물 등의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자: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②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5조 (후비양성질서위반죄) ①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자료: 저자 작성.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개정된 2015년 형법 규정은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조항을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의 경우를 보면 2004년 형법에서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2015년 형법에서는 4개 항으로 나뉘어졌다. 2004년 형법에서는 아편·마약제조 범죄를 일반적인 경우와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나누어 처벌했는데 2015년에는 아편·마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만큼 마약을 단지 호기심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대량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고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의 경우 2004년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으나 2015년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의 진폭이 넓어졌다.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김정은 정권이 당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었다. 형벌을 조금 약화시켰다. (처벌 수위가 너무 높으면) 정권에 대한 너무 많은 원수를 만들게 된다. 북한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김정은이 싸인만 해주면 성분이 바뀌기도 한다. 형법(형량)을 낮추면 인민들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교양대상자는 그쪽으로(처벌보다는 교양처리로) 처리한다. (사례 2)

다. 역사유물, 교육, 정보범죄의 처벌 이완

한편, 역사유물 범죄, 교육관련 범죄, 정보관련 범죄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형량이 약화되었다. 우선 역사유물 관련 범죄는 1990년대에 극성을 부렸으나 지금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정보관련 범죄는 컴퓨터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상용화되지 않았고 IT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정이 아직까지는 크게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련 범죄의 경우 2004년 형법 제204조에 명시된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가 2015년 형법에서는 삭제되었고 2004년 형법 제205조에 명시되었던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도 2015년 형법에서는 그 형량이 축소되었다.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교원들은 그 어떤 직군보다도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교원은 학교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생계벌이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교원들이 뇌물을 받는 일이 증가하였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교원들이 교육강령이나 과정안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교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켰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체제정당성에 위협을 가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법규정을 이완해줌으로써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힘썼다. 한 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로 규정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갈등이론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 사회주의 문화범죄에 대한 북한의 형법 규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장에서는 앞선 연구내용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일탈과 범죄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통일과정에서의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은 실증연구와 달리 미래예측을 핵심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실증연구를 근간으로 한 본 연구주제와는 연구설계로부터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향후 과제에서 다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주민 일탈과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및 2018년 현재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앞선 실증분석에 기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색된 이 장의 주요 내용은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이다.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체제전환국들은 각 국가의 체제전환 경로 및 특징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드러났으나, 전체적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증대하였다. 특히 체제전환 초기 과정에서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일탈과 범죄가 급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체제전환 초기인 1989~1990년 사이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범죄 가운데 재산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 절도죄, 강도죄, 주거침입강도죄 등의 증가율이 1980년대 초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

상 높았다.[209] 이는 급격한 사회구조와 사회질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체제전환 초기 국가들에서 범죄가 증가한 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의 확산과 법규범 의식의 해이 등에서 기인하였다. 평등 이념에 의해 생필품 부족 등의 빈곤 문제를 감수해왔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빈부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다. 개인의 능력차로 갑작스런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국민들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에 대한 기회 획득 및 새로운 체제의 법률에 대한 경시 현상을 보이며 일탈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점차 범죄행위로 드러났다.

신생 정부가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이 증가하였고, 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리즘 확산까지 초래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경험한 법제도 경시 풍조이다. 즉, 당간부들이 주도하는 비합리적인 법집행 관행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형사정책적 관행이 체제전환기 범죄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 속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최고지도자와 노동당 중심의 지도와 통제가 지속되며, 법제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개념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법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이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표현되는 다양한 일탈과 범죄를 행하고 있다.

---

209) 이기헌·이건호,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pp. 157~158.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실태는 이미 체제전환국들이 경험하였던 탈사회주의 이행기 특징과 연계되어 있다. 체제전환국들이 경험한 주민 일탈과 범죄 양상이 북한 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과정에서 앞서 자세히 살펴본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양상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분단 70여 년간 남한과 북한은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이질화가 진행되었다. 각 사회가 가진 사회·문화적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범죄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있었던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210]

특히 1992년에는 범죄증가율이 무려 8.3%에 달했는데, 통일 독일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체제전환기의 급격한 범죄 증가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체제 전환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의 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기존 가치의 전복 등으로 일종의 무규범 상태가 발생한다.[211]

나아가 동서독 사법 통합의 경험을 보면, 동독 주민은 갈등을 회피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성향이 드러났다. 반면, 서독 주민은 갈등

210) 최선우·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pp. 337~365.

211) 이기헌·이건호,『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조한범 외,『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을 회피하지 않으며 법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법적 갈등 시 법적 문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 주민의 이해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한 간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면, 동서독식 흡수 통일의 법질서 통합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은 대 동독 인도지원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동독 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독 주민에게 서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인도적 지원은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외부 정보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체제전환기의 공공질서 혼란

남북한 역시 통일 과정에서 범죄 및 일탈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이 범죄로 규정되는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 남북한 각 사회에서 통일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던 행위가, 통일 이후에는 범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개방될수록 외국 문화를 무조건 퇴폐 문화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규정은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통일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통일 이후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

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이라는 사회적 격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이는 다시금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체제전환시기의 동유럽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개인의 열망이 높아졌지만 경제난의 심화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를 실현할 적절한 수단이 확보되지 못하자 개인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는 결국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이들의 알코올 중독 및 자살률이 증가하였고 결국 청장년층 남성의 사망률이 치솟았다.[212] 이러한 경향성은 독일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약물관련 범죄가 45%나 증가하였다.[213]

나. 마약 범죄의 증가 추세

통일 이후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고,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고용문제, 주택문제, 도시문제 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주의 문화범죄는 마약범죄이다. 2016년 기준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총 129명의 북한이탈주민(남자 111, 여자 18) 가운데 마약 사범이 38명

212) 이성기·원석조,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보건사회연구』, 제33권 1호 (2013).

213) 최선우· 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p. 355.

(29.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아래 〈표 Ⅵ-1〉 참조).[214]

〈표 Ⅵ-1〉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감자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절도	3	2	3	7	5	5
사기횡령	6	16	16	13	12	13
강도	3	2	3	3	6	4
살인	8	10	9	11	12	11
폭력	3	4	13	11	14	15
마약류	15	11	12	17	28	38
기타	14	23	31	37	35	43
총계	51	68	87	99	112	129

자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215]

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중 마약, 성문제 등 의식개혁 강화

북한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경우 마약을 응급약이나 각성제로 사용하며, 마약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한 이후 마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남한 사회에 편입되면서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216]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이 연루된 마약 범죄의 상당수는 마약이 국내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다고 한다.[217]

---

214)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마약사범 가장 많아. 탈북여성 수감율 지난 5년 대비 350% 증가. 시스템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16.9.21.).

215) 위의 자료.

216)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통일뉴스』, 2017.9.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67〉 (검색일: 2018.9.1.).

217) 김종일,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훈련결과보고서, 2017).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원에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남한의 법문화를 알리고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하위문화 형성 가능성과 사회통합 구체화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지점은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하위문화의 형성과 이로 인한 범죄의 증가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출신 주민들은 '2등 시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에 젖었고 주류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 자신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하위문화를 결속시켰다.

하위문화는 중산층의 주류문화에 대한 반동의 성격을 띠는데, 하위문화 속에서 사회화된 개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둔화되어 범죄가 곧 문화로 통용되는 집단적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남북한은 독일보다 더 오랜 기간 분단의 역사를 겪으며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독일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지역사회가 슬럼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그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함께 하면서 연대의식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대비 구체적 사회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현재 북한은 당적 통치와 행동규범 준수로서의 법적 통치가 혼용되어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선 연구결과 및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당국의 대응 양측 모두에서 무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형법 규정이 지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일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 사회는 전체적으로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법 행정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중요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당 하부조직들이 직접 나서서 당적으로 대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관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요인이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 사회변화 현실에 맞는 법제도 변화 추동

현재 북한에서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법대로 산다'면 북한 주민과 중하층 행정관리 모두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의 경제적 지원시스템인 배급체계가 소수만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작동하고 개개인들이 '자력갱생'해야 살 수 있는 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민들의 '비법(非法)' 행위는 사라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김정은 정권도 민심이반이나 정권의 대중적 정당성 약화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이를 박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들이 원하는 '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변화 현실에 맞는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법으로 통치하려면 시장경제에 상응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고치지 않고 현재의 사회주의 법으로 통제하자면, 국가경제를 다시 70년대식의 계획경제로 복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자율적 시장행위자의 활동 및 시장경제의 공식적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주체가 되어 경제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개입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희망은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가 보여준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가치관 및 행동관습을 내면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 간부들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규율로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정관리 및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이해로부터 통일과정에서의 문제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기에는 크게 두 방향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나. 남북교류 속 북한 행정관리들의 최근 성향 파악 중시

남북한 교류 시 파트너로 나오는 북한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북한 간부들의 사명감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북한 간부들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직위를 이용한 개인의 사익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다.

카운트파트너로 나오는 간부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적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서는 개인에게 이득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간부들의 법의식도 미약한 곳이므로 남북교류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남북의 법의식과 법태도 차이 고려

북한은 법보다 정치적 권력이 우선인 사회이다. 북한 주민들은 법보다 정치적 권력을 더 두려워한다. 남한과 같은 법적 통제를 실시하면 불법이 난무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통일과정 초기에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 권력을 강화하고 법위반 현상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들의 이기주의, 부패가 극도에 달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시 모든 나라에서 간부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재산을 횡령한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가. 남북관계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비

2018년 들어 남북관계 역사상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걸쳐 치른 시점에서, 통일과정에 현 시기를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의 공식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 남북한 통합과정인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한국 단계 중 현재는 통일과정으로서 교류협력의 단계에 놓여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상 그 지난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남북한 간 민간단체 및 기업체가 왕래할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양측 주민 간 법의식 및 법감정의 차이로 발생하게 될 법률문제 등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일탈유형들과 형사법률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주요 예상문제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규범체계를 갖추고 사회구성원들을 북한식 사회주의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이 없는 체제전환기에 놓여 있는 북한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법의식 문제, 관료 및 일반 주민의

준법의무에 대한 인식문제, 북한 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관행적 생활규범의 문제, 북한 당국의 법집행 방식 문제 등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점들이다.

우선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남한의 민간단체 및 기업체의 북한지역 상주 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는 이미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문제이다. 신변안전의 문제와 남북한 주민 간 남녀연애사건 및 혼인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지역에서 남한기업이 상주하면서 서비스·관광사업을 진행할 시, 남북한의 접대문화가 합쳐져서 상호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여성관련 범죄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사업과정에서 북한 관료의 사례금 착복행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류협력과정에서 북한지역 내 남한주민 역시 그곳의 법을 어기고 사회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가령, 성매매나 남한 공무원 사칭행위 또는 이중혼이나 풍기문란행위, 도박행위 등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 상이한 사회질서규범의 상호이해 위한 사법 교류

남북한 간 이질적인 사회질서규범에 대한 상호적 이해를 위한 사법적 교류가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양측 당국자 및 사법정책 입안자들의 실질적인 사법공조와 관련한 교류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한 간 형법의 체계 및 적용원칙, 범죄유형, 북한의 행정처벌법과 남한의 경범죄처벌법에서의 각각의 법위반행위유형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이 필요하다.

라. 해외사례 통한 교훈 도출 및 남북 형사사법공조 법제 마련

여러 형태의 법률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통일 전 동서독이나 중국·대만 등 외국 사례에서 법률적 시사점을 발견하여, 이를 반영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관련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 인적 교류과정에서 발생한 형사법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이한 형사법체계에서 오는 법률충돌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과의 법률충돌 해결을 위해 '서독형법 적용설', '지역간 형법적용설', '국제형법원칙 적용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동독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218] 이러한 일반원칙 외에 서독은 동독 주민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동서독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1966년 '독일 재판권의 잠정적 적용배제에 관한 법률(Gesetz ber befristete Freistellung von der deutschen Gerichtsbarkeit)'을 제정한 것이다.[219]

한편, 중국·대만의 경우 양 국가 간 합의서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제정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 양 국가 간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장기간 격리단절상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처리 시 기본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평등보장원칙, 역사 및 현실 존중원칙을 견지하고

218) 장영민,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2호 (1993), pp. 67~76;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pp. 204~210.

219) 이효원,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08), pp. 51~52.

있다.[220] 이러한 사례는 남북한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공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다.

마. 상호주의적 '시민의식과 법의식 고양' 교육 프로그램

통일은 단순한 법제도적 국가체제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공질서 의식 및 규범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모색되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준비 단계부터 민주시민과 법의식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을 모색하는 시기부터 본격화되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 사회와 주민들의 연대와 신뢰 증진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양측 주민들 간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교육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북한과 남한 지역 동시에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교육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법제도적 통일 이후 의식개혁 프로그램들이 해외 사례 및 남한의 법교육 콘텐츠에 따라 연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독일식 체제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거나 한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것들이다.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징이 강화되며 급변하고 있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 그리고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흐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았다.

---

220)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과천: 법무부, 1995), pp. 268~286, 376~405.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시기부터 시도되어야 할 남북한 관리 및 주민들의 상호이해 교육 시, 남북한의 일탈과 범죄 유형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당국의 대응 실태를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한, 남북한 모두의 시민교육 및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여지가 있는 단위에서 시도해 보며 효과를 검증하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분문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연구목적에 따라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범죄,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 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 및 대응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였다.

시장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및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해,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분야별로 각각 세부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 관련하여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자.

1. 실증분석 결과

주요 연구결과를 행정관리, 사회질서,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의 특징과 추세, 그리고 지속성과 변화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관리 분야이다. 현재 북한에서 이와 관련해 나타나는 일탈과 범죄 유형은 국가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외국인 불법 접촉, 국가행정질서 위반, 국가업무 태만, 간부들의 일탈, 세외부담, 인권침해로 분류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룬 각 유형별 실태에 기초하여, 특히 김정은 시대 주목해야 할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국가행정질서의 약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기구 및 행정일꾼들의 정치사회적 권위 역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에서 비록 산발적이고 드물게 드러나지만 국가권력에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일탈과 범죄가 증대하고 있다. 주민들 속에서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통제만 강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집단소요죄'와 '직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들은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특히 국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불공정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 '정치협잡죄'의 신설도 국가의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통용되는 협잡과 사기가, 정치행정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둘째, 간부의 일탈이다. 북한은 간부를 당의 골간역량,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규정하고 당과 국가 활동에서 간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간부들의 일탈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김정은 시대 형법을 수정하면서 죄가 중한 경우 형량을 증가시켰는데, 형량이 증대된 범죄항목 10조항 중 7개 조항이 '직무상 범죄'에 속하는 법조항들이다. 이는 간부들의 일탈이 김정은 정권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간부들 속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상당수 간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부에 뇌물을 바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먹을 알' 있는 자리)로 올라

가며 출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일꾼 뿐 아니라 행정간부, 당간부 등 모든 간부들 속에서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이 중 당간부들은 철저한 자기통제 구조에 있고 상대적으로 여타 기관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법간부 및 행정간부들 사이에 일탈이 일반화되었다. '비법'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부 일탈행위는 일반 주민들과 연계되어 작동한다. 이 속에서 일반 주민들 또한 '비법' 없이는 북한에서 생활을 유지하거나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한다. 2015년 북한 형법에 '독립임무수행태만죄'가 신설된 것은, 주민들 속에서도 사회적 노력동원 등 국가일에 대한 태만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국가행정의 무질서 확산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각종 법제도를 신설 및 개편하며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행정 차원에서는 당치(黨治)로부터 법치(法治)로 이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과도적 상황에서 당의 통제도 법적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법의식이 매우 약하다.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법위반에 대한 자책감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기 협잡, 도적 등 불법행위가 상당하며 주민들 속에서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도 만연한 일탈행위를 모두 다 처벌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형법 중 형량 감소 조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법대로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대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현재는 남한과 중국에서라면 '노동교화형'을 구형해야 할 범죄를, '노동단련형'으로 처벌을 약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넷째, 행정관리 분야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폭발물 관련 범죄'도, 이전에 '비법휴대·사용·양도죄'에서 지금은 '비법제조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비법국제통신죄' 조항을 신설한 것도 외국과의 연계가 다양해지면서 범죄 유형 역시 다양해지는 현실의 반영이다. 2015년 '담보처분재산비법처분·이용죄'의 신설도, 북한에서 실질적 개인소유권이 확장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관리 일탈 흐름에 대한 김정은과 김정일 시대 대응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 측면에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동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주동자에 의해 연루된 주민들은 용서해주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즉, '피동분자 용서, 주동분자 강한 처벌'이다. 북한 형법의 관련 법조항은 2004년 대폭 늘어났고 2012년과 2015년에도 신설·수정되었다. 특히 2004년 형법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일반행정관리질서 위반죄'의 법조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인 2012년 형법, 최근 형법인 2015년 형법 조항도 일부 변경되었다. 주요 특징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조항들과 시장발전 상황을 반영한 법조항이 추가된 점이다.

둘째, 형량의 변화이다. 2004년, 2012년, 2015년으로 가면서 행정관리 분야 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변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에서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강제노동만 부여하는 노동단련형을 새로 내오고 대부분 범죄에 노동단련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형

법에서는 '대외적권위훼손죄'와 '영공·영해침입죄'를 제외한 모든 법조항에서 경한 범죄의 경우 형량을 줄였다.

주목할 점으로, 김정일의 2004년 형법과 김정은의 2012년, 2015년 형법에서 중한 죄의 형벌 변화에 차이가 있다. 비교가능한 조항의 형량 변화를 보면, 2004년 관련 형법은 중한 죄의 경우 형량 유지가 13조항으로 가장 많고, 형량이 감소된 조항 6개, 증가된 조항은 3개이다. 그러나 2012년과 2015년 형법은 중한 죄의 경우 유지된 조항은 3조항에 그치고, 감소되거나 없어진 형량이 14조항, 신설되거나 증가한 조항이 11조항이다.

즉, 체제유지에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어 용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위험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늘여 처벌을 엄격하게 하였다.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인민중시' 이미지를 부각하며,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복종하게 하는 김정은식 통치방식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셋째, 당적 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질서이다. 북한은 여전히 권력이 법보다 강한 사회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지도부는 한편으로 법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노동당을 강화하면서 행정관리 분야의 일탈에 대한 당적 통제 또한 강화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법적 통치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주민들이 지켜야 할 국가사회질서'로 당적 통치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법 제정이 당에 의해 주도되고 법 간부 인사를 당이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결정보다 하위에 있다. 남한이나 중국에서 징역형에 속하는 범죄를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면서도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적 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 시대들어 외형상으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 통제의 방법이 전통적 사상교양과 조직적 통제에서 강압과 처벌로 바뀌는 흐름이다.

다음으로 사회질서 분야이다.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범죄 유형은 몇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란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법질서·안전·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의 도덕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의 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인의 성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 등의 도덕적 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말한다. 즉, 성풍속(성도덕)과 관련한 행위, 도박과 관련한 행위, 종교적 감정과 관련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행위는 사회적 법익 중 공공의 법질서·안전·평온과 사회의 도덕 등 두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 북한에서 나타나는 사회질서 관련 주요 일탈과 범죄는 불량행위, 패싸움, 미성인의 불법행위 유인, 성매매 관련 일탈행위, 집단음탕행위, 타인의 직권참용, 관료사칭, 자구행위(실력행사), 칭호참용, 도박, 미신행위, 이중혼 등 불법혼인, 부당이혼, 타인의 가정 파탄행위, 노인 및 아동 부양회피, 양로사업질서 위반행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대괄시행위, 습득물횡령, 장물거래, 묘훼손, 대외무역일꾼의 사례금착복 등이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룬 각 유형별 실태에 기초하여, 특히 김정은 시대 두드러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

펴보자.

첫째, 당보다는 주술적 힘에 의지하는 미신행위 증가이다.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의 주민 복지 및 후생 등 국가의 주민생활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는 공식적으로 각 기관과 개인들의 자력자립 및 능력강화가 국가정책으로 전면화 되었다. 그리하여 당과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동원 등을 통한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안함을 직접 해소하려는 점 등의 미신행위가 증대하였다. 미신행위를 통해 건강문제나 자신의 미래를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등 사상교양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증대한 것이다.

둘째, 성매매에 대한 불법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미흡이다. 북한 주민들의 성의식의 정도가 한국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불법적 성매매자들 및 관련 알선·중개업자들을 제외하고, 주민 대부분의 성매매에 대한 불법의식이 확고한 편이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의 성의식을 유추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볼 때, 북한 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성의식은 매우 낮다. 성매매에 대한 법도덕적 규범도 매우 약하다. 북한에서 생계를 이유로 성매매가 증가하고, 외부문화유입으로 불법 성녹화물 등이 유포되어 북한 주민들의 성의식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방식에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과 차이가 있다. 성을 파는 여성은 형벌로 강하게 처벌하고, 성을 사는 남성은 행정처벌로 약하게 규제하고 있다.

셋째, 뇌물을 써서라도 행하는 재판이혼과 도박, 마약범죄의 증가이다. 재판이혼만을 인정하는 북한에서 중혼문제, 배우자 외도·폭력문제 등으로 법정 혼인관계가 깨지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뇌물을 써서라도 재판이혼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현실이다. 경제위기 이후 부모자식의 생계가 문제가 되어 꽃제비 현상까지 발생했던 북한에서, 노인·아동 부양에 대한 책임 회피문제 역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동의무를 신성시했던 북한에서 근로정신 및 사회주의적 경제도덕이 붕괴되면서, 마약과 도박행위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약은 김정은 시대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넷째, 법기관 성원들의 뇌물수수 수단이 되는 형벌 규정과 임시단속의 비실효성이다. 법기관 성원들은 당국의 이벤트성 통제 지시만 그대로 따르고, 당의 정책적 지시가 사라지면 형벌 규정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뇌물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건설의 요원함을 드러낸다. 당의 지시로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임시적으로 단속 및 통제할 뿐이다. 단속 시기를 지나면 별다른 효과 없이 예전처럼 주민들이나 관료들이나 구분 없이 사회적 일탈을 일상적으로 행한다.

한편, 사회적 일탈과 관련하여서도 김정은 집권 초기 법적 통제를 강화하다가,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사회적 일탈에 대해 통제를 가벼이 처리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이유로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면 북한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 증언한다. 또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주민들의 생계문제 해결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경제적 자립과 능력배양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질서 부문의 일탈 흐름에 대한 김정은과 김정일 시대 북한 당국의 대응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 측면에서, 주요 특징은 통제를 강화해도 증대하는 사회적 일탈행위 및 비효과적 단속시스템이다.

김정일 시대에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규범인 집단주의 정신, 노동의무의 신성화, 가정 공고화, 공동재산 애호 등의 의무를 주민들이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의 사회질서 규범에 반하는 일탈행위를 주저 없이 해야 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일탈행위는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집권하여 새로운 북한을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충만했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각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완화하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 들어서 통제부분에 단속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다. '109상무' 등 각종 단속반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비상설 조직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검열을 실시하지만, 그 성격상 임시적 단속형태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통제의 비효과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어 사회문화 분야이다.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문화범죄를 내용

별로 유형화하면, 퇴폐행위 관련 범죄, 컴퓨터 및 정보 관련 범죄, 의료 관련 범죄, 교육 관련 범죄, 역사유물 관련 범죄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룬 각 유형별 실태에 기초하여, 특히 김정은 시대 두드러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이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가 추동한 정보화와 함께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많은 경우, 뇌물을 통해 처벌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다. 또 다른 요인은 기술의 발달이다. 과거 VHS 테이프를 녹화기로 보던 시절에는 숨기기가 쉽지 않아 적발이 용이했다. 소위 알판(CD롬) 또한 적발하기에는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USB를 넘어서 북한에 약 400만대의 핸드폰이 보급되며, 마이크로 SD카드 등 매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쉽게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남한 문화가 널리 퍼지다보니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수준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정보범죄는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증대하였다. 한편, 이처럼 통제를 하나 먹히지 않자, 최근 북한 당국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 검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의 발생이 특징적이다.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컴퓨터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국가망을 통해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모임의 경우, 반국가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이다. 무엇보다 비법적 개인의원의 증가이다. '비법의료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하지만 워낙 일반적인 현상인데다 합법적인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큰 제재를 받는 일은 드물다. 또한 비법의료죄는 '마약범죄'나 '불순녹화물 범죄'와 달리 정치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심하지 않고 처벌도 약한 편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보니 가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마약의 확산이다. 의료관련 범죄 중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이다. 소위 '빙두'라 불리는 암페타민 계열의 이 마약은 각성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빙두는 일종의 응급처치약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고혈압이나 뇌혈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을 때 쓰면 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사례가 많았다. 북한이 2013년 형법 수정을 통해 '비법아편재배 및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밀수 및 거래죄'(제208조)를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형벌을 강화한 것 역시, 마약이 북한 사회의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이다. 교원들의 부정부패는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드러났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등 여러 부업을 통해 생계비를 벌었으나, 교원들은 학교를 비울 수 없어 생계활동이 불가능했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담임교사의 생계를 걱정해 학부모들이 소액의 돈을 모아 '인사치레'로 교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이러한 인사치레 수준을 넘어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구하는 경우가 확산되었다. 실력

이 아닌 뇌물로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 보다 자녀들을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에 보내려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겁다. 김정은 집권 후 교육개혁 및 인재중시 정책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는 북한 사회에서 양극화와 함께 돈주 등 신흥부유층이 늘어나고 자녀를 1~2명만 낳아 잘 키우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한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교수들이 뇌물을 받고 성적을 올려주는 일이 드러나는 데, 졸업 학점이 좋아야 좋은 직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김정은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역사유물 중시이다. 역사유물의 도굴 및 밀매·밀수는 고난의 행군을 전후한 1990년대 중반까지 가장 극성이었고 이후에는 도굴할 유물이 줄어들면서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사유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훼손이 심각해지자, 김정은 시대 들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김정은 시대 들어 이전 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북한 주민들이 문화유산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통보하며,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이 '민족유산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제정되었다. 소위 국제적 수준에 달하는 '문명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국가과제와 연결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일탈 흐름에 대한 김정은과 김정일 시대 북한 당국

의 법적 대응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 측면에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 및 퇴폐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조기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정당성 확립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사회주의 문화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에도 반영되었는데, 마약 관련 범죄와 퇴폐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두 범죄는 북한 사회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흔들어 체제유지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유물 범죄, 교육관련 범죄, 정보관련 범죄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형량이 약화되었다. 우선 역사유물 관련 범죄는 1990년대에 극성을 부렸으나 지금은 줄어들었다. 정보관련 범죄는 컴퓨터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아직 한국처럼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정이 아직까지는 크게 엄격하지 않다. 교육관련 범죄의 경우, 2004년 형법에 명시된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가 2015년 형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2004년 형법의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도 2015년 형법에서 그 형량이 축소되었다.

셋째, 사회문화 일탈과 범죄에 대한 분리대응이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정당성에 위협을 가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법규정을 이완해줌으로써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즉, 체제 안정과 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라는 양 축을 기준으로, 특히 문화관련 일탈과 범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이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특징을 지녔고, 근대 문명이 발전한 스위스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익힌 문화중시 의식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남북교류협력 준비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등,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성으로 공공질서의 혼란 상황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일탈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통일독일뿐 아니라 체제전환국들의 이행기 급격한 범죄 증가는 일반적 현상이다. 체제이행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존의 가치 전복 등 일종의 무규범 상황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역시 남북관계 변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시기를 포함한 통일 과정에서 범죄 및 일탈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의 위험성, 성의식, 법의식 등의 의식개혁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와 관련한 인식이 부재하여 남한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원에서 마약의 위험성이나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성문화 및 법문화를 알리고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 일탈의 구조적 요인 파악 하에 북한에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당적 통치와 행동규범 준수로서의 법적 통치가 혼용되어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선 연구결과에서 밝힌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당국의 대응 양측 모두에서 무질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형법 규정이 지속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일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 사회는 전체적으로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법 행정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중요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당 하부조직들이 직접 나서서 당적으로 대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관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불법이 일상화된 이유는 개인적 요인이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일탈과 범죄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법치가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플랫폼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사회 변화 현실에 맞는 법제도 변화 추동이다. 현재 북한에서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법대로 산다'면, 북한 주민과 중하층 행정관리 모두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지원시스템(배급제)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작동하고, 개개인들이 '자력갱생'해야 살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민들의 '비법' 행위는 사라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김정은 정권도 '민심이반'이나 정권의 '대중

적 정당성 약화'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이를 박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문명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변화 현실에 맞는 법제도 변화가 필요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조력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행정관리와 주민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법으로 통치하려면 시장경제에 상응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북한이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 현재의 사회주의법으로 통제하자면, 국가경제를 다시 70~80년대식 계획경제로 복구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이 70년대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민 뿐 아니라 간부들 역시 시장경제질서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자율적 시장행위자의 활동 및 시장경제의 공식적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주체가 되어 경제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개입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희망은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가 보여준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관습을 내면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 간부들은 공식적으로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규율로 강제되지만, 비공식적이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민감하다.

이러한 북한의 행정관리 및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이해로부터, 통일과정에서의 문제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기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 속 북한 행정관리들의 사업방식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시 카운트파트너로 나오는 북한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간부들의 사명감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상당수 북한 간부들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개인의 사익을 얻는데 관심이 높아졌다.

카운트파트너로 나오는 북한 간부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적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서는 개인에게 이득이 되어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간부들의 법의식도 미약하므로 남북교류에서 법적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의 법의식과 법태도의 차이에 대한 고려이다. 북한은 법보다 정치적 권력이 우선인 사회이다. 북한 주민들은 법보다 정치적 권력을 더 두려워한다. 현 단계에서 남한과 같은 법제도적 질서와 규칙을 관철하려하면 오히려 불법이 난무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통일과정 초기에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 권력을 강화하고 법위반 현상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관리들의 이기주의, 기관 본위주의, 그리고 부패가 정치

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한 모든 나라에서 간부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재산을 횡령한 사례가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남북관계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비이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 한해만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치른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 역시 통일과정에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상, 그 지난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부처 간 남북교류 뿐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남북한 간 민간단체와 기업이 왕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통합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양측 성원 간 법의식 및 법감정의 차이로 발생하게 될 법률문제 등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발생 가능한 일탈유형들과 형사법률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법제도적 시각에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주요 예상문제 파악 및 사법 교류 추진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규범체계를 갖추고 사회구성원들을 북한식 사회주의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이 없는 체제이행기 특징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 주민들의 법의식 문제, 관료 및 일반 주민의 준법의무에 대한

인식문제, 북한 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관행적 생활규범의 문제, 북한 당국의 법집행 방식 문제 등을 법적 시각에서도 파악해야 한다.

우선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남한의 민간단체 및 기업체의 북한지역 상주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문제이다. 신변안전의 문제와 남북한 주민 간 남녀연애사건 및 혼인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지역에 남한기업이 상주하면서 서비스·관광사업을 진행할 시, 남북한의 접대문화가 합쳐져서 상호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성(性)범죄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사업과정에서 북한 관료의 사례금 착복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교류협력과정에서 북한지역 내 남한주민 역시 그곳의 법을 어기고 사회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가령, 성매매나 남한 공무원 사칭행위 또는 이중혼이나 풍기문란행위, 도박행위 등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한 간 상이한 사회질서규범의 상호이해를 위한 사법 교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양측 당국자 및 사법정책 입안자들의 실질적인 사법공조와 관련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사법당국의 교류가 시간이 걸린다면, 양측의 법 분야 학술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남북한 간 형법의 체계 및 적용원칙, 범죄유형, 북한의 행정처벌법과 남한의 경범죄처벌법에서의 각각의 법위반행위유형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이 필요하다.

아홉째, 해외사례를 통한 교훈 도출 및 남북 형사사법공조 법제

마련이다. 여러 형태의 법률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통일 전 동서독이나 중국·대만 등 외국 사례에서 법률적 시사점을 발견하여, 이를 반영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공조 관련 법제를 마련할 필요이다. 동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 인적 교류과정에서 발생한 형사법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이한 형사법체계에서 오는 법률충돌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는지 등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중국-대만의 경우 양 국가 간 합의서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 일방적 정책에 따라 제정된 관련 법령/지침에 의해 양 국가 간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장기간 격리단절상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공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이다.

열 번째, 상호주의적 '시민의식과 법의식 고양' 프로그램 마련이다. 통일은 단순한 법제도적 국가체제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공질서 의식 및 규범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모색되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준비단계부터 민주시민과 법의식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을 모색하는 시기부터 본격화되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 사회와 주민들의 연대와 신뢰 증진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양측 주민들 간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교육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북한과 남한 지역 동시에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교육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법제도적 통일 이후 의식

개혁 프로그램들이 해외 사례 및 남한의 법교육 콘텐츠에 따라 연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독일식 체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거나 한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것들이다.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기 특징이 강화되며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 그리고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흐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시기부터 시도되어야 할 남북 행정관리 및 주민들의 상호이해 교육 시, 남북한의 일탈과 범죄 유형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당국의 대응 실태를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남북한 모두의 시민교육 및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여지가 있는 단위에서 시도해 보며 효과를 검증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과의 연계이다. 동서독 사법 통합의 경험을 보면, 동독 주민은 갈등을 회피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성향이 드러났다. 반면, 서독 주민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며 법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법적 갈등 시 법적 문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 주민의 이해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한 간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면, 동서독식 흡수 통일의 법질서 통합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은 대 동독 인도지원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동독 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독 주민에게 서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인도적 지원

은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외부 정보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을 추동하는 시민사회, 자유경쟁, 사적 소유권 인정, 법치주의 등의 토대가 사회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앞서 다룬 실증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한 아이디어이자 향후 후속연구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의 시론적 모색이다.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회적 일탈과 범죄 관련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은 새로운 연구설계도에 기초하여 남북교류협력 준비시기부터 사회통합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통일과정에서의 예상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실증연구와 달리 미래예측을 핵심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근간으로 한 본 연구주제와는 연구설계로부터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한 연구설계 및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맞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연구는 현재 추진·준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등까지를 고려하여, 시기별, 사안별, 성숙도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된다면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일탈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이러한 일탈이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 변화 경로별 시나리오 작성,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결과 예측 방법도 유효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현재 3차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현 시점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우선추진 과제' 및 미래에 전개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에 대비하여 추진할 '중장기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 과정을 교류협력 단계, 통일추진 단계, 통일 후 사회통합의 3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남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일탈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는 연구설계도 가능하다. 향후 연구설계 시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동질성과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제도화 해 나가는 성숙도별 과제 또한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정신현상학』. 서울: 동서문화사, 2016.

김근식.『형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김석향.『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김일성.『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김정일.『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종일.『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훈련결과보고서, 2017.

박영자 외.『북한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박형중 외.『북한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백과사전출판사.『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법률출판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____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____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2.

법무부.『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과천: 법무부, 1995.

법무부 통일법무과.『북한형법 주석 2014』. 서울: 법무부, 2015.
사회과학출판사 엮음.『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윤대규 엮음.『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이기헌·이건호.『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_____.『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1999.
이효원.『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인민보안성.『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임순희.『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장명봉.『최신 북한법령집 2008』.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8.
정흥모.『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조정아·최은영.『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조정아 외.『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조한범.『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조한범 외.『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최대석·박영자·박희진.『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변화』.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카를 마르크스.『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울: 지만지, 2008.
통일원.『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한재현.『김정은시대 사회통제전략의 변화와 지속성: 풍기단속을 통한

통제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연구용역보고서, 2017.

Cohen, Albert. *Deviance and Control*.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Durkheim, Emile. *On Suicide*. New York: Penguin Books, 2006.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Illinois: The Free Press, 1957.

Merton, Robert K. and Robert A.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arsons, Talcott. *The Social System*. Illinois: The Free Press, 1951.

Quinney, Richard. *The Social Reality of Crim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0.

2. 논문

고성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일탈."『1990년대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김상원. "전환기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율의 추세."『공공정책연구』. 제22권, 2005.

김성철. "북한의 관료부패유형 및 사회적 영향."『북한』. 281호, 1995.

김영호·김용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제17권 3호, 2014.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책임연구보고서』.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_____.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제7권 3호, 2007.

_____.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교정담론』. 제3권 1호, 2009.

김일수. “북한 형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엮음.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도흥렬. “북한의 사회범죄연구.” 『북한』. 통권 제65호, 1977.
박영민.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약탈성-부패의 메커니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2016.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3호, 2009.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2호, 2013.
양옥경 외.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동아연구』. 제37권 1호, 2018.
이근영. “북한의 제도와 부패- 행정계량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년 12월.
이성기·원석조.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 『보건사회연구』. 제33권 1호, 2013.
이우영.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이학립. “김정일 시대 범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장영민.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4권 2호, 1993.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문화돋보기』. 제57호, 2017.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

일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최선우·류채형.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황의정.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동북아법연구』. 제9권 2호, 2015.

Chambliss, William J.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Crime." *Theory and Society*. vol. 2, no. 1. 1975.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Lankov, Andrei and Seok-hyang Kim.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 9, no. 1. 2013.
Szelenyi, Ivan.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 34, no. 1. 2008.
Turk, Austin. "Toward Construction of a Theory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55, no. 2. 1964.

3. 기타자료

『노동신문』.
『뉴시스』.
『데일리NK』.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자유아시아방송』.
『조선닷컴』.
『통일뉴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
다음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http://nambuksto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2016.9.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 · 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 · Rhee, Minkyu · 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 · 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통일연구원

값 11,500원
93340
9 788984 799523
ISBN 978-89-8479-952-3